

성과감사



감사 보고서

정부평가제도 운영 관리실태

2025. 9.

감사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정부업무평가 현황	4
III. 정부업무평가 제도운영 실태 진단	10
IV. 감사결과	22
1. 감사결과 총괄	22
2. 분야별 감사결과	25
[1] 평가 제도화 분야	25
[2] 평가 품질 분야	61
[3] 평가 활용 분야	107
[별표]	124

표 목차

[표 1]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변천 개요	5
[표 2] 정부업무평가의 유형별 구분	8
[표 3] 최근 10년간 정부업무평가 전체 개수 변동 추이	10
[표 4] 정부업무평가 제도 진단을 위한 분석틀(각각학회)	13
[표 5]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제도화 수준 진단 결과(요약)	15
[표 6]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품질 수준 진단 결과(요약)	16
[표 7]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활용 수준 진단 결과(요약)	18
[표 8] 정부업무평가의 목적별 달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
[표 9] 유사·중복 평가에 따른 평가 부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
[표 10] 감사중점	21
[표 11] 개별평가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개선방안 현황	26
[표 12]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비교	27
[표 13] 개별평가 신설·유지 필요성 판단기준(국조실)	28
[표 14] 개별평가 사전협의 현황	31
[표 15] 개별평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3
[표 16] 개별평가 폐지·통폐합 등 미이행 현황	35
[표 17] 동일 평가에 대한 일관성 없는 개선요구 현황	36
[표 18] 2011년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통합 성과관리 일정	47
[표 19]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양식 중 유사사항 비교(2024년도 기준)	49
[표 20]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내용의 유사성 분석 사례(2023년도 교육부)	50
[표 21] 최근 5년간(2019~2024년) 성과지표 개발 비용	52
[표 22]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간 목표치 차이 및 초과달성을 분포 ...	53
[표 23]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등 성과관리 대상 부처 설문조사 결과	54
[표 24]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비교	56

[표 25]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유사 평가항목	56
[표 26] 중복일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제외되는 재정사업 평가 명세	57
[표 27]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중복 사업의 평가결과 비교	59
[표 28] 특정평가의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2023년 기준)	62
[표 29] 자체평가 현황	63
[표 30] 평정표(안) 자료 구성	68
[표 31] 평정 참고자료 중 ‘목표달성을 질’ 자료 구성	68
[표 32] 주요 평가제도의 평가점수 조정 근거와 범위	70
[표 33] 정부혁신 부문 평가등급 조정 내역	71
[표 34] 정부혁신 부문 평가지표별 점수 조정 내역	71
[표 35]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	74
[표 36] 최근 2년(2022~2023회계연도)간 예산집행 점수 부당 산정 현황	78
[표 37] 청렴 체감도의 평가항목 및 설문 문항	81
[표 38] 청렴 노력도의 평가 항목	82
[표 39] 중앙부처의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 담당 인원 비중 현황(2023년 기준)	85
[표 40] 외부 체감도 평가의 측정업무별 조사 표본량 현황	87
[표 41] 측정업무별 과소조사 표본량 상세 현황	88
[표 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별 표본량(2023년)	89
[표 43] 내부 체감도 평가의 충별 조사 표본량 현황	90
[표 44] 충별 조사 표본량 미달·초과 상세 현황	91
[표 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체감도 충별 표본량(2023년)	92
[표 46] 충별 표본조사(내부 체감도) 결과 보정 후 기관별 등급 변동(2023년)	94
[표 47] 미달된 표본량으로 외부 체감도 평가를 받은 기관 현황(2023년)	94
[표 48] 청렴 노력도 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101
[표 49] 청렴도평가와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문항 비교(한국동서발전)	103

[표 50]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성과급 반영비율 현황(2023년 기준)	113
[표 51]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비율 재산정 결과(2023년 기준, 22개 기관)	114
[표 52]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비율 평가 기준	115
[표 53]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통합 범위(정부업무평가법 제정 당시)	118
[표 54] 인사혁신 수준진단의 평가성 검토	119
[표 55] 인사 부문 자체평가와 인사혁신 수준진단의 평가지표 비교	121
[표 56] 인사혁신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장기 국외훈련 TO 추가 배정 현황(2022~2024년) ..	121

그림 목차

[그림 1] 정부 정책 집행 과정	5
[그림 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7
[그림 3] 정부업무평가(중앙부처 평가) 관리체계	9
[그림 4] 개별평가 관리체계 흐름	26
[그림 5] 청렴도평가 체계도	64
[그림 6] 청렴 체감도 점수 산정 방법	87
[그림 7] 권익위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 지표의 평가대상 사건 변동 내역	97
[그림 8]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수행 절차	117

도표 목차

[도표 1] 정부업무평가 개수 변동 추이	10
[도표 2] 정부업무평가 목적별 달성 여부	20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기존의 정부업무평가¹⁾ 제도가 서로 중복되어 평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피평가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평가결과가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하여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평가의 통합실시 원칙, 자체평가의 내실화,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등을 규정하여 평가를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현재의 평가제도 아래서도 유사·중복으로 인한 평가부담, 자체평가의 형식적 운영, 평가결과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등 당초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재의 정부업무평가 제도가 도입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감사를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중앙부처를 대상²⁾으로 한 정부업무평가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

-
- 1) 감사사항명은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이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 공식적으로 '정부업무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정부업무평가'로 통일
 - 2) 감사 인력과 기간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다만 개별평가 개수 등과 같은 기본현황에서는 포함

하고 있는지, 정부 부처에 불필요한 평가 부담을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가 회원국 등의 정책평가 제도를 분석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품질(Quality), 활용(Use of Evaluation Findings) 측면에서 점검하였다.

제도화 측면에서는 평가의 법적 근거와 평가 관리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와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였고, 품질 측면에서는 각각의 평가가 계획된 절차와 기준·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평가 활용 측면에서는 평가결과가 정책이나 조직·인사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재정, 조직·인사 등 주요 부문의 평가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주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 심층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국회 논의사항, 언론 보도 및 각종 연구 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검토하였고, ~~각~~학회,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각 부처의 평가담당자 등과 면담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감사방향과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분석방법을 구체화한 후 2024. 7. 15.부터 같은 해 9. 6. 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위해 ~~각~~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도화, 품질, 활용 측면에서 현행 평가제도를 분석하였고, 각 부처의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의 실효성과 유사·중복으로 인한 부담

정도 등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이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감사원은 답변서에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9. 5.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정부업무평가 현황³⁾

[범례]

이 장을 포함하여 본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의 약칭을 사용한다.

< 기관명 >

- 국무조정실: 국조실
- 행정안전부: 행안부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평위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 기획재정부: 기재부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 인사혁신처: 인사처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연구원

< 법령·지침명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법
-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성과관리지침
- 「재정사업 통합 성과평가 지침」: 통합평가지침

※ 다만, ‘조치할 사항’이나 보고서 문맥상 본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본래 명칭을 사용함

1. 정부업무평가의 개념

정부업무평가법 제2조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의 계획 수립, 집행 과정,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평가는 정부 정책의 성과관리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 정책은 [그림 1]과 같이 ‘계획 수립 - 집행·점검 - 평가 - 환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책 담

3) 이 부분은 감사결과의 종합적 이해를 돋기 위해 기술한 것으로 현장 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된 내용이 아님

4) 정부업무평가법에서는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와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과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제2조 제6호)

당자(기관)는 평가를 통해 수립된 정책이 당초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정책 집행 과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조직·인사·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그림 1] 정부 정책 집행 과정



2. 정부업무평가 제도 연혁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 제도는 1961년 예산사업의 추진 진도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파악하는 ‘심사분석’이 도입된 이래 [표 1]과 같이 다양한 개념과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표 1]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변천 개요

구분	도입	과도기		재정비	개편	통합
총괄 기관	기획조정실	경제기획원	행정조정실	행정조정실	국조실	국조실
시기	1961. 9. ~ 1981. 10.	1981. 11. ~ 1990. 3.	1990. 4. ~ 1994. 12.	1994. 12. ~ 1998. 2.	1998. 3. ~ 2006. 3.	2006. 4. ~ 현재
평가 제도	심사분석		정책평가	심사평가	기관평가	통합평가
내용	최초로 심사분석 제도 도입	경제기획원으로 업무 이관	정책평가기능 신설	심사분석과 정책평가 통합	심사평가제도 개편 및 기관평가 도입	통합적 평가제도 도입
근거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부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부주요정책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총리령)	정부업무의 심사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도입 당시 내각 수반 기획조정실이 수행하던 심사분석 업무는 1981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고, 행정조정실(現 국조실)이 각 기관에 대한 정책평가제도를 별도로 도입함에 따라 평가제도가 이원화되었으나 1994년 다시 심사분석과 정책평가를 통합한 심사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1998년 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각 부처를 평가단위로 하는 기관평가를 도입하였으며,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정부업무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조실의 기관평가와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두 축으로 하여 평가체계를 정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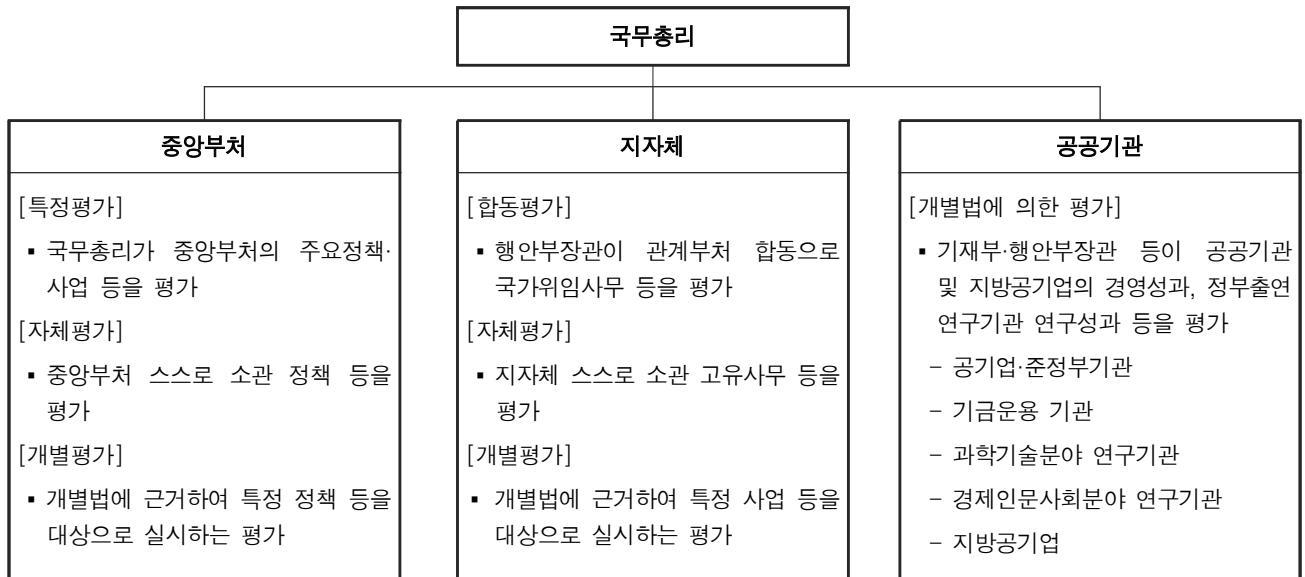
그러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개별 법령에 근거한 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평가 부담의 과중, 자체평가의 형식적인 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미흡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법을 제정하여 평가의 통합실시 원칙을 규정하면서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자체평가 중심의 운영을 통해 부처의 자율적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예산·조직·인사관리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현행 정부업무평가 현황 및 관리체계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현행 정부업무평가는 [그림 2]와 같이 크게 중앙부처 평가, 지자체 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로 나뉘는데, 중앙부처와 지자체 평가의 경우 전 부처·지자체가 동시에 평가받는 특정평가·합동평가,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 정책·사업 분야를 평가하는 개별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공기관 평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연구기관, 지방

공기업 등 주로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림 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이 중 이번 감사대상인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부업무평가는 [표 2]와 같이 평가 대상과 평가 주체 등 수행방식에 따라 특정평가, 자체평가 및 개별평가⁵⁾로 나뉜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사업의 성과 등을 점검하는 평가를 의미하며, 자체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정책·사업 등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스스로 수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그리고 개별평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 부처가 특정 분야 정책·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2025년 2월 현재 특정평가 1개, 자체평가 10개 및 개별평가 78개로 총 89개의 평가가 운영되고 있다.

5)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는 특정평가, 자체평가, 합동평가(지자체 대상평가), 공공기관평가로 구분 할 뿐 개별평가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국조실은 위 평가와 별도로 부처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른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를 개별평가로 보고 있음

[표 2] 정부업무평가의 유형별 구분

구분	특정평가	자체평가	개별평가
근거법령	정부업무평가법 제20조	정부업무평가법 제14조	개별 근거법률
주요 내용	국무총리가 국정관리 차원에서 전 부처 대상으로 평가	기관 자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소관 정책·사업을 평가	개별 부처가 특정 분야의 정책·사업 성과 등을 평가
평가 부문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가점)	주요정책, 재정사업(일반재정·R&D 등 6개 분야),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정보화)	개별평가마다 상이
평가 주체	국무총리	각 부처	소관 부처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정부업무평가법은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평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정평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자체평가의 부문별 주관기관인 국조실장(주요정책), 기재부장관(재정사업), 행안부장관(행정관리역량)이 정부위원이 되며, 민간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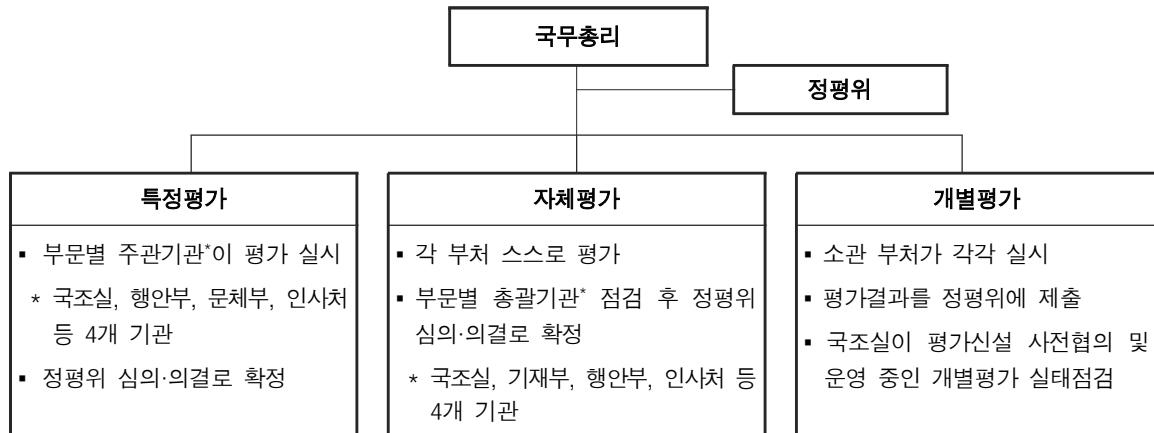
정평위는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추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 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 평가결과의 보고 및 평가 관련 기관 간 협조·업무조정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정평위는 [그림 3]과 같이 평가 주관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이를 심의·의결하고 있는데, 특정평가⁶⁾의 경우 평가 부문별로 주관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정평위에서 확정하고, 자체평가는 각 부처에서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결과와 부문별 총괄기관(국조실 등 4개 기관)이 평가방법의 적정성

6) 특정평가의 평가 부문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으며 해당 내용은 2023년도 평가 기준임

등을 상위점검⁷⁾한 결과를 정평위에서 심의·의결한다. 개별평가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가 각각 실시하되 그 결과를 정평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평가를 신설할 때는 국조실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평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림 3] 정부업무평가(중앙부처 평가) 관리체계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정부업무평가포털, www.evluation.go.kr)를 통해 공개되며 각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평가결과 우수기관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사항을 정평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7) 부문별 총괄기관이 각 부처가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평가 평가결과에 대해 실시하는 점검

III. 정부업무평가 제도운영 실태 진단⁸⁾

1. 정부업무평가 진단 배경

정부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법 제정을 통해 평가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각 기관의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평가결과를 정책·사업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표 3] 및 [도표 1]과 같이 개별평가 개수가 국조 실의 정비 시점에만 잠깐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평가 부담이 여전하고, 공공행정 영역에서 평가가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에 정책개선 효과는 낮아 부처 간 서열화를 조장할 뿐 당초 법 취지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표 3] 최근 10년간 정부업무평가 전체 개수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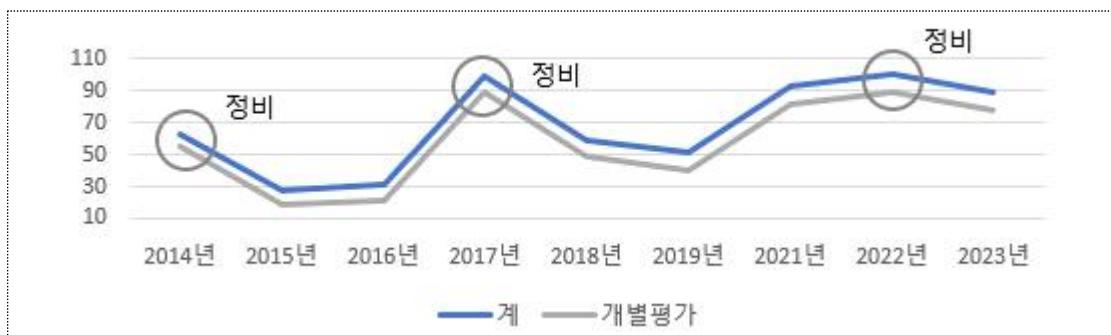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63	28	31	99	59	51	11	93	100	89
특정평가	1	1	1	1	1	1	1	1	1	1
자체평가	7	8	9	9	9	10	10	10	10	10
개별평가	55	19	21	89	49	40	— ^{주)}	82	89	78
비고	정비			정비					정비	

주: 2020년 개별평가 개수는 자료 없음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도표 1] 정부업무평가 개수 변동 추이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8) 이 부분은 이번 감사기간 중 **국회**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용역(정부업무평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이에 감사원은 현재의 정부업무평가 제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제학회**에 의뢰하여 제도운영 실태를 OECD의 정책평가 기준을 차용하여 분석·진단하였고, 각 부처 평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업무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2. 정부업무평가 진단 결과

진단기준

국제학회(책임연구원: A)는 2020년 OECD⁹⁾가 42개 국가의 정책평가 제도를 분석하면서 제시한 ①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② 품질(Quality), ③ 활용(Use of Evaluation Findings) 등 3개의 관점에서 평가 관련 법령과 기존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OECD가 제시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제도화는 평가절차와 주요 기관의 역할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평가와 관련된 법적 기반, 정책 지침, 인센티브 구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평가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평가결과가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품질은 평가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라 독립적이고 적합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의미하며, 평가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저해된다. OECD는 평가가 사전에 계획된 절차나 합의된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하고(체계성, systematic), 검증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엄격성,

9) OECD, 「Improving Governance with Policy Evaluation. Lessons From Country Experiences.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2020년

rigour), 정책입안자 등의 개인적이거나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한 위치에서 수행되어야(객관성, objective) 품질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 기준인 활용은 평가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가 되는지를 의미한다.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품질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 품질과 활용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OECD는 평가 품질과 활용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 평가 분야 정책 담당자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로 인식된다고 본다.

OECD는 위 3개 기준에 따라 회원국 등의 정책평가 제도가 얼마나 충실히 제도화되어 있는지, 엄격한 방법론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그리고 결과 환류가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분석·점검하고 있다.

【**국**】학회는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 제도를 진단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OECD의 3개의 판단기준을 9개의 구성요소로 나누고 이와 관련된 11개 세부기준을 수립하였다. 제도화 측면에서는 평가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는지, 주요 기관의 역할이나 기관 간 조정 절차가 명확하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세부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품질과 관련해서는 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자의 독립성과 역량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활용 부문에서는 평가가 정책결정이나 예산 배분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와 평가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환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진단하였다.

[표 4] 정부업무평가 제도 진단을 위한 분석틀(개개학회)

기준	구성요소	세부기준
제도화	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를 규정하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하는가? 그 법적 강제성이 얼마나 높은가?
	주요 기관의 역할 및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 기관(예: 국조실, 기재부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 각 기관 간의 책임과 권한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 있는가?
	조정 및 협력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간 평가 조정 및 통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가?
품질	품질 보증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보증 시스템이 있는가? 예를 들어 평가지침서나 표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독립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외부 검토나 평가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가?
	평가자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가?
활용	정책 결정에의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 ▪ 평가결과가 정책 개선이나 예산 배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투명성 및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가?
	피드백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평가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있는가?

자료: 개개학회 연구용역 자료 재구성

진 단 결 과

OECD 기준을 토대로 국내의 선행연구와 평가 관련 법령, 정부업무평가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평가자료 등을 분석한 개개학회는 우리나라 평가제도가 제도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으나, 실제 평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평가체계의 중복성이 나타나고 성과관리 부분에서 부처 간 역할분담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평가 품질 관점에서는 정부업무평가법이 평가의 가이드라인과 정책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평가 품질 개선 의무를 명시하고, 평가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으로 신뢰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평가자의 전문성 부족, 일부 평가지표의 모호성과 획일성 등의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활용 측면에서는 평가의 환류 시스템이 미비하고 예산 및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며 평가결과와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3개의 판단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우리나라는 정부업무평가의 법적 근거로 정부업무평가법이 제정되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일관된 평가방식 적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평위를 설치하여 평가의 기획·조정·총괄 역할을 부여하고 정평위 위원장인 민간 대표와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의 시행 및 관리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 아울러, 정평위가 중장기 평가기반을 구축하고 기관 간 업무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가정보 공유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전자통합평가시스템, e-IPSES)이 구축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정부업무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법률과 시행령 등 법령에 두고 있어 OECD도 2020년 조사에서 우리나라를 멕시코와 함께 법적, 제도적 틀을 모두 갖춘 국가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 등을 분석한 한국행정연구원은 [표 5]와 같이 부처별로 실시하는 개별평가로 인해 동일 업무에 대한 중복평가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국조실과 기재부 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각 부처의 자체평가가 실질적인 성과측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과제 등의 정책개선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표 5]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제도화 수준 진단 결과(요약)

구성요소	진단결과
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업무평가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평가의 근거와 기본 절차를 규정하여 법적 타당성 확보
주요 기관의 역할 및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를 총괄하는 국조실과 부문별 주관기관(기재부 등)의 역할이 정부업무평가법에 규정▪ 실제 운영에 있어 국조실과 기재부 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음
조정 및 협력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평위에 평가 기획·조정·총괄 역할을 부여하여 정평위가 기관 간 업무조정을 담당▪ 각 부처의 개별평가로 인해 중복평가 문제와 비효율성 발생

자료: [개]학회 연구용역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부처 간 평가 중복을 줄이기 위해 통합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국조실·기재부 등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평가업무 통합을 제안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각 부처의 성과관리 전략과 정책목표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 품질(Quality)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법은 제7조에서 평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등 평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가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경우에도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조실·기재부·행안부 등 부문별 총괄기관이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상위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평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정부업무평가법 제11조, 제14조). 아울러 정부에 평가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조직과 교육 등 평가자 역량 강화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등 평가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¹⁰⁾

10) OECD는 2020년 조사대상 21개국 중 멕시코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품질기준 요소(품질관리 기준, 윤리기준, 관

다만, **평가학회**는 [표 6]과 같이 품질 보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평가 기준과 지표가 각 부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변경이 잦아 평가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평가지표가 기관의 핵심과제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설정되어 실질적 성과보다 투입 중심의 지표가 많은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평가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는 평가 자료 수집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료 분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평가가 기술적 엄격성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 검증 가능성은 낮추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평가 담당 인력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로 보았다.

[표 6]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품질 수준 진단 결과(요약)

구성요소	진단결과
품질 보증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업무평가법에서 평가의 자율성과 독립성,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평가기준과 지표가 부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주 변경되어 평가의 일관성과 안정성 저해 평가지표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실질적 성과보다 투입 중심의 지표가 많음
독립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하고, 평가 종괄기관이 평가의 적정성을 상위점검 평가자료 수집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해 외부 검증에 한계
평가자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에 평가역량 강화에 필요한 조직·예산과 교육 등 평가자 역량 강화 지원 의무 부과 평가 담당 인력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제한적

자료: **평가학회** 연구용역 자료 재구성

이와 같은 평가 운영상의 문제점은 전반적인 평가 품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재의 평가제도가 연 단위의 단기 성과를 측정하는 것 위주로 이루어져 정책·사업의 장기적 성과와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구조인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진단되었다.

련자의 참여 등)를 모두 갖춘 국가로 평가

▣ 학회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평가 전문인력 확보, 외부 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평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평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평가수행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부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표로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단기적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 성과평가주기를 도입하여 정책의 지속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전략적 성과관리를 포함하도록 평가목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개선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안되었다.

다. 활용(Use of Evaluation Findings)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업무평가법에 마련된 환류 체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업무평가법에는 평가결과를 조직운영, 예산 편성, 인사 및 보수체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8조),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평가결과를 알 수 있도록 전자통합체계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또한, 평가결과 정책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중단·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제29조, 제30조).

그러나 실제로는 [표 7]과 같이 평가결과가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단순 보고서 작성에 그치는 등 정책 환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
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¹¹⁾, 평가결과를 예산이나 인사에 반
영할 때 일부 사업만 평가에 포함되거나 실제 반영되는 데까지의 시차가 발생하
여 효과가 저해된다고 진단하였다.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세부 평
가결과와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과의 소통이나 정책 환류
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아울러, ~~개개~~학회는 평가 대상기관 등 이해관
계자에게 평가등급과 순위, 간략한 근거만 제공되고, 평가결과가 정책 결정자에
게 정책·사업 등의 핵심 정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되지 않아
평가체계 등에 대한 피드백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진단하였다.

[표 7]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활용 수준 진단 결과(요약)

구성요소	진단결과
정책 결정에의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업무평가법에 평가결과를 조직운영, 예산 편성, 인사 및 보수체계에 반영하도록 규정 평가결과가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일부 사업만 평가에 포함되거나 평가결과가 조직 예산 등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여 효과 저해
투명성 및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를 일반 국민이 접속 가능한 홈페이지에 공개 평가의 세부내용과 평가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소통 저해
피드백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감사 등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기관·조직·공무원 등에게 우대조치를 하도록 정부업무평가법에 규정 평가결과가 정책 결정자에게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되지 않아 피드백에 한계

자료: ~~개개~~학회 연구용역 자료 재구성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개~~학회는 평가결과가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도록 환류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점검하는 정평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피드백과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가결과가 정책 변화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상시

11) ~~개개~~학회는 특히 자체평가와 개별평가가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순한 평가보고서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평가와 실제 예산반영 시기 간의 시차를 줄이고 평가결과가 예산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평가결과도 정책 결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내야 하며, 평가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부의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민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 기관이나 기관장들이 정책·사업의 추진 현황이나 미비점보다는 순위, 등급, 점수에만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평가를 통한 성과제고라는 정부업무평가의 본래 목적이 잘 구현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평가를 통제가 아닌 학습과 개선 도구로 인식시키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3.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감사원은 정부 부처에서 체감하는 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평가 부담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각~~학회에 의뢰하여 각 부처의 평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부업무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업무평가 제도 전반적으로 성과의 측정 등 총 4가지의 평가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8] 및 [도표 2]와 같이 성과의 측정 및 공개의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정책·사업의 현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성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부분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정책 개선 및 결과 활용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아 평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평가의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정부업무평가의 목적별 달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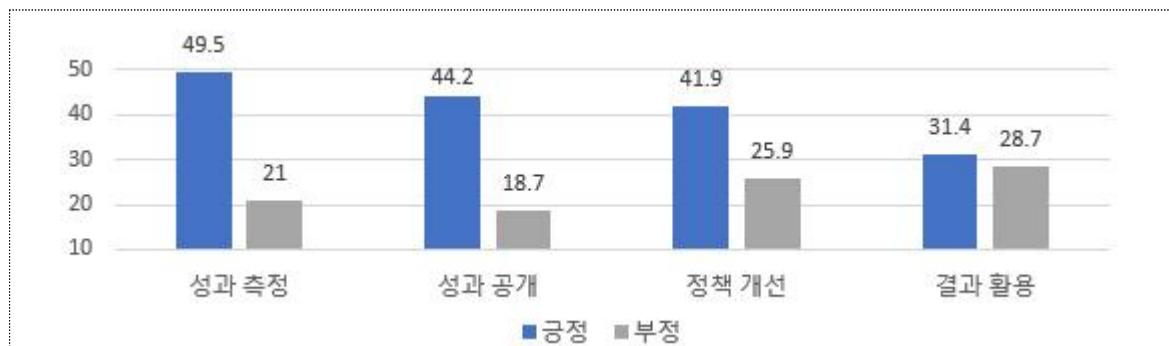
(단위: %, %p, 점)

목적	긍정 응답 (A)	부정 응답 (B)	긍정-부정 차 (A-B)	100점 평균 ^{주)}
평가가 정책·사업의 성과 정도를 정확히 측정·확인하고 있는지 (성과 측정)	49.5	21.0	28.5	56.9
평가가 정책·사업의 성과를 국민 등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성과 공개)	44.2	18.7	25.5	56.3
평가가 정책·사업을 개선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정책 개선)	41.9	25.9	16.0	53.0
평가가 조직·인사·예산·보수 등과 연계·반영되고 있는지 (결과 활용)	31.4	28.7	2.7	49.6

주: 설문조사는 7점 척도로 실시하였으며, 100점 평균은 전체 응답값 평균의 100점 환산값임

자료: [\[기기학회\]](#) 설문조사 자료 재구성

[도표 2] 정부업무평가 목적별 달성 여부



자료: [\[기기학회\]](#) 설문조사 자료 재구성

한편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평가 부담과 관련해서는 [표 9]와 같이 여러 유형의 평가 간 유사·중복으로 인해 평가 부담이 있다는 응답이 63.2%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 13.2%보다 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정부업무평가법 제정 이후에도 평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유사·중복 평가에 따른 평가 부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p, 점)

항목	긍정 (A)	부정 (B)	긍정-부정 차 (A-B)	100점 평균 ^{주)}	평가부담 여부
각종 평가의 중복으로 인해 평가업무 부담이 가중되거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지	63.2	13.2	50.0	76.5	

주: 설문조사는 7점 척도로 실시하였으며, 100점 평균은 전체 응답값 평균의 100점 환산값임

자료: [\[기기학회\]](#) 설문조사 자료 재구성

4. 시사점

정부업무평가 제도운영 실태 진단 및 평가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2006년

정부업무평가법 제정으로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효율적인 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정부의 성과관리와 연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실제 정부업무평가 운영 과정에서 당초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평가의 신뢰성이 낮고 불필요한 부담만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업무평가 제도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번 감사에서는 정부업무평가법 제정 취지인 실효성 강화와 부담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평가 관리체계를 [표 10]과 같이 ① 제도화 분야, ② 품질 분야 및 ③ 활용 분야로 세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표 10] 감사중점

구분	주요 내용
제도화	▪ 실제 평가체계가 당초 설계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품질	▪ 평가기준·방법, 절차 등 실제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활용	▪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 예산·인사 연계 등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IV.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2006년 정부업무평가법 제정으로 정부업무평가의 법적 근거와 절차, 객관성·투명성 등 기본 원칙, 주체별 역할과 조정 체계, 환류 방법 등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실히 구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개별평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평가 부담이 여전하고, 기관 간의 소통 부족으로 성과관리 체계가 연계되지 않고 있었다. 평가 품질 측면에서 정부의 주요 평가가 당초 계획이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어 신뢰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자체평가 결과가 정책 개선이나 인사·조직 운영에 제대로 활용된다고 보기 어렵웠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 요약

가. 평가 제도화 분야

- ① **개별평가 관리체계의 실효성 미흡:** 국조실은 개별평가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신설 전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나, 신설 전 협의제도는 이행관리 수단이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고 실태점검에서 확인한 유사중복 평가 정비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부처의 평가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
- ② **기관 간 소통 부족으로 정부 성과관리체계 연계 미흡:** 정부업무평가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두 성과관리제도가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주관부처인 국조실과 기재부의 이견으로 서로 연계되지 않은 채 각각 운영되어 비효율 야기
- ③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간 중복해소 필요:** 기재부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목적이 유사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모두 받도록 하는 등 중복평가

나. 평가 품질 분야

- ① 특정평가 시 충분한 평가자료 없이 평정: 특정평가 항목 중 ‘목표달성을 질’ 등 2개 지표는 충분한 평가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평가 기초자료와 다르게 점수를 부여하는가 하면 ‘정부혁신’ 지표는 조정회의에서 평가내용과 무관한 사유로 평가결과(등급)를 변경
- ②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를 부당 산출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상위점검 미흡: 각 부처에서 평가 기준과 다르게 예산집행률 점수를 산출하고 외부지적 사례를 누락하는 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총괄기관인 기재부는 평가의 적정성을 미점검
- ③ 설문조사 표본 수가 당초 계획에 미달하고 부패와 무관한 지표로 청렴도 측정: 권익위는 당초 목표로 한 표본 수에 미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채 그대로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부패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권익위 업무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청렴도평가 부실 운영

다. 평가 활용 분야

- ①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 미흡: 국조실은 주요정책 부문의 특정평가와 자체 평가를 총괄하면서 각 부처가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심층분석 없이 형식적인 조치계획만 제출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각 기관의 성과급 반영실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환류 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평가의 실효성 저하
- ②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와 중복된 개별평가 실시: 행안부와 인사처는 정부업무평가법에 규정된 자체평가 결과를 별달리 활용하지 않으면서 인사정보화 부문의 자체평가와 유사한 개별평가를 신설한 후 평가결과를 인사운영 등에 활용

이에 대하여 국조실장에게 개별평가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개별평가 사전협의 제도와 실태점검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성과계획서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통보하였다.

평가 품질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조실장과 행안부장관에게 특정평가 과정에

서 일부 평가항목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자에게 평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점수 조정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기재부장관에게는 각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평가점수가 기준과 다르게 산출되는 일이 없게끔 지도·감독하라고 통보하였다. 또한, 권익위원회에게는 청렴도평가 시 기준에 미달된 표본량을 기초로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당초 취지에 맞게 부패와 무관한 평가지표를 재정비하며, 평가대상기관이 실시하는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가 청렴도평가와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청렴도평가 전반에 걸쳐 실효성 제고 및 평가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조실장에게는 주요정책과 관련된 평가결과가 실질적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게끔 미흡·부진 과제에 대한 심층분석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고, 행안부장관과 인사처장에게는 행정관리역량 부문의 자체평가와 유사한 개별평가는 자체평가와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한편 감사원 의뢰로 ~~기기~~학회에서 실시한 ‘정부업무평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및 ‘평가 담당자 대상 평가제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국조실과 권익위 등에 제공하여 향후 평가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2. 분야별 감사결과

① 평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분야

실 태

▣ 학회의 정부업무평가 제도 진단결과, 우리나라는 평가 근거가 법률에 있어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법률에 국조실·기재부·행안부 등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와 관련된 주요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평위에 평가 기획·조정 역할을 부여하는 등 제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면서도 ▣ 학회는 실제 평가제도가 운영되는 데 있어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조실과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각 부처의 개별평가로 인한 평가중복과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점이 기존 연구 등에서 반복 제기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 학회의 진단결과를 감안하여 법령에 규정된 개별평가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국조실과 기재부 등 기관 간의 역할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점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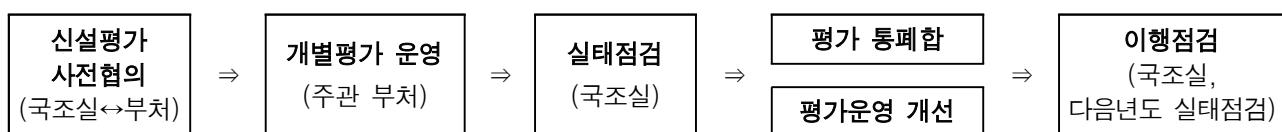
가. 개별평가 관리체계

개별평가는 정부업무평가법 제3조에 따라 각 부처가 다른 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로서, 평가의 통합실시 원칙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 평가 시기 등으로 통합실시가 어려운 경우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Ⅲ”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2024년 개별평가 수는 총 78개이며, 국조실이 주기적으로 폐지·통폐합 등의 정비를 하

고 있으나 각 부처가 지속적으로 개별평가를 신설하면서 국조실 정비 이후 개별 평가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

개별평가 관리를 위해 국조실¹²⁾은 [그림 4]와 같이 평가 신설단계에서는 정부업무평가법 제3조에 따라 평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신설 필요성과 기존 평가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다른 평가와의 유사·중복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평가에 대해서는 정평위 의결을 거쳐 통폐합,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4] 개별평가 관리체계 흐름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국조실은 2016년 이후 2024년까지 각 부처로부터 12개 개별 평가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아 7개는 신설을 수용하였고 5개는 불수용하였다¹³⁾. 아울러, 개별평가 운영실태 점검은 2014년과 2017년, 2022년 등 세 차례 이루어졌고 [표 11]과 같이 총 91개¹⁴⁾ 평가에 대해 폐지, 통폐합 등을 권고하였다.

[표 11] 개별평가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개선방안 현황

(단위: 개)

구분	2014년	2017년	2022년	계
폐지·통폐합 결정	42	34	15	91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2) 국조실이 사전협의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평위 의결을 거쳐 확정

13) 연도별 구체적인 현황은 후술하는 '개별평가 관리체계의 실효성 미흡' 부분의 [표 16] 참고

14) 평가지표 개선, 평정 방식 개선 등과 같은 단순 개선 권고사항은 제외함

나. 정부 업무 성과관리체계

정부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법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 계획과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계획서 수립 등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국조실이 기본방향을 수립·시달하는 등 제도를 총괄하고 각 부처는 재정·비재정 사업을 포괄하여 작성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기준에 투입 중심에서 산출물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2006년 도입되어 기재부가 정한 성과계획서 수립 지침 등에 따라 각 부처가 매년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비교하면 [표 12]와 같이 소관 부처와 작성 대상 등에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작성 방법에 있어서는 각 부처의 임무와 목표를 정하고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년간의 목표달성을 여부를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수치로 측정·관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표 12]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비교

구분	성과관리 시행계획(국조실 총괄)		성과계획서(기재부 총괄)
유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부 업무의 단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이후 성과지표 달성을 등을 점검부처 업무 전반에 대한 개요, 업무별 추진계획 등을 기재		
차이점	근거 법률	정부업무평가법 제6조 등	「국가재정법」 제85조의2, 제85조의6 등
	대상	부처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업무 (주요정책 및 재정사업 포괄)	재정사업
	작성 체계	성과목표체계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프로그램 예산체계 (임무-비전-전략목표-프로그램-단위사업)
	평가단위	관리과제	프로그램
	활용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국회 예산안 첨부서류, 성과보고서
	수립 시점	당해연도 3월	전년도 5월 기재부 제출, 9월 국회 제출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문제점

1-1 개별평가 관리체계의 실효성 미흡

가. 업무 개요

국조실은 개별평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평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표 13]과 같이 각 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평가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별평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존 평가와 유사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는 평가에 대해 정평위 의결을 거쳐 통폐합 등을 권고하고 있다.

[표 13] 개별평가 신설·유지 필요성 판단기준(국조실)

구분	항목	판단기준
사전협의	평가 해당 여부	▪ 정부업무평가법상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평가 주체, 대상 및 내용)
	신설 타당성	▪ 법적 근거, 평가체계의 타당성, 평가의 중복 여부 및 개별실시의 필요성 등
실태점검	운영 필요성	▪ 법적 근거, 평가체계의 타당성, 평가의 중복 여부 및 평가운영의 적절성 등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1961년 심사분석 제도 도입 이후 평가 대상과 범위, 주안점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된 우리나라 평가제도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법 제정으로 평가의 기본 원칙과 체계가 재정립되었고,¹⁵⁾ 각종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평가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각 부처의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평가기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 평가의 통합실시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정부업무평가법 제3조와 제21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15)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구체적인 변천 과정은 전술한 “Ⅱ-2”항 참고

에 대한 평가는 통합해서 실시하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평가의 통합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평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개별평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부처가 개별 평가를 신설하기 전 정평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사전협의를 상·하반기 각 1회로 정례화하였으며, 매년 개별평가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2년 주기로 개별평가 운영 필요성과 타 평가와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각 부처는 평가를 통해 소관 정책·사업의 이행력과 영향력¹⁶⁾을 확보 하려는 유인이 있으며, 실제 개별평가의 수는 국조실의 실태점검 시기에만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경향이 반복되어 2014년 55개에서 2023년 78개로 오히려 증가하였다([표 3] 참고). 그리고 평가의 성격 또한 비계량,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¹⁷⁾ 피평가기관은 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 노력·성과 등에 대한 실적보고서 작성과 같은 평가자료 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조실은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개별평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과도한 평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 전 사전협의 제도와 개별평가 운영실태 점검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법의 제정 취지인 통합평가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이번 감사기간 중 평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별평가 증가 원인으로 평가 주관 기관의 성과관리 수단으로서 평가방식을 선호(46.3%),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통제력 확보(35.2%) 등을 꼽고 있음

17) 이번 감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제도를 진단한 ~~기획~~학회는 중앙부처가 소관 정책·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평가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의 이행력과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비계량, 정성적인 방식을 통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 부담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4. 7. 15.~9. 6.) 중 국조실의 개별평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부처가 국조실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국조실의 통폐합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이행관리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등 평가관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고, 국조실은 개별평가 정비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통합평가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었다.

감사결과 확인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사전협의의 평가 신설 관리기능 미흡

공공부문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평가 신설단계에서부터 기존 평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는 않는지, 별도의 평가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제대로 검토되어 불필요한 평가가 새로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법에 평가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는 평가를 통해 이행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유인이 있어 이미 운영 중인 평가에 대해서는 폐지나 통폐합 등의 정비가 어려우므로 사전협의 과정에서 개별평가 신설 여부가 충실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각 부처는 개별평가 신설 시 ‘단순 점검’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¹⁸⁾으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조실도 각 부처의 신청이 없으면 평가 신설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고, 설령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더라도 정부업무평가법상 사전협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표 14]와 같이 국조실이 ‘개별평가 사전협의 지침’을 마련(2017. 3. 17.)한 이후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신설¹⁹⁾된 개별평가 41개 중 6개²⁰⁾(14.6%)

18) 이번 감사기간 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각 부처의 평가 담당자는 사전협의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40.7%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 자체도 낮은 수준

만 사전협의를 거쳤고, 이번 감사기간 중 실시한 개별평가 전수조사²¹⁾에서도 [별표 1] “전수조사(2024년) 결과 추가 확인된 개별평가 현황”과 같이 추가로 확인된 7개²²⁾ 개별평가 모두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다수의 개별평가가 평가의 필요성 및 유사·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신설·운영되고 있었다.

[표 14] 개별평가 사전협의 현황

(단위: 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신규평가 수 ¹⁾	1	0	-	34	2	4	7 ²⁾	48
사전협의 건수	2	1	0	0	4	2	0	9
수용	1	0	0	0	3	2	0	6
불수용	1	1	0	0	1	0	0	3

주: 1. 2017년과 2021년은 전수조사의 영향으로 신규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신설된 평가는 11개이나 이 중 4개는 공공기관 대상 평가(정부업무평가법상 명시적인 사전협의 의무는 없음)
여서 제외함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국조실은 사전협의 과정에서 정부업무평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조건부로 신설을 허용²³⁾하고, 해당 평가가 2024년 12월 현재까지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등 사전협의 자체를 부실하게 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19) 당해연도에 신설된 평가와 해당 평가를 운영 중인 사실이 당해연도에 새로 파악된 경우를 모두 포함

20)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여권사무 대행기관 업무평가(외교부)의 경우 2019년 사전협의를 거쳤으나 국조실은 신설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쳐 신설된 평가에서는 제외함

21) 각 부처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해 국조실(평가지원센터)의 개별평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별함

22)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보건복지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국토교통부), 소방교육 훈련기관 평가(소방청), 인사혁신 수준 진단(인사처),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평가(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행안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환경부) 등 7개

23) 정부업무평가법 제3조에 따르면 개별평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평가 신설을 허용한 사례

- 지방혁신평가(행안부): 2018년 사전협의 당시 국조실은 해당 평가의 근거법령이 없다며 평가시행 전 법적근거 마련을 조건으로 신설을 허용하였으나, 현재까지 평가를 법적근거 없이 운영²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미조치
- 국민신문고 운영평가(권익위): 2016년 사전협의 당시 국조실은 해당 평가의 근거법령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주요 국정방향인 ‘국민과의 소통강화’ 시책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개별평가를 허용
 - * 다만, 2017년부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행안부)와 통합하여 실시

(2) 국조실의 소극적 관리로 개별평가 정비 효과 저해

① 개별평가 관리대상을 정부업무평가법보다 축소

“(1)항”과 같이 개별평가 사전협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조실은 관리대상 평가의 개념을 정부업무평가법보다 축소 적용하여 평가 대상기관에 부담을 초래하는 ‘사실상의 평가’가 평가 필요성이나 유사·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업무평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가는 ‘정책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관별 등급이나 순위를 매기는지 여부는 평가의 개념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²⁵⁾

그런데 국조실은 개별평가 판단기준에 [표 15]와 같이 ‘기관별 등급·순위를 도출하는지’를 추가함에 따라 기관별 등급·순위만 매기지 않을 뿐 각 기관으로부터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지표별 점수를 산정하는 등으로 사실상 개별평가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평가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4) 행안부는 법적 근거로 정부업무평가법 제3조, 제20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평가의 통합실시 원칙 및 특정 평가 근거법령에 불과

25) 정부업무평가법은 정부의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등급이나 순위 부여 여부가 평가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경우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보다는 기관 간 서열화를 강조하는 문제도 발생

[표 15] 개별평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기준	주요 내용
1. 명칭	▪ “평가”라는 용어와 관계없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면 평가로 간주
2. 주기	▪ 정례적, 지속적 주기로 시행 * 일시적 또는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 제외
3. 주체	▪ 평가의 주체가 부처의 장
4. 대상	▪ (부처 및 소속기관) 다수의 타 부처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정책 등 ▪ (지자체) 다수의 지자체(장)가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 ▪ (공공기관) 다수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정책 등
5. 내용	▪ 사전에 평가계획 등을 통해 별도의 평가지표 제시 ▪ 일정 기간 내 업무추진 등의 실적 점검 및 분석 ▪ 지표별 배점에 따른 점수 부여 또는 정성평가에 따른 우수·미흡 등 기관별 등급·순위 도출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국조실은 2021년 개별평가 전수조사에서 82개는 개별평가로 인정하고 19개²⁶⁾는 ‘단순 점검’이라는 사유로 개별평가에서 제외하였는데, [별표 2] “2021년 개별평가 제외 내역”과 같이 19개의 제외 대상 중 별도의 평가지표 없이 목표달성을 여부 등만 확인하는 등 ‘국조실 개별평가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단순 점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별 참여촉진 이행결과 점검’²⁷⁾(여성가족부) 등 8개²⁸⁾(42.1%)에 불과하였고, ‘양성평등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여성가족부) 등 나머지 10개²⁹⁾³⁰⁾(57.9%)는 ‘국조실 개별평가 판단기준’ 중 등급·순위 부여 요건만 충족하지 않을 뿐 매년 평가항목과 평가지표가 포함된 평가계획

26) 국조실이 단순 점검이라는 사유로 제외한 35개 평가 중 사전 타당성 평가나 추천·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등 개별평가로 볼 수 없는 16개는 제외

27) 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지 여부만을 점검

28) 성별 참여촉진 이행결과 점검(여성가족부), 건강가정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여성가족부),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추진실태 점검(행안부), 여름철 사전대비 추진실태 평가(행안부), 소하천 실태점검(행안부), 상수원 관리 실태 평가(환경부),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평가(환경부), 인명구조전 운용기관 현지실태점검(소방청) 등 8개

29)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격관리·운영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교육부), 직업교육 훈련 세부실천계획 평가(고용노동부),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평가(국토교통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농림축산식품부), 수어발전 시행계획 평가(문체부),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이행점검(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여성가족부), 국유재산 특례운용실태 조사(기재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30) 나머지 평가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경우에 평가를 거쳐 순위를 도출하고 있으나, 사전에 평가지표를 평가 대상기관에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개별평가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을 수립하여 각 부처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평가자료를 받아 지표별 점수를 산출하는 등 평가에 해당하는데도 기관별 등급이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사유로 개별평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이와 유사하게 2024년 조사³¹⁾에서 도 국조실은 [별표 3] “2024년 개별평가 전수조사 검토결과”와 같이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건복지부) 등 6개 평가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순위·등급을 매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별평가에서 제외한 사례

-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1개 지표를 통해 계획의 적절성, 목표달성을 노력도, 지역주민 파급력 등 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국조실은 순위·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우수사례 선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유로 개별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처럼 실적보고서 작성 및 평정,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등 개별평가와 동일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실상의 개별평가에 대해 평가의 신설·존치 필요성이나 기존 평가와의 유사·중복성이 검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되는 등 개별평가 관리에 사각이 있었다.

② 개별평가 사전협의와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미흡

국조실은 2016년 이후 2024년 9월까지 총 12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받아 5건에 대해서는 신설을 불수용하였다. 그런데 이 중 ‘여권사무 대행기관 업무평가’(외교부) 등 2개 평가는 국조실이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평가 주관기관이 사전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평가를 신설·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폐지나 통폐합 요구 등의 조치 없이 내버려 두는 등 이행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31) 21개 평가 후보군을 발굴하여 이 중 10개는 평가가 아니라고 판단

신설 불수용 평가의 시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둔 사례

- 여권사무 대행기관 업무평가(외교부): 2019년 사전협의 당시 국조실은 평가의 타당성이 부족(대행기관들의 업무수준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적점검으로 운영하도록 한 이후 2021년 외교부가 해당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두어 현재까지 운영 중
- 다문화 가족정책 시행계획 평가(여성가족부): 2016년 사전협의 당시 국조실은 시행계획의 실적확인·점검 차원이므로 평가가 아닌 점검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해 여성가족부가 해당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017년에서야 재차 권고하여 2018년부터 점검으로 전환

또한, 국조실은 주기적으로 개별평가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기존의 실태점검에서 폐지·통폐합 등 정비³²⁾하도록 한 평가에 대해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부처는 [표 16] 및 [별표 4] “개별평가 폐지·통폐합 등 미이행 내역”과 같이 국조실이 세 차례 실태점검을 통해 폐지·통폐합을 결정한 91건³³⁾ 가운데 27건(29.7%)³⁴⁾을 이행하지 않았다.

[표 16] 개별평가 폐지·통폐합 등 미이행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4년	2017년	2022년	계
폐지·통폐합 결정	42	34	15	91
개별평가 유지 ^{주)} (미이행률)	10 (23.8)	14 (41.2)	3 (20.0)	27 (29.7)

주: 폐지·통폐합 등을 결정하였으나 이후 전수조사에서 여전히 개별평가를 시행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국조실은 2014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운영 실태 점검’과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중복되므로 통폐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2022년에는 2014년 결정에 대한 검토 없이 두 평가를 모두 존치하도록 결정³⁵⁾하는 등 [표 17]과 같이 11개 평가에 대해 평가체계나 방식에 이렇다 할

32) 개별평가 폐지, 합동평가나 다른 개별평가와 통합, 점검으로 전환, 일몰 적용 등

33) 평가 수 기준으로는 21개이며, 운영실태 점검 때마다 폐지·통폐합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들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하나의 평가가 여러 차례 정비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건수와 차이가 있음

34) 폐지·통폐합이 결정된 평가가 다음 번 실태점검 때 그대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미이행으로 판단하였음

35) 2014년에 통폐합 요구를 받은 환경부는 상하수도 통합평가로 운영하다가 2021년 이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변화가 없는데도 기존의 폐지·통폐합 요구와 다르게 존치를 결정하는 등 점검 결과의 일관성이 없었다.

[표 17] 동일 평가에 대한 일관성 없는 개선요구 현황

연번	평가명	주관기관	개선요구		
			2014년	2017년	2022년
1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점검으로 전환	개별평가 존치
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점검	국토교통부	-	합동평가로 통합	개별평가 존치
3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평가	국토교통부	-	점검으로 전환	개별평가 존치
4	기축방역 우수사례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폐지	합동평가로 통합	개별평가 존치
5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	농촌진흥청	합동평가로 통합	-	개별평가 존치
6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법무부	-	점검으로 전환	개별평가 존치
7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평가	보건복지부	-	합동평가로 통합	점검으로 전환
8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점검으로 전환	일몰 적용(2018년)	개별평가 존치
9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몰 적용(2015년)	개별평가 존치	-
10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점검	환경부	개별평가 통합	-	개별평가 존치
11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환경부		-	개별평가 존치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국조실은 사전협의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폐지·통폐합 등 평가 정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이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4년 감사일 현재 운영 중인 78개 개별평가 가운데 12개³⁶⁾(15.4%)는 최소 한 차례 이상 정비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들이었다.

평가와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로 다시 분리하였고, 국조실은 2022년 두 평가가 개별적으로 평가체계를 갖추어 운영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존치 결정

36)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점검(국토교통부),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평가(국토교통부), 기축방역시책평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농촌진흥청),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법무부),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평가(보건복지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평가(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점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보건복지부),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행안부), 지자체 재정분석(행안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폐지·통폐합 등을 결정하고도 현재까지 운영되는 개별평가 사례

- 가축방역시책평가(농림축산식품부): 국조실은 2014년 합동평가와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해당 평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년에는 합동평가로 통합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평가를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로 명칭만 변경하였는데도 국조실은 2022년 존치를 결정
-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평가(보건복지부): 국조실은 2017년 합동평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합동평가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고, 2022년에는 평가항목 대부분이 실태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점검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나 합동평가로 통합하거나 점검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 중

또한, 폐지·통폐합을 요구한 평가 이외에 국조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7개 평가 중 4개³⁷⁾(57.1%)는 현재까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 요구하였으나 미이행한 사례

- 도로정비평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련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채 미이행
- * 2022년 개선요구 후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총 11회 개정되는 동안 평가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음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조실은 사전협의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폐지나 통폐합 등을 요구하여도 평가 주관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나 이행 강제 수단이 없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하면서, 각 부처에 개별평가 사전협의 의무 등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개선작업 중인 개별평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조실의 평가 통폐합 요구 등의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판단의 연속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다.

37) 도로 정비평가(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점검(국토교통부),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평가(국토교통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다만, 국조실은 평가의 범위를 축소해서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부처가 등급·순위 결정 없이 정책의 효과성 여부 등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를 마련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소관 정책·사업에 대한 점검·분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검·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사업의 효과가 수혜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감사원 또한 그와 같은 확인·점검을 기관의 부담을 이유로 축소하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책·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³⁸⁾ 정부업무평가법에서 등급·순위를 평가의 개념요소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급·순위만 매기지 않을 뿐 평가계획 수립·시달, 평가자료 제출, 평가지표별 점수 부여 등 실질적으로 평가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사실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업무평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국조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개별평가 관리대상을 축소하여 사실상의 평가가 유사·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별평가가 사전 협의 없이 신설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별평가 실태점검에 따른 개선방안의 이행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평가부담 완화 취지에 따라 개별평가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8) 개개학회는 각 부처가 단순히 사업의 효과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부처의 통제력, 영향력 확보를 위해 비계량,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등 평가가 남설되고 있다고 지적

1-2

개별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 관리 부실

가. 업무 개요

국조실은 2021년 정부업무평가법 제33조에 따른 정부 업무평가 지원기관인 행정연구원³⁹⁾을 통해 개별평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별평가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연구원은 2021. 11.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용역 계약(계약금액: 197,780,000원, 계약기간: 2021. 11. 1.~2022. 3. 1.)을 체결하여 위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개별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경위를 살펴보면 국조실은 2006년 정부업무평가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평가가 지속 증가하여 각 부처의 부담이 누적되고 개별평가 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1. 5. 21. 정평위 의결을 통해 개별평가 운영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개별평가 DB를 구축하여 성과지표 단위까지 분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조실은 2022. 3. 18.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87개 개별평가를 통폐합하거나 운영 개선을 권고하였고 2022년 4월부터 개별평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별평가 DB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행정연구원이 **▣**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제안요청서⁴⁰⁾에 따르면 개별 평가관리시스템은 매년 개별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시로 생성되는 평가 데이터를 DB에 업로드하여 개별평가에 대한 일률적인 실태조사의 비효율성⁴¹⁾을 없

39) 국조실은 2021. 2. 10. 행정연구원과 ‘정부 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개별평가 운영실태 점검, 신설 개별평가의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연구, 정부 업무평가단 관리 지원 등을 위탁

40)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등 제반서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의하여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포함됨

41) 개별평가마다 평가기관과 시기가 상이

애고, 업로드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의 원자료 형태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별평가의 속성에 따른 검색, 필터 기능 등이 가능하도록 한 후 테스트와 수정 기간을 거쳐 2022. 3. 1.까지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별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의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평가기관이 수시로 개별평가 정보를 입력·갱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요 과업(요구) 내용에는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등 성능 확보,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 제공 등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고, 요구사항이 충족되더라도 실제 사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사항 미충족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연구원의 「예산회계규정」 제100조와 제109조, 제110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하는 경우 계약서와 기타 관계 서류 등에 의거하여 계약 내용이 이행되었는지 제대로 검사한 후 인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와 제21조, 제5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인수에 의해 사업 종료가 확인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했다고 하는 경우 시스템 임시개방 등을 통해 실제로 각 평가기관이 개별평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DB를 축적할 때 개별평가 시스템의 처리속도 지연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복잡성

등으로 실제 사용이 현저히 어려울 정도의 문제 소지가 없는지 테스트하여 개별 평가 관리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인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시스템 활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사하여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는 등 계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리고 국조실은 개별평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위탁기관으로서 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위 시스템이 당초 목적에 맞게 구축되어 활용될 수 있게 면밀히 점검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행정연구원은 2021년 12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연말까지 사업예산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④와 시스템 구축이 일단 완료된 것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되 2022년 초까지 시스템 구축을 계속하도록 협의하고 2021. 12. 22.⁴²⁾ 완료계, 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시스템 인수처리를 하고 잔금 98,890,000원을 지급⁴³⁾하였다. 그리고 행정연구원은 하자보증 기간을 2021. 12. 22.~2022. 12. 22.로 하는 하자보증서를 ④로부터 발급받았다.

이후 2022년 3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④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하자 행정연구원은 개별평가를 운영하는 각 기관에 시스템을 임시개방하여 DB 업로드나 실제 평가에 활용 가능한지는 점검하지 않고, 행정연구원 계약 담당자가 임시 ID로 접속했을 때 데이터 업로드와 요구 기능이 작동하는지 등만 확인 한 채 같은 해 6월경⁴⁴⁾ 국조실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42) 이 당시 시스템 기능 관련 구축은 80% 정도 진행되어 2022년 1월 남은 과업이 완료될 예정이었고, ④는 실제로 2022년 1월경 남은 과업을 수행하고 같은 해 3월경 국조실 등에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실서버 행정망 이전 작업 및 검색 엔진 등의 최종 납품을 완료하였음

43) 98,890,000원은 2021. 12. 1. 선금으로 지급

44) 잔여 시스템 구축 작업과 행정연구원의 선행데이터 입력으로 인해 시간 경과

보고를 받은 국조실은 구축된 시스템을 평가기관에서 사용할 때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실제 개별평가 운영·관리에 활용 가능한지 임시개방 등의 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행정연구원에 확인하도록 하지 않고, 실무자가 선행 데이터 입력 여부⁴⁵⁾와 평가정보 검색 등 구현 기능의 작동 여부만 확인한 채 개별평가 관리시스템을 2023년부터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 안에 개별평가를 운영하는 각 부처가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하자가 확인되지 못한 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용역업체를 통해 시스템을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였다.

이로 인해 국조실이 2023년 6월 각 부처에 개별평가 관리시스템을 개방했을 때 자료 업로드 시 시스템 장애 발생, 부처 담당자가 자료를 일부 수정할 경우 기존 저장된 자료의 손실 발생, 시스템 속도 저하에 따른 자료 업로드 지연·실패, 부처 담당자용 인터페이스 복잡성으로 인한 사용자 민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⁴⁶⁾한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즉시 조치할 수 없었고 국조실⁴⁷⁾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점을 바로 개선할 수 없었다.

결국 국조실은 이러한 운영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사용을 보류한 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각 부처가 개별평가를 수행한 뒤 평가 관련 자료를 행정연구원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24. 7. 18. 개별평가 관리시스

45) 시스템 구축 사업 과업내용에 기존에 수기 운영된 DB 자료를 신규 DB 구조에 맞게 전환하여 입력하도록 하는 등 초기 DB 구축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평가자료를 외부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보안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행정연구원에서 직접 입력하기로 결정

46) 국조실은 시스템을 부처에 개방하기 전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개별평가 관리시스템과 관련없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위탁운영업체인 주식회사 [redacted]에 점검을 요청하여 무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무상 작업의 한계로 여전히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47) 개별평가 관리시스템 용역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국조실에서 직접 집행했어야 한다는 국회의 2021년 결산 시정 요구에 따라 정보화사업 성격의 용역은 국조실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기로 함

템 기능 및 편의성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된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⁴⁸⁾

계약(주식회사 [REDACTED], 계약금액: 457,660,000원)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보완 중이다.

이처럼 국조실과 행정연구원의 개별평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리 소홀로 인해 2024년 10월 현재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고 있었고 개별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도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조실은 현재 진행 중인 고도화 사업을 원활히 완료하여 평가자료 축적·관리 등을 차질 없이 개선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을 개별 평가 관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였고, 행정연구원 또한 시스템이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조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국조실은 시스템 구축 당시 행정연구원으로부터 시스템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을 시연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평가기관의 시스템 사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평가기관에 사용상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까지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장애 문제는 2023년 6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업자인 주식회사 [REDACTED]의 지원을 받아 해결⁴⁹⁾하였고, 속도 지연, 사용 복잡성 문제는 하자보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8) 개별평가 관리시스템 개선·보완(93,087,000원 상당) 항목에 장애·오류의 주원인인 사용자 편이성 및 DB 관리기능 개선 등 포함

49)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업자 주식회사 [REDACTED]는 개별평가 관리시스템과는 관련이 없어 시스템 장애 등을 보완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국조실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안정화 작업 실시, 이후 국조실은 2024년 7월 전자통합평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개별평가 관리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및 통합관리 기능 개선을 추진

그러나 개별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의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시기가 상이한 개별평가의 일률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제거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수시로 개별평가 정보를 입력·갱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개별평가 담당 공무원 등록 기능, 공지사항 기능 등이 주요 과업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개별평가 제도개선(안)(2022. 3. 18.)에 2022년 4월부터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스템 사용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국조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국조실은 사업 위탁기관으로서 시스템이 구축 목적에 맞게 평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자료 업로드 가능 여부 등만 확인하고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시범 개방 등을 통해 실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제안요청서에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등 성능 확보,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 제공 등이 과업(요구)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속도지연, 사용 복잡성 문제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이 건은 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내 시스템 개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시스템이 당초 취지에 맞게 구축돼 활용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2023년 6월 시스템 개방 이후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로 인한 평가기관의 시스템 사용 중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나, 2023년 안정화 작업 이후에도 평가기관의 자료 업로드 시 여전히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시스템 예러 등으로 고도화 사업 완료 전에 시스템을 개방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시스템 장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국조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구축 완료 후 기능 미달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개별평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 후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역을 통해 구축한 시스템이 당초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이원화된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가. 업무 개요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법 제6조 등에 따라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를,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 등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통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나. 판단기준

기재부(구 기획예산처)는 1999년 기준의 예산제도가 정부업무 성과를 명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산출물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일부 부처 대상으로 사업별 성과목표와 지표, 측정방법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고, 2006년 「국

가재정법」 제정으로 성과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이 모든 중앙관서로 확대되었다.

한편, 국조실은 종전의 정부업무 평가제도가 개별·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평가 업무의 과중과 평가와 성과관리 간의 연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어 재정사업 뿐만 아니라 규제, 제도개선 등 일반정책까지 포괄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기관-부서-개인의 성과가 연계된 통합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2006년 정부업무평가법을 제정하여 모든 중앙관서로 하여금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도입된 성과계획서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도입 전부터 중복문제가 제기⁵⁰⁾되었고, 각 부처가 매년 유사한 내용의 성과계획서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이중으로 작성할 부담을 지게 되자 정평위는 2006년 9월 성과관리 시행계획으로 성과계획서를 대체하도록 하는 등 정부 성과관리 제도를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성과관리 제도의 일원화 이후에도 정부업무평가 제도와 예산제도를 각각 총괄하는 국조실과 기재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거나 조정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국조실과 기재부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각각 검토하여 각 부처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각 부처는 자체평가와 예산(안) 수립·제출 시기마다 검토 의견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수정하는 등 단순 통합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평위는 2009. 5. 29.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을 분리운영하기로 기재부는 재정사업에 한정하여 성과계획서를 별도 작성하고 국조실은 여기에 주요정책을 추가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완성하기로 하였으며, 두 가지 계획서

50) 기재부(구 기획예산처)는 2005년 성과계획서가 국조실의 정부업무평가, 행안부(구 행정자치부)의 목표관리제도, 인사처(구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성과계약제도와 중복된다고 지적

모두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체계를 유지하고 재정사업 부문의 관리과제는 프로그램 예산상의 단위사업과 일치시키는 등 두 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이후에도 국조실은 2011년 8월 성과관리 제도의 중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수행기관: ~~한국~~대학교)을 실시하여 [표 18]과 같이 두 제도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2012년부터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연관이 있는 재정사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재부와 두 제도 간의 통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표 18] 2011년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통합 성과관리 일정

시점	절차
2012. 5. 1. ¹⁾	▪ (국조실/기재부) 2013년 성과계획서 ²⁾ 작성지침 시달
2012. 6. 30.	▪ (각 부처) 2013년 성과계획서 제출
2012. 8. 15.	▪ (국조실/기재부) 검토 결과 각 부처 통보
2012. 9. 15.	▪ (각 부처) 2013년 수정(안) 제출 * 검토의견과 예산안 협의·조정 결과 반영
2012. 10. 2.	▪ 2013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2013. 1. 10.	▪ (각 부처) 2013년 성과계획서 수정 제출 * 예산(안) 심의 결과 반영, 대통령 임기 시작연도의 경우 일정 조정

주: 1. 2011년 연구용역으로 2012년의 통합 성과관리 수립 일정을 제시

2.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가 통합된 성과계획서를 의미함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정평위는 2013. 3. 8.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재부가 매년 5월경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정평위에 보고하는 등 국조실과 기재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의결하였다.

따라서 국조실과 기재부는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와 성과관리를 연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도록 한 정부업무평가법의 제정 취지, 제도

도입 단계부터 제기된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연계하도록 한 정평위 의결 내용 등에 따라 서로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원화된 성과관리 제도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과도한 작성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기재부는 최소 2016년⁵¹⁾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방향과 작성단위,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기준 등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담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정평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국조실 또한 기재부에 정평위 보고를 요청하지 않는 등 두 제도의 연계·통합을 위한 소통·협의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채 각각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2021년 4월경 2022년도 성과계획서부터는 기본 작성단위를 [별표 5] “성과관리 분리운영 이후 성과계획서의 양식 변화”와 같이 ‘프로그램’으로 상향 조정⁵²⁾하는 등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과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간의 연계·통합 운영이 가능한지와 두 제도 분리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이 없는지 점검하였다.

(1) 두 성과관리제도의 작성 대상이 대부분 일치하는 등 연계·통합 운영 가능 먼저, 기재부 등 24개 장관급 부처⁵³⁾의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기본 작성 단위인 관리과제 1,074개 중 863개(80.4%)가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인 재정사업과 연계되어 있었고 성과계

51) 2024년 10월 현재 국조실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평위 안건 목록에 미포함

52) 기재부는 거시적·전략적 성과목표관리 강화 등을 이유로 2022년도 성과계획서부터 작성 단위를 기존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상향 조정

53)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에 기재된 성과지표의 근거, 목표치 설정 방법 등을 정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2023회계연도의 24개 장관급 부처를 표본으로 설정하여 분석

획서상의 성과지표 751개 가운데 292개(38.9%)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지표

와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등 두 제도 간의 상호 연관성이 높았다.

또한,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기본 구조도 [표 19] 및 [별표 6]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구조 비교(2024년도 기준)”와 같이 그간의 성과 및 향후 방향, 기관의 임무·비전 등 일반현황과 함께 과제별로 주요 내용과 목표, 성과지표, 추진계획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등 유사하였다.

[표 19]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양식 중 유사 사항 비교(2024년도 기준)

구분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양식 발췌(2024. 3월) ^{주)}	2025년도 성과계획서 양식 발췌(2024. 4월)
그간의 성과 및 향후 방향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4년도 정책추진 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2024년도 정책추진 방향	제2장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2. 2025년도 재정운용 전략
일반현황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000부(청) 일반현황 (1) 조직 (2) 인원 (3) 재정현황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요 (1) 주요특성 (2) 목표체계 (3) 목표 및 과제 현황	제1장 성과계획목표체계 3. 목표 및 과제현황 4. 조직 및 성과관리 추진체계 현황 □ 조직 □ 인원 □ 성과목표관리 추진체계 5. 2025년도 재정 및 성과관리대상 사업 정보 현황 □ 재정현황 □ 성과관리대상 사업 재정현황
목표, 성과지표, 추진계획 등	III. 세부 추진계획 ① 관리과제명 □ 추진배경(목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제3장 프로그램목표 추진계획 1. 프로그램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표 □ 추진배경 및 의의 □ 주요 추진전략 3.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주: 2025년과 2024년 양식이 동일하나 감사 당시 2025년 양식 작성 전이어서 2024년 자료로 대체함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위와 같이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부서를 기준으로, 성과계획서는 예산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성단위에 있어서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체계 중 ‘관리과제’를 평가단위로 작성하는 반면, 성과계획서는 ‘임무-비전-전략목표-프로그램-단위사업’ 체계 중

‘프로그램’을 평가단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도 교육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표본 분석한 결과, [표 20]과 같이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인 ‘학교 및 교실 수업의 혁신을 통해 학생 맞춤 교육 지원’의 경우, 성과계획서의 단위사업인 ‘창의 교육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작성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어, 성과 관리 시행계획의 ‘학교 및 교실 수업의 혁신을 통해 학생 맞춤 교육 지원’이라는 관리과제의 세부 내용을 쪼개서 성과계획서의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등 2개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단위사업)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치, 표현 등만 다르게 작성하고 있었다.

[표 20]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내용의 유사성 분석 사례(2023년도 교육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성과목표 (‘교실 수업 및 교육 콘텐츠의 혁신을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현한다.’)		성과계획서의 관련 재정사업 내역	
관리과제	관련 내용	관련 단위사업명 (프로그램-단위사업)	관련 내용
학교 및 교실 수업의 혁신을 통해 학생 맞춤 교육 지원	▪ 창의교육 지원, 미래핵심역량 강화 등	창의교육 역량 강화 지원 (1031-321)	▪ 창의교육 콘텐츠 개발·확산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함양한 인재 양성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수학습법 개선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 역량 강화 (2232-321)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편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 실행 기반 조성	▪ 미래형 초·중등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 등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1031-302)	▪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 과정 개편 및 안착 지원 등
	▪ 고교학점제 안정적 도입 추진 등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1702-300)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지원 등

자료: 대상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이에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작성단위⁵⁴⁾ 등 일부 양식을 연계

54) 현재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로, 성과계획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각각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는 성과계획서상 프로그램의 하위 단위인 ‘단위사업’ 및

할 경우, 정부예산안 편성 시점인 전년도 5월에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를 먼저 작성한 후 당해연도 3월에 제출하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이미 작성된 성과계획서를 기초로 수치, 현황 등 일부 사항만 업데이트 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작성⁵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⁵⁶⁾

(2) 두 제도를 연계 없이 각각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과 업무부담 초래

그러나 이와 같이 연계 운영이 가능한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국조실과 기재부가 각각 운영함에 따라 각 부처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 계획서를 각각 작성·제출하고 있었고,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⁵⁷⁾와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보고서 또한 각각 작성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처의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작성·제출 사례

- **(고용노동부)**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총 287쪽으로 관리과제는 54개, 성과지표는 103개고, 성과계획서의 경우 총 247쪽으로 프로그램 목표는 9개, 성과지표는 26개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54개 중 46개(85.2%)가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과 연관이 있었지만, 성과지표 103개 중 성과계획서와의 공통 지표는 4개(3.9%)에 불과
- 고용노동부는 2024년 2월경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를 진행한 후 151쪽 분량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024년 3월경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233쪽 분량의 성과보고서 작성
 - 그리고 세부사업 45개(성과지표 92개)를 대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진행한 후 2024년 5월경 843쪽 분량의 자율평가 결과보고서도 작성

또한, 각 부처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각각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표 21]과 같이 최근 5년간(2019~2024년) 19.1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성과지표 개발비용을 이중으로 투입하고 있었다.

‘세부사업’과 매칭되는 구조이므로 작성양식을 통일하면 작성단위를 일치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음

55)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닌 비재정사업의 경우 성과관리 시행계획만 별도 작성

56) ~~국회~~학회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간 목표와 성과지표의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므로 국조실과 기재부가 합동으로 통합시행을 위한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의견 제시

57) 부처별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로,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보고서에 첨부

[표 21] 최근 5년간(2019~2024년) 성과지표 개발 비용

(단위: 개, 명, 백만 원)

구분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계획서	합계
부처 수	37	29	-
외부 과업 참여자 수	3,653	625	4,278
지출 금액	1,327	588	1,915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각 부처가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각각 국조실(당해연도 4월)과 기재부(전년도 6~7월)의 검토를 받고 있어 [별표 7]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의 목표치가 상이한 성과지표 명세”와 같이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경우, 서로 동일한 성과지표 161개 중 41개 (25.5%)의 목표치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는 등 정부업무 성과관리가 일관성 없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위 41개 지표 중 19개(46.3%)는 예산과 연계되어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표 22]와 같이 성과계획서의 목표치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치 대비 최대 36.7%p, 실적치 대비 최대 266.7%p 낮게 설정되었고, 기재부의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 지표의 경우와 같이 실적치(78.4점)가 성과계획서의 목표치(77.9점)는 달성하나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치(79.2점)는 달성하지 못하는 등 두 성과관리 제도 간 결과(목표달성 여부)가 불일치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표 22]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간 목표치 차이 및 초과달성을 분포

(단위: 개)

구분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목표치 차이 분포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치 - 성과계획서 목표치)	성과계획서의 초과달성을 분포 (성과계획서 기준 달성을 - 100%)
0%p 미만	-	3
0%p 이상~5%p 미만	10	6
5%p 이상~10%p 미만	5	4
10%p 이상~30%p 미만	3	3
30%p 이상	1	3
합계	19	19
최댓값	36.7%p	266.7%p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성과관리가 일관성 없게 이루어지는 사례

- **(국토교통부)** 성과계획서 수립 시 ‘고속철도 이용자’ 성과지표에 대하여 예산과 관련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8,968.3만 명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부서 BSC 평가에 반영되는 목표치로서 도전적으로 ‘9,300만 명 이상’으로 설정
- **(환경부)** 2022년 5월 ‘하천 수질 목표달성을’ 성과지표에 대하여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를 75.4%로 설정하였으나, 2023년 3월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성과지표 개선 의견에 따라 성과지표의 구성을 변경한 후 목표치는 61.7%로 설정
 - 그런데 2023년 3월 기준 이미 확정된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치를 각각 다르게 운영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실시한 설문조사⁵⁸⁾ 결과, 각 부처에서는 [표 23]과 같이 현재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각각 작성함에 따라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두 제도를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⁹⁾

58) 이번 감사기간 중 ~~국회~~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각 부처의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작성은 37명이 응답

59) 행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는 2012년, 2013년, 2017년 등 계속하여 유사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모든 설문조사에서 부처별 담당자들은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가 서로 중복되고, 이로 인한 업무부담이 과중하므로 두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23]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등 성과관리 대상 부처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설문조사 문항	긍정적 응답	부정적 응답
▪ 현재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작성양식이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21.6	40.5
▪ 현재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계획체계 및 작성단위가 충분히 동일한지	27.0	32.4
▪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는지	67.6	10.8
▪ 현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에 먼저 작성한 성과계획서가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지	18.9	21.6
▪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간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	-	-
① 작성 양식의 차이	73.0	2.7
② 작성 시기의 차이	73.0	2.7
③ 작성 내용의 차이	64.9	8.1
④ 계획체계의 차이	64.9	5.4
⑤ 총괄 부처의 이원화	67.6	5.4
▪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59.5	24.3

주: 설문조사는 7개 척도(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약간 그렇지 않음-보통-약간 그러함-그러함-매우 그러함)로 시행되었고,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은 '보통'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을 3개씩 나눠서 구분

자료: 가가학회 설문조사 결과 재구성

주요 주관식 응답

- (성과관리 시행계획) 형식적인 목표와 관리과제의 운영 그리고 부처 직원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시행계획과 자체평가 간의 연계를 이해하지 못함 /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간략한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도 간결화가 필요함
 - (성과계획서) 성과관리 시행계획과의 중복성이 커 보임 / 디브레인 입력과 파일 제출의 이중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 / 과다한 행정력 소요 및 불필요한 자료 작성
 - (종합)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 4개 제도가 너무 비슷하고 사실상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데 부처 직원들은 일을 4번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피로도가 너무 높음 / 중복되는 지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제도를 줄이든지 해야 함

관계기관 의견 국조실과 기재부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작성 대상, 작성단위, 작성 시기 등이 달라 두 제도 간 통합은 어려우나, 통합성과관리의 취지 및 성과관리 대상 부처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두 기관 간 소통·협의하에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간 생략 또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작성 항목 빨굴, 작성양식 공동 활용 등 제도 간 연계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은 서로 협의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간의 작성단위를 일치시켜 보고서의 작성항목을 연계하는 등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간 중복해소 필요

가. 업무 개요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등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체평가)를 총괄·관리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라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실효성,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이하 “보조사업 연장평가”라 한다) 주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제2항에 따르면 기재부장관 등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기재부는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편방안’(2013. 11. 28.),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15. 5. 22.) 등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중복으로 인한 부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두 평가를 통합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표 24]와 같이 평가단위

가 ‘세부사업’으로 동일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실시된다는 점,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목적이 유사하다.

[표 24]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비교

구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근거 법률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평가 목적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평가결과 활용	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평가 대상	중앙관서별 소관 재정사업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
평가 단위	세부사업	세부사업
평가 주체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	보조사업 평가단
평가 주기	매년	사업별 3년(존속기간) 주기
평가 결과	우수-보통-미흡 (미흡 사업은 10% 이상 지출구조조정)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표 25]와 같이 사업목적의 명확성, 재정지원 필요성, 실집행 실적,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을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지표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표 25]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유사 평가항목

재정사업 자율평가(2023년 기준) 평가항목	보조사업 연장평가(2023년 기준)	
	평가항목	유사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의 중요성, 사업목적의 명확성, 재정지원 필요성 등 ▪ 법적 근거, 재정분담 적정성, 사업방식의 적정성(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등) 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 법적 근거, 목적의 명확성 등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 실적 달성 여부 등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1.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성과 달성을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집행의 효율성 ▪ 예산집행률 ▪ 예산집행 적절성 및 노력도(부정수급 방지 등)	1-4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 1-5 사회적 가치 실현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성과 우수성 1.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적정성, 목표치 합리성, 실적 달성 여부 등	2-2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 보조금 반환, 정보공시 등의 준수 등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2. 집행의 효율성 2. 집행의 효율성
4. 성과 우수성 ▪ 사업 성과의 우수성, 사회적 가치 실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 부정수급 의심사업 조치 여부 등	2. 집행의 효율성

재정사업 자율평가(2023년 기준) 평가항목	보조사업 연장평가(2023년 기준)	
	평가항목	유사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
5. 환류 및 개선노력	2-5 평가결과 이행여부	5. 환류 및 개선노력
	2-6 실집행 실적	2. 집행의 효율성

자료: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및 보조사업 연장평가 편람 재구성

따라서 기재부는 보조사업의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어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받아야 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 간 중복을 해소하고 각 부처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기재부는 매년 중앙관서에 시달하는 통합평가지침에서 평가제도 간 일관성 제고 및 중복 최소화를 위하여 [표 26]과 같이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고용노동부) 등 다른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받는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⁶⁰⁾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반면,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었다.

[표 26] 중복일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제외되는 재정사업 평가 명세

연번	평가명	주관 기관	근거 법률	평가대상	평가단위
1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등	일자리 사업	내역사업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	세부사업(일부만 평가대상인 경우, 내역사업 단위)
3	국가균형발전사업 종합평가	지방시대 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지역균형발전사업	세부사업
4	재난안전사업 평가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사업	세부사업
5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

60)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달리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한 경우, 각 부처는 세부사업 중 해당 평가를 이미 받은 내역사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

연번	평가명	주관 기관	근거 법률	평가대상	평가단위
6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기재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복권기금 지원사업	세부사업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된 보조사업은 중앙관서별 ‘자체평가위원회’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받는 동시에 기재부가 구성한 ‘보조사업 평가단’으로부터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받는 등 이중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2023년에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받은 세부사업 278개 중 같은 해에 재정사업 자율평가도 받은 사업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147개(52.9%) 사업이 2개 평가를 모두 받는 등 평가대상이 서로 중복되었다.

그리고 위 147개 사업에 대한 두 평가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표 27]과 같이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 14개 중 9개(64.3%)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우수, 보통 판정을 받았고,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 83개 중 63개(75.9%)가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우수, 보통 판정을 받는 등 두 평가의 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의 10% 이상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 31개 중 25개(80.6%)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폐지 판정이나 감축 판정⁶¹⁾을 받아 부처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이중 평가 및 판정의 실익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1) 최소 10%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미흡 판정과 달리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감축은 ‘일정 수준’, ‘높은 수준’ 등으로 감축 정도를 규정

[표 27]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중복 사업의 평가결과 비교

(단위: 개, %)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조사업연장평가	미흡		보통		우수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5	35.7	8	57.1	1	7.1	14	100.0
감축	20	24.1	50	60.2	13	15.7	83	100.0
사업방식 변경	6	12.2	31	63.3	12	24.5	49	100.0
정상추진	-	-	1	100.0	-	-	1	100.0
합계	31	21.1	90	61.2	26	17.7	147	100.0

주: 평가결과 비율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비일관적인 평가 사례

-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의 경우,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평가단은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미흡 등을 사유로 단계적 폐지(출연사업으로 비록 전환)로 판정한 반면에,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자체평가위원회는 ‘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면서 법적, 재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진흥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평가단은 예산(2023년 82억여 원)을 높은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판정한 반면에,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자체평가위원회는 ‘우수’ 등급으로 평가

더욱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매년 1~5월경 부처별 평가계획에 따라 통상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고,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1~4월경 서면평가, 1~2차 대면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이중 평가로 인해 각 부처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었다.

이중 평가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사례

-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경우, 부처별 담당자는 1월 말까지 ‘기초조사보고서’를 보조사업 평가단에 제출하고, 3월에 서면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의견서를 제출한 후 평가위원과 면담을 통해 1차 대면평가를 받으며, 4월에는 1차 대면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의견서를 제출한 후 2차 대면평가를 거침
-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각 부서는 2월 초까지 ‘실적자료’를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1차 평가를 받고,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2차 평가, 2차 평가에 따라 하향 조정된 사업인 경우, 3차 평가를 거쳐 3월 말까지 최종결과를 확정하여 기재부에 제출
- 2023년 환경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각 부서가 작성한 사업자료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가 1차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각 부서가 1차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2차 대면평가를 진행하여 최종결과 확정

관계기관 의견 기재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목적, 평가 주체,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의 차이와 평가 제외시 한 평가를 통해 다른 평가의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폐평가 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받아야 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통합 성과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해당 연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 간 중복을 해소하고 각 부처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평가 품질(Quality) 분야

실태

▣ 학회는 정부업무평가법에서 평가의 자율성과 독립성,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도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조실·기재부·행안부 등이 자체평가 결과를 상위점검하도록 하는 등 평가 품질 확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 학회는 평가 기준과 지표가 부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변경이 잦아 평가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평가의 기술적 엄격성이 갖춰지지 않아 외부 검증 가능성은 낮추는 문제 등이 있어 전반적인 평가 품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감사에서 특정평가, 자체평가 중 재정사업 자율평가⁶²⁾, 개별평가 가운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주요 평가의 운영에 있어 평가 품질 측면에서 평가의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저해되지는 않는지 점검하였다.

가. 특정평가

특정평가는 정부업무평가법 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정의 성과 제고 및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각 부처의 주요 사업, 현안 시책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표 28]과 같이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가점) 부문으로 구성⁶³⁾되어 있다.

62)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 기준대로 평가가 되었는지보다는 평가의 실효성을 중점으로 점검하였음.
점검결과는 후술하는 “③”항의 ‘평가 활용’ 분야 참고

63) 평가 부문 및 배점은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 평가 시점별로 상이

[표 28] 특정평가의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2023년 기준)

(단위: 점, %)

평가부문	평가 주관기관	배점	평가항목
주요정책	국조실	50	이행노력(25), 목표달성을(25), 정책효과(40), 국민만족도(10)
규제혁신	국조실	20	핵심분야 규제개선(60), 규제 품질관리(25), 규제혁신 소통(5), 규제혁신 만족도(10)
정부혁신	행안부	10	혁신역량(20), 혁신성과(70), 국민 체감도(10)
정책소통	문체부	20	정책소통 활동(15), 정책소통 성과(70), 소통 만족도(10), 온라인 체감도(5)
적극행정	인사처	3 ^{주)}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45), 적극행정 추진성과(40), 국민 적극행정 체감도(10), 공무원 적극 행정 체감도(5)

주: 적극행정 부문은 총점 외에 3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 부여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국조실이 특정평가 운영을 총괄하면서 부문별 주관기관을 두어 각 주관기관이 세부 평가항목(지표)⁶⁴⁾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국조실에 송부하면 국조실이 정평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⁶⁵⁾

평가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한다.

나. 자체평가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각 부처가 기관장의 책임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표 29]와 같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등 3개 부문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법 제11조에 따

64) 다만 평가 지표, 방법 등은 정평위 의결사항임

65) 부문별로 각 부처의 평가결과(A~C)를 산출하고, 2023년까지 산출한 부처별 종합등급은 2024년 폐지

른 부문별 총괄기관이 자체평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상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표 29] 자체평가 현황

부문	총괄기관	
주요정책	국조실	
재정사업 (6개 세부 부문)	일반재정사업	기재부(총괄)
	R&D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	행안부
	균형발전	지방시대위원회
	일자리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관리역량 (3개 세부 부문)	조직	행안부
	인사	인사처
	정보화	행안부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자체평가는 부처별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포함된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종 평가결과는 각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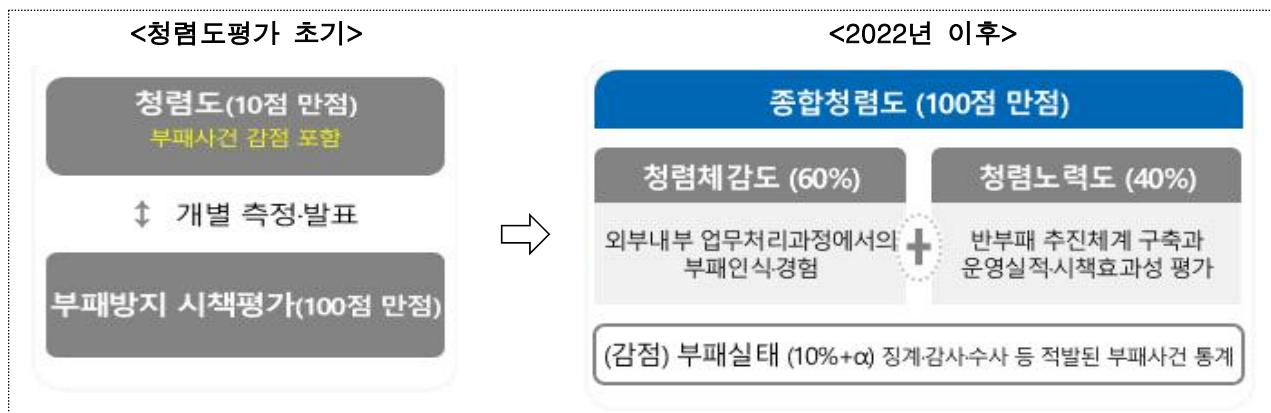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개별평가)

공공기관⁶⁶⁾ 종합청렴도 평가(이하 “청렴도평가”라 한다)는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개별평가의 일종으로, 권익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27조의 2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66) 권익위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내용에서는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구분)

권익위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평가 대상기관의 민원인이나 내부 직원이 체감하는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별개로 권익위는 기관의 반부패 시책 운영 실적과 그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권익위는 2022년 3월 국조실로부터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두 가지 평가를 통폐합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유사·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22년도 평가부터는 두 평가를 통합하고 [그림 5]와 같이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를 각각 60%, 40%의 비율로 하여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그림 5] 청렴도평가 체계도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청렴도평가 대상기관은 평가 초기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위주로 약 80개 수준이었으나, 이후 [별표 8] “청렴도평가의 주요 변동 연혁”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지속 확대되어 2024년 기준 총 718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권익위는 기관 유형별(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로 각 기

관의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및 종합청렴도 득점을 유형별 평균 점수와 비교⁶⁷⁾(상대평가)하여 기관별 등급(1~5등급)을 산정·발표하고 있다.

문제점

1

충분한 평가자료 제공 등 특정평가 운영 내실화 필요

가. 업무 개요

국조실은 특정평가를 총괄 운영하면서 주요정책 부문 주관기관으로서 각 부처의 정책 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정부혁신 부문 주관기관으로서 각 부처의 혁신역량, 혁신성과 등을 평가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업무평가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평가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평가지표 중 정성평가 지표는 사전에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평가점수(등급)가 그대로 산출되는 정량평가 지표에 비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평가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종합하는 방식의 평가에서 각 평가자의 평가가

67) 유형별 평균 점수 + [$\pm 1.5(\text{상수}) \times \text{유형별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1등급, 5등급을 산정하고, 2~4등급은 일정한 간격으로 산정함(2023년 기준)

완료된 이후 평가점수를 재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정 절차와 조정 범위 등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조실은 특정평가의 각 항목을 평가하는 데 있어 평가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⁶⁸⁾, 행안부는 특정평가 과정에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 점수를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최소한의 평가점수 조정 절차 및 조정 범위 등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국조실이 직접 평가하는 주요정책 부문 평가의 경우 다른 부문⁶⁹⁾과 달리 ‘성과 창출 노력’과 ‘목표달성의 질’ 항목의 평가는 국조실 국장급 직원 4명이 직접 하면서 평가 시기 또한 다른 부문의 평가가 끝난 후 마지막⁷⁰⁾에 실시하여 특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조⁷¹⁾였고, 행안부가 평가하는 정부혁신 부문은 평가위원(평가단)의 평가 이후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평가등급을 조정한 이력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특정평가의 주요정책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 평가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68)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 정성평가 현황과 발전방향”(2015년)에는 충분한 자료 부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음

69) 특정평가 중 규제혁신(국조실), 정부혁신(행안부), 정책소통(문체부), 적극행정(인사처) 부문과 주요 평가(공공 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정성평가 항목 평가위원은 모두 외부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외부 위원이 포함되어 있음

70) 국조실은 평가항목 중 12월 내에 결과가 도출되는 정책효과 및 국민만족도와 달리, 이행노력 및 목표달성도는 각 부처의 실적을 12. 31. 기준으로 취합하므로 1월 중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함

71) 2023년에 ‘성과 창출 노력’ 지표의 배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되었고 ‘목표달성의 질’ 지표가 신설(배점 7점)되어 주요정책 부문 100점 중 5점에서 17점으로 비중 확대

(1) 주요정책 부문(국조실)

국조실이 매년 수립하는 ‘주요정책과제 성과 창출 노력’ 및 ‘목표달성의 질’ 평가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는 국조실의 국장급 공무원 4명(2023년⁷²⁾의 경우 평가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사회복지정책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으로 구성, 이하 “내부평가단”이라 한다)이 평가 대상기관인 각 부처가 성과 창출을 위해 투입한 노력, 리스크 등 위기관리 및 기관장 노력, 부처 간 협업 노력, 외부 지적사항에 따른 정책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주요정책 부문의 ‘정책효과’ 항목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가 평가단이 부처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1차 서면평가를 한 후 2차 대면평가에서 기관설명회를 거쳐 각 위원들이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과 달리, ‘성과 창출 노력’과 ‘목표달성의 질’ 항목은 내부평가단에서 국조실의 평가 실무부서인 평가총괄과가 2023년 기준 159개 주요정책과제(484개 성과지표)의 평가점수를 [표 30]과 같이 사전에 부여하고 작성⁷³⁾한 평정표(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평가총괄과의 평정표(안)을 그대로 확정⁷⁴⁾하고 있었다.

72) 2021~2022년의 경우 평가실장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

73) 평가총괄과의 평가점수 산정 방식은 “(2)항”에서 후술함

74) 2021년에는 성과 창출 노력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였고, 전체 162개(국정과제 98개, 주요정책과제 64개) 중 17개의 평가점수를 1점 간격으로 조정(조정 사유는 미기재)

[표 30] 평정표(안) 자료 구성^{주)}

(단위: 점)

부문	주요정책과제	내용			비고 ²⁾
		① 성과 창출 노력(10)	② 목표달성의 질(7)		
OO부	1 주요정책과제 A	6	4.60	4.7 ¹⁾	3.73 ② 단순 투입·과정지표
	2 주요정책과제 B	5		4.0	
	3 주요정책과제 C	4		3.0	
	4 주요정책과제 D	3		3.8	
	5 주요정책과제 E	5		3.3	

주: 1. 1개의 주요정책과제별로 약 3~5개의 성과지표가 있고 실무부서는 각각의 성과지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내부평가단에 제공되는 평정표(안)에는 성과지표명, 성과지표별 점수가 아니라 주요정책과제명, 3~5개 성과지표 점수의 평균값이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내부평가단에서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

2. 비고란의 설명은 1번 주요정책과제의 3~5개의 성과지표 중 어느 것에 대한 설명인지 알 수 없음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평가 과정에서 내부평가단에는 평가총괄과의 평정표(안)과 함께 각 부처가 과제별로 작성한 성과 창출 노력 자료(과제당 2분의 1페이지)와 국조실의 해당 부처 담당자가 평가지표별로 [표 31]과 같이 작성한 목표달성의 질 자료(부처당 1페이지)⁷⁵⁾가 “평정 참고자료”⁷⁶⁾로 배포되는 등 평가위원이 해당 항목의 평가를 내실 있게 하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31] 평정 참고자료 중 ‘목표달성의 질’ 자료 구성^{주)}

부문	내용
성과 달성 난이도	① 난이도 적절 / 목표치 달성: 8개 지표 및 이에 대한 개략적 설명 ② 난이도 적절 / 불가피하게 목표치 미달성: 2개 지표 및 이에 대한 개략적 설명 ③ 난이도 부적절 / 목표치 달성: 5개 지표 및 이에 대한 개략적 설명
증빙자료의 적절성	① 증빙자료 적절: 11개 지표 및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② 증빙자료 부실: 4개 지표 및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주: 정책과제의 성과지표가 15개인 경우의 예시임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75) 성과지표의 대표성, 난이도 등을 평가하는 항목인데도 성과지표 목록 및 성과지표별 점수 미제공

76) 각 부처에서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실무자들로서 각자 2, 3개 부처를 맡아 언론 보도, 국회 논의 사항 등을 연중 모니터링하고 부처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평정 참고자료를 작성하면 평가총괄과에서 전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일부 보완

또한, 국조실(평가총괄과)이 ‘성과 창출 노력’과 ‘목표달성을 질’ 항목의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각 부처의 노력, 기관장의 노력, 부처 간 협업 노력,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등 추상적인 평가요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객관적 평정사유 설명도 없이 평가총괄과장과 담당자가 논의하여 평가점수(안)을 산정하고 있었다.⁷⁷⁾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484개 성과지표 중 장관급 기관 357개 성과지표를 확인한 결과, 국조실은 “난이도 적절 / 목표치 달성”으로 평정 참고자료를 작성한 153개 성과지표에 대해 2~3점을 부여한 반면, “난이도 부적절”, “목표치 미달성”, “증빙자료 부실” 등으로 평정 참고자료를 작성한 30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4~5점을 부여하는 등 총 183개(51.3%) 성과지표에서 평정 참고자료와 평가점수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국조실은 이러한 불부합 사례들에 대해서 그 평정사유를 내부평가단에 설명하지 않았다.

평정 참고자료와 평가점수 간의 불부합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만족도 지표(창의·도전적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는 평정 참고자료상 난이도가 적절하고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평가총괄과는 3점을 부여
- (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및 배당절차 개선 지표(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는 평정 참고자료상 4가지 목표로 이루어진 복합성과지표이나 2개의 성과지표가 3~4월에 이미 달성이 되어 난이도가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평가총괄과는 5점을 부여
 - 이에 대해 평가총괄과는 평정 참고자료의 내용과 평가점수가 부합하지 않는 데 대한 근거나 사유를 기재한 자료를 별도로 내부평가단에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내부평가단은 이를 그대로 승인

77) 국조실 평가총괄과는 과제별, 성과지표별 평가점수(안)을 평가총괄정책관과 정부업무평가실장 보고를 거쳐 내부평가단에 제공

(2) 정부혁신 부문(행안부)

정부혁신 부문 평가는 [별표 9] “특정평가 중 정부혁신 부문 평가방법”과 같이 6개 평가항목(11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단을 나누고⁷⁸⁾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결과(우수, 보통, 미흡 등 3등급)를 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조정 절차와 조정 범위·근거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실제 다른 주요 평가에서는 [표 32]와 같이 평가계획 수립 단계에서 평가점수 조정 사유와 범위 등을 사전에 마련해 두고 있다.

[표 32] 주요 평가제도의 평가점수 조정 근거와 범위

주관부처	평가명	조정 범위 ¹⁾	조정 사유	조정 내역 공개 여부 ²⁾
국조실	규제혁신 평가 (총괄조정분과)	지표 점수만 조정	▪ 특정 분과의 평정 관대화 경향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지표 점수만 조정	최근 4년간 조정 사례 없음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급 자체를 조정	▪ 채용비리, 양성평등 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재난·사고, 불공정 거래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 평가위원과 개별 접촉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어난 경우 ▪ 국가경제 기여, 공공복리 증진, 국가이미지 제고 등 공공 기관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등급 자체를 조정	▪ 비리, 중대한 안전사고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문제가 된 기관 ▪ 평가 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 기관 ▪ 해당 연도 평가에서 허위·오류자료가 발견된 기관	공개

주: 1. 국조실의 경우 다수의 지표 중 규제혁신 평가단이 평정한 점수만 조정하고, 행안부의 경우 등급 자체를 조정하고 지표 점수는 그대로 두는 반면 기재부의 경우 등급 자체만 변경할 수도 있고 변경 사유 관련 지표 점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

2. 대외 또는 변경 대상 부처에 공개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행안부는 정부혁신 부문 평가에서 항목별 평가가 완료된 이후 항목 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두지 않고, 총괄조정회의⁷⁹⁾를 통해 조

78) 정부혁신평가단 18명,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단 3명,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단 5명, 기재부·조달청 합동평가단 7명, 공공기관 혁신 평가 TF 10명(2023년 기준)

79) 정부혁신평가단 단장, 간사, 분과위원장 4명, 총 6명만 참여(이 외에 행안부 평가 담당 실무자 참석)하는 회의

정 사유에 해당하는 평가지표 점수가 아니라 평가등급 자체가 검토·조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 내역과 사유도 정평위 등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23년 평가의 경우 총괄조정회의를 통해 [표 33]과 같이 항목별 평가단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환경부에 대해 타 부처에 확산할 만한 핵심 우수사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보통 등급으로 하향 조정⁸⁰⁾하였으며, 환경부의 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평가등급이 상향되었다.

[표 33] 정부혁신 부문 평가등급 조정 내역

기관명	변경 전		조정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부	우수	보통	타 부처에 확산할 만한 혁신적인 핵심 우수사례 부존재
고용노동부	보통	우수	환경부의 등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평가등급 상승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와 같이 조정한 등급 및 순위에 맞게 조정 사유와는 무관⁸¹⁾한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지표 점수를 [표 34]와 같이 변경하였다.

[표 34] 정부혁신 부문 평가지표별 점수 조정 내역

(단위: 점)

기관명	지표명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민관협력 활성화		유니버설 디자인 등 편의성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행안부	10	8	9.23	7.73	8.5	7.5	18.95	17.45
환경부	8.5	6.5	-	-	-	-	-	-
고용노동부	6	7	-	-	-	-	-	-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행안부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구성된 다수의 평가단에서 평가한

로서 각 평가단의 평가결과 산출된 순위 및 등급표를 총괄조정회의의 회의자료로 상정

80) 이 외에 행안부는 평가 주관부처로서 1위를 할 경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1위에서 2위로 순위만 조정

81) 총괄조정회의에는 정부혁신평가단 단장, 간사와 분과위원장만 참석(분과위원장은 미참석)하고 본인들이 평가한 점수는 바꾸려 하지 않는 위원들의 성향 때문에 단장과 간사가 평정을 담당한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지표 점수 위주로 조정

평가결과를 총괄조정회의라는 절차를 통해 특별한 제한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내역도 정평위 등에 보고하지 않고 있어 정부혁신 부문 평가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조실과 행안부는 향후 평가 시 성과지표 및 지표별 점수표 등 충분한 평가자료 제공과 함께 평정 근거를 남기고, 총괄조정 회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 범위,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평가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국조실은 평정표(안)의 경우 평가총괄과에서 부처 제출 실적, 증빙자료, 전문가 TF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후 평가총괄정책관 및 정부업무평가실장의 보고를 거쳐 마련된 것이고, 내부평가단은 평정표(안) 및 평정참고자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련 부처 정책을 조정·관리하는 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 경험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조실은 평정표(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할 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평가단에 제공되는 평정참고자료와 평정표(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내실 있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정성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자가 정성적 판단을 함에 있어 객관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자에게 충분한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등 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총괄조정회의라는 절차를 통해 평가 점수 및 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조정 절차, 범위 등을 마련하고, 조정 내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등 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재정사업 자율평가 운영 부적정

가. 업무 개요

기재부는 정부업무평가법 제11조 및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이에 따라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를 포함한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정사업을 [표 35]와 같이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6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 10% 이상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표 35]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

(단위: 점)

평가항목	평가 기준(배점)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구성이 적정한가?(10)
2. 예산집행의 효율성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30)
3. 성과 달성을도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40)
4. 성과 우수성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10)
5. 환류 및 개선 노력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10)
6. 가점·감점	부처 상황에 따라 가점·감점 부여 가능(± 3 점 이내) (예시) 전년도 성과계획서상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 등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업무평가법 제7조와 「국가재정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85조의9와 제85조의10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기재부는 매년 수립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통해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10% 이상의 예산을 원칙적으로 삭감⁸²⁾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는 2023년 1월 평가항목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재정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통합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항목별 평가방법과 세부기준은 통합평가지침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한편,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82) '평가대상 사업 총예산의 1% 삭감'이라는 총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충족한 경우 사업별 10% 삭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 부처가 평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평가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평가의 신뢰성이 저해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반이 훼손된다.

따라서 기재부는 최소한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과 각 부처가 평가자료를 누락할 유인이 있는 항목 등을 선별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점검하여 각 부처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운용 과정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기재부는 2017년도 평가까지는 전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부처가 기준대로 적정히 평가하였는지를 상위점검하였으나, 2018년도 평가부터는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수치 오류나 사실관계 불일치 등 기본 오류 사항만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점검 대상을 축소하여 2025년 1월 현재까지 각 부처가 평가 기준대로 평가했는지는 점검하지 않고 있다.⁸³⁾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 중 ‘정량지표’로서 상위점검이 비교적 용이하고⁸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예산집행률’⁸⁵⁾ 지표 ([표 35]의 평가항목 2번)가 평가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와 사업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지적사항’ 지표([표 35]의 평가항목 5번)가 누락되

83) 2021년도 평가부터는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통·미흡 사업 위주로 각 부처의 상대평가 준수 여부,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을 상위점검 항목에 포함하는 등 점검대상을 일부 확대하였으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는 미점검

84) 예산집행 실적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을 통해 집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또한 보조금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

85) 최근 2년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받은 51개 기관 3,383개 사업 가운데 예산집행률 점수에서 8점 미만을 받은 105개 사업 중 89개(85%)가 최종 미흡 등급을 받은 반면, 17점 이상을 받은 2,670개 사업 중 2,431개(91%) 사업이 보통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는 등 예산집행률 점수와 종합평가 결과 간 상관관계가 높음

지 않았는지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정성적 요인을 임의 적용하는 등으로 예산집행률 평가점수를 과다 산정

기재부 통합평가지침 등에 따르면 예산집행점수는 평가 배점에 집행률과 실집행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집행률과 실집행률은 다음 산식과 같이 사업비 집행 실적과 사업비 현액 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⁸⁶⁾

예산집행점수 산정방법(통합평가지침)
■ 일반재정 사업: 배점×70%×집행률 ^①
■ 출연금, 자치단체, 민간 보조사업: 배점×70%×집행률×실집행률 ^②
① 집행률(%)= $\frac{\text{사업비 현액 집행 실적}}{\text{사업비 현액}*} \times 100$
* 사업비 현액=예산액+이월액+이·전용 증감액
② 실집행률(%)= $\frac{\sum \text{보조사업자 사업비 집행 실적}}{\sum \text{보조사업자 사업비}} \times 100$
- (실)집행 실적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집계 금액

그런데 기재부는 통합평가지침의 기준대로 소관 재정사업을 평가하기로 하고 서도 2023년(2022회계연도 평가)과 2024년(2023회계연도 평가)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률과 실집행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지 않고 평가 위원별로 사업마다 예산집행률과 실집행률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점수를 매기도록 한 후 모든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거나(2022회계연도 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는(2023회계연도 평가)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등 평가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평가대상 사업 30개 중 4개 사업의 평가등급이 적정 등급보다 높아졌고⁸⁷⁾ 그중 “사업진행 컨설팅(ODA)” 사업 등 3개 사업은 당초 기준대로 평가했을 경우 ‘미흡’ 등급

86) 「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23회계연도 평가)에 따르면 평가 소관부처에서는 부처별 상황에 맞게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항목별 세부내용 및 세부기준 등 양식을 수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87)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상대평가인 관계로 5개 사업은 평가등급이 낮아짐

으로 지출구조조정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기준과 달리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한 사례

- (기재부) 사업진행 컨설팅(ODA) 사업(2023회계연도)은 집행률이 63%이므로 평가기준대로 평가했으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점수는 13.2점을 받아 총 94.2점으로 미흡 등급을 받았어야 함
 - 그런데 평가위원별로 평가하면서 1명의 평가위원은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13.2점을 부여한 반면 나머지 4명의 위원은 20.2점을 부여함으로써, 기재부는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인 20.2점을 부여하여 최종 우수 등급 판정을 함
 - 당초 기준대로 13.2점을 부여했을 경우 우수에서 미흡으로 평가등급이 변경되어 지출구조조정 검토 대상임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3년(2022 회계연도 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당시 통합평가지침대로 예산집행점을 산출하기로 하면서 다른 사업들은 평가 기준에 따라 예산집행률과 실집행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으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 사업의 효과성 등 다른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률(실집행률)을 그대로 반영하였을 때의 점수인 3.68점 대신 임의로 최저점수 15점을 더한 18.7점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 기준대로라면 ‘미흡’ 등급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했어야 할 사업이 ‘보통’ 등급을 받게 되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의 39개 사업은 집행률 계산 시 분모에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아 집행률 지표 점수가 최소 0.2점에서 최대 14.8점까지 과다 산정되었고,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의 70개 사업은 담당자의 실수로 집행률 지표 점수 계산이 잘못되어 최소 0.3점에서 최대 15.5점까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이월액을 포함시키지 않아 집행률이 과다 산정된 사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연구(2023년) 사업은 이월액 936백만 원을 예산집행률 산정 시 분모에 포함하여야 했는데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이를 누락하였고, 이월액을 포함하여 점수를 재산정하였을 경우 예산집행점수는 19.4점으로 기존의 24점보다 4.6점 낮아져 ‘보통’ 등급에서 ‘미흡’ 등급으로 변동됨

이처럼 감사원이 최근 2년간(2022~2023회계연도) 각 부처의 예산집행 점수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점검한 결과, [표 36] 및 [별표 10] “2022~2023회계연도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집행률 산정이 미흡한 사업 명세”와 같이 16개 부처의 144개 사업(평가대상연도 총예산 107,180억 원 규모)에서 평가 기준과 달리 평가위원의 정성적인 요인을 평가에 임의로 반영하거나 담당자의 실수로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는 등으로 평가점수를 적정 점수보다 높게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가 상향되었다. 그리고 이 중 평가대상연도 총예산 규모가 15,890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은 평가기준대로 평가했을 경우 평가등급이 변동되었는데, 특히 22개 사업은 ‘미흡’ 등급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6] 최근 2년(2022~2023회계연도)간 예산집행 점수 부당 산정 현황

(단위: 개, 억 원)

계		정성적 요인 임의 적용		이월금액 불포함		집행률 산식 오적용		기타주)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사업 수	예산 규모
144	107,180	31	6,856	39	31,288	70	60,058	4	8,978

주: 기타는 평가 소관부서에서 임의로 최저점수를 부여하거나, 사업 종료 시점의 집행률을 예상하여 점수를 부여한 경우 등임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외부 지적사항을 누락하여 평가자료 작성

각 부처에서는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10점)를 평가지표로서 환류 및 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 감사원 감사결과 등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을 기재하여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평가 대상 부처에서는 소관 재정사업에 대해 외부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23년도 자율평가 자료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별표 11] “2023년도 자율평가 감사원 지적사항 미반영 현황”과 같이 2022회계연도에 회계 관련으로 감사지적을 받은 세부 사업 58개 중 2023년도 자율평가 대상 사업이었던 9개 사업 모두 지적사항이 누락되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결산검사 지적사항 미반영 사례

- (기재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에서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2022. 5. 31. 주의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자율평가 담당자가 모든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작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자율평가 기초보고서에는 행사사업의 지원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사항만 작성하였음. 그 결과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자율평가에서 “환류 및 개선 노력”(10점)에서 9.8점을 받아 총 98.4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음

관계기관 의견 기재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검토 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자율평가 지침 등을 통해 부처의 노력을 독려하고, 상위점검 대상 확대에 따른 평가의 신뢰성 제고 효과와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율평가 점수 산정을 잘못하여 지출구조조정 검토 대상 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정량평가 중 비중이 큰 항목이나, 외부 지적사항 반영 항목 등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점검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하는 등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설문조사 표본 수 미달 등 청렴도평가 부실 운영

가. 업무 개요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청렴 체감 수준(청렴 체감도)과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도(청렴 노력도) 등을 평가하는 청렴도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렴 체감도는 대상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⁸⁸⁾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외부 체감도(약 70% 비중)와 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조직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내부 체감도(약 30% 비중)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익위가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민원인 등과 직원 명부 등을 제출받아 평가에 필요한 표본량과 함께 민간 조사기관⁸⁹⁾에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조사기관이 [표 37]과 같이 ‘불공정한 직무수행’ 등 3개 항목에 걸쳐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정청탁이나 특혜 제공, 공직자의 갑질행위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88) 청렴도평가 직전 1년간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험 등이 있는 민원인, 공직자
89)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주식회사 카카오 컨소시엄에서 수행(2023년 기준, 용역비: 22억여 원)

[표 37] 청렴 체감도의 평가항목 및 설문 문항

구분	외부 체감도(70%)	내부 체감도(30%)
불공정한 직무수행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 기관의 구성원이 기관 내 다른 직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인사·예산 또는 일반 행정 등 조직 내부운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 기관의 구성원이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의 내부 구성원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 기관의 상급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위법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담당자들이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 기관의 구성원이 채용·승진·전보·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권한남용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 기관의 구성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내부 구성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 기관의 구성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완수하지 않고 직무 태만, 불합리한 관행 반복 같은 소극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 기관의 구성원이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여비, 사업비, 수당 등 예산을 위법·부당하게 청구 또는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패 경험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선생님 본인 또는 동료가 업무 담당자에게 돈, 선물, 식사 등을 제공했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제공할 것을 요구받거나, 제공하기로 서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기관의 다른 내부 구성원에게 돈, 선물, 식사 등을 제공했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제공할 것을 요구받거나, 제공하기로 서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간 돈,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받거나, 약속한 경험은 모두 합해 몇 번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간 돈,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받거나, 약속한 경험은 모두 합해 몇 번입니까?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청렴 노력도는 [표 38]과 같이 권의위가 기관의 반부패·청렴업무 추진 실적을 추진체계, 추진 실적, 시책 효과성 등 3개 부문 20개 평가지표로 평가하며, 각 기관으로부터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위원이 포함된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지 점검 등을 거치게 된다.

[표 38] 청렴 노력도의 평가 항목

구분	주요 내용	
추진체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 부패 유발요인 정비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제고 ▪ 부패방지 제도 구축
추진 실적(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종합 청렴도평가 결과 공개 ▪ 청렴 컨설팅 추진 노력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시책 효과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 청렴교육 이행 ▪ 갑질(행동강령)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고위직의 의지와 노력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권익위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평가 결과를 합산⁹⁰⁾하여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정한 후, 기관 유형별(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로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1~5등급의 평가 결과(종합청렴도,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각각의 등급)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청렴도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인식되면서⁹¹⁾ 매년 낮은 평가등급을 받거나 전년 대비 평가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부패수준이 높거나 부패 개선 의지가 없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과 외부의 관심도가 높아진 반면, 청렴도평가 결과가 과연 기관의 실제 청렴수준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90) 이 외에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시 기관 득점에서 감점(최대 10점) 처리

91) 참고로 청렴도평가는 2012년 UN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혁결 부분'에서 '공공행정의 투명성·신뢰성·대응성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모델 개발'의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

청렴도평가 관련 설문조사(기관) 결과

- (설문 개요) 청렴도평가를 받는 393개 기관(중앙부처 46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260개, 공직유관단체 87개)의 반부패 시책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관장의 관심도와 평가 항목의 적정성, 평가 수용도 등을 조사
-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286개 기관)의 80.4%는 평가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가 높다(7점 척도 중 5점 이상)고 응답하였으나, 60.8%는 평가가 청렴도 측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변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청렴도평가의 핵심 항목인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를 중심으로 현행 청렴도평가가 당초 평가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를 적정하게 산정해 내고 있는지,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나. 청렴 체감도: 측정업무의 대표성 미흡 및 목표 표본 수 미달 등 설문조사 부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권익위는 청렴 체감도 평가를 하면서 매년 기관별로 측정 대상업무(이하 “측정업무”라 한다)와 직급·소속 등에 따른 측정대상자를 정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업무별(외부 체감도), 측정대상자 그룹별(내부 체감도) 점수를 산출한 뒤 이를 평균하여 기관 점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각 기관이 부패 취약분야를 알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점수와 함께 측정업무별 점수를 제공하는 등 청렴 체감도 조사 대상(측정업무, 측정대상자 그룹)은 기관의 청렴도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패 취약분야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

청렴 체감도 평가 방법

- (외부 체감도) ① 측정업무 선정 → ② 측정업무별로 조사할 표본량 할당(업무별 최소 50개 원칙) → ③ 측정업무별 명부(민원인 등) 확보(각 기관이 권익위에 제출) → ④ 설문조사 실시 → ⑤ 점수 산정(업무별 점수 평균으로 기관 점수 도출)
- (내부 체감도) ① 측정대상자(내부직원) 명부 확보(각 기관→권익위) → ② 충회(소속, 직급별) 및 충별 인원에 비례하여 조사할 표본량 할당 → ③ 설문조사 실시 → ④ 점수 산정(조사된 표본의 측정값을 합산·평균하여 기관 점수 도출)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가 매년 수립하는 「청렴도평가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측정업무는 기관의 중점 추진업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재량이 큰 업무, 부패사건 지속 발생 업무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기관 대표성(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 중 외부 이해관계자 등 상대방이 있는 대민·대기관 업무를 의미, 이하 동일)이 있는 업무⁹²⁾ 또는 부패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계조사 이론에 따르면 표본조사에 있어서는 측정 단위에서 조사된 표본량이 작아질수록 측정값의 정확성과 관련된 표본 추출오차(sampling error)가 커지게 되며, 내부 체감도 조사와 같이 모집단(전체 직원)을 일정한 '총'으로 구분한 후 전체 직원 비율에 맞춰 충별 표본량을 할당하는 '총화표본설계' 방식의 경우 조사결과를 산출할 때 충화 기준을 반영하여 보정하는 것이 단순 집계할 때보다 모집단의 특성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권익위는 측정업무를 선정할 때 청렴 체감도 평가가 기관 전체의 청렴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패 개연성이라는 기준 외에 기관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여 기관의 주요 업무가 측정업무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권익위는 설문조사(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청렴 체감도 조사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측정업무별, 측정대상자 그룹별로 사전에 할당한 목표 표본량(비율)이 충족되었는지 점검하고, 목표 표본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등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① 측정업무 선정 시 기관의 주요 업무가 제외되는 등 대표성 미흡

92) 기관이 수행하는 대민·대기관 업무 중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은 업무

이번 감사기간 중 기관별 측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수를 통해 측정업무가 어느 정도 해당 기관을 대표하고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권익위가 기관별로 1~8개⁹³⁾의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를 선정하면서 ‘부패 개연성’ 기준⁹⁴⁾만을 충시하고, 각 업무가 기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등 기관 대표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표 39] 및 [별표 12] “기관별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 및 담당 인원 현황”과 같이 35개⁹⁵⁾ 중앙부처 중 금융위원회 등 13개(37.1%)는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체의 10%가 되지 않았고, 기재부는 세제·경제정책과 같은 기관의 주요 업무는 측정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복권·계약관리는 포함되는 등 인허가, 보조금 집행 등과 같이 공통 업무가 많은 지자체⁹⁶⁾와 다르게 기관별 업무성격이 상이한 중앙부처⁹⁷⁾는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가 기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표 39] 중앙부처의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 담당 인원 비중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

구분	계	해당 기관 전체 인원의 50% 미만	해당 기관 전체 인원의 30% 미만	해당 기관 전체 인원의 10% 미만
기관 수	35(100)	27(77.1)	25(71.4)	13(37.1)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93) 중앙부처나 공직유관단체 등 유형의 경우 1~8개의 업무(기관별 상이)가 측정업무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기관당 평균 4.6개, 공직유관단체는 평균 3.0개임(2023년 기준)

94) 측정업무 선정 시 부패 개연성이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렴도 평가 안내서」에 따르면 부패 개연성을 임의로 계량화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어떤 업무가 부패 개연성이 있는지는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95) 청렴도평가 대상인 46개 부처 중 측정업무의 담당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11개 부처는 제외

96) 지자체의 경우 인허가, 보조금, 공사·용역, 민원, 재정·세정 등 4~6개의 공통 업무를 측정업무로 설정

97) 「정부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주 업무는 법령·제도 설계, 정책 업무 등임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가 기관의 청렴도를 대표하기 어려운 사례

- 기재부는 2023년 기존의 측정업무(예산, 복권, 외국환, 공공혁신, 계약관리)가 대표성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기관의 주요 업무인 세제 개편, 경제정책(기업 관련) 업무 등 측정업무의 추가·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권익위는 해당 업무가 부패 개연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미반영
- 금융위원회는 기관의 주요 업무인 금융 정책, 금융 소비자 지원 등을 제외된 채 2개 업무(금융기관 인허가 및 지원감독, 계약관리)만 측정업무로 하고 있고 그 담당 인력은 기관 전체 인원(325명)의 8.3%(27명)에 불과
- 농촌진흥청은 4개 업무(농약등록·신고 등 업무, 농생명혁신기술개발사업, 농업유전자원 분양·반출 승인, 계약 관리)는 포함되어 있으나 비중이 가장 큰 업무인 농업연구 개발·보급·지도 업무 등은 미포함

② 응답자가 특정 업무·그룹에 편중되는데도 이를 그대로 집계하여 점수 산정

권익위는 「청렴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외부 체감도는 측정업무별로 50명(최소 표본량) 이상 조사하는 것을 원칙⁹⁸⁾으로 하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할 표본(목표 표본량)을 할당하였고⁹⁹⁾, 내부 체감도의 경우에도 본부·소속기관 등과 같은 소속과 직급에 따른 층별로 표본량을 할당하였다.

그런데 권익위는 조사기관이 위 목표 표본량 및 층별 할당 표본량과 무관하게 설문조사를 하는데도, 청렴도평가는 ‘기관’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이유로 외부 체감도는 기관당 30명¹⁰⁰⁾, 내부 체감도는 평가계획 수립 당시 정한 기관별 총표본량을 넘기만 하면 측정업무나 층별 응답자(표본) 수가 목표치에 미달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림 6]과 같이 측정업무나 층별로 나온 점수를 동일한 비중으로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청렴 체감도 점수를 산출하는 등 평가의 통계적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98) 조사기관이 청렴 체감도 조사 용역계약을 위하여 권익위에 제출하는 용역 제안서에도 모든 측정업무에 대해 50개의 표본을 균등 할당(일부는 100개씩)하겠다고 되어 있음

99) 권익위는 이와 같은 표본량 할당기준을 평가 대상기관 등 외부에 공표

100) 권익위는 통계학의 ‘중심극한원리’에 따라 기관별 표본 수가 30개 이상일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다는 입장이나 이는 ‘기관’ 단위로 조사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만 타당함. 현재 외부 체감도는 ‘기관’ 단위가 아닌 ‘측정업무’ 단위로 조사하여 점수를 산출(기관의 최종 점수는 측정업무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므로 ‘중심극한원리’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려면 ‘기관별 표본 수’가 아닌 ‘측정업무별 표본 수’가 30개 이상이 되어야 함

[그림 6] 청렴 체감도 점수 산정 방법

- 내부 체감도 점수는 설문 문항별 응답자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

$$A \text{ 기관의 내부 체감도 점수} = \frac{\text{설문 응답자 점수의 합}}{\text{설문 응답자 수}}$$

- 외부 체감도 점수는 측정업무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측정업무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

$$A \text{ 기관의 } ① \text{ 업무 외부 체감도 점수} = \frac{① \text{ 업무 응답자 점수의 합}}{① \text{ 업무 응답자 수}}$$

$$A \text{ 기관의 외부 체감도 점수} = \frac{① \text{ 업무 점수} + ② \text{ 업무 점수} + ③ \text{ 업무 점수}}{\text{업무 수}}$$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외부 체감도 설문조사]

구체적으로 권익위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 연도¹⁰¹⁾의 외부 체감도 조사에 활용한 설문조사 표본량을 살펴보면 [표 40] 및 [별표 13] “청렴 체감도 평가에 활용된 표본량 상세 현황”과 같이 조사기관은 응답률 저조 등을 이유로 2023년 기준 498개 기관의 전체 측정업무(1,847개) 중 428개 기관, 690개(37.4%) 측정업무에 대하여 당초 할당된 목표 표본량에 미달하여 조사하는 등 매년 30% 이상의 측정업무에 대해 당초 목표 표본량보다 적게 조사한 반면, 약 60%의 측정업무에 대해서는 목표 표본량을 초과¹⁰²⁾하여 조사하였다.

[표 40] 외부 체감도 평가의 측정업무별 조사 표본량 현황¹⁾

(단위: 개, %)

구분	총기관 수	총측정업무 수	목표 미달 측정업무 수	목표 초과 측정업무 수
2020년 ²⁾	506	1,899(100)	697(36.7)	1,114(58.7)
2021년	519	1,908(100)	597(31.3)	1,121(58.8)
2022년	501	1,840(100)	614(33.4)	1,145(62.2)
2023년	498	1,847(100)	690(37.4)	1,074(58.1)

주: 1.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정리

2. 2020년의 경우 할당된 표본량이 확인되지 않은 업무가 있어 이는 분석에서 제외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01) 권익위는 점검 대상기간 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왔을 것으로 추정

102) 조사기관은 측정업무별 응답률이 저조하자, 기관별 총 표본량을 맞추기 위해 특정 측정업무에 대해 목표 표본량을 초과하여 조사. 통계학적으로 일정 수의 표본량에 도달하면 표본오차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되나, 이를 초과하여 표본량을 늘리더라도 표본오차가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조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비효율이 발생

또한, 목표 표본량 미달 정도는 [표 41]과 같이 2023년 기준으로 목표 표본량에 미달하여 조사된 690개 측정업무 중 171개(24.8%)는 목표치의 50% 미만이었고, 45개(6.5%)는 목표치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되는 등 매년 약 25~33%의 측정업무가 목표의 절반이 되지 않는 표본만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표 41] 측정업무별 과소 조사 표본량 상세 현황

(단위: 개, %)

구분	목표 미달 측정업무 수	목표 대비 50% 미만	목표 대비 20% 미만
2020년	697 (100)	216 (31.0)	53 (7.6)
2021년	597 (100)	198 (33.2)	51 (8.5)
2022년	614 (100)	205 (33.4)	47 (7.7)
2023년	690 (100)	171 (24.8)	45 (6.5)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표 42]와 같이 3개의 측정업무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계약관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조사')를 대상으로 외부 체감도를 평가하면서 이 중 목표 표본 수(200개)가 가장 많은 '개인정보 침해신고 조사'의 경우 단 6개(목표 표본 수 대비 3%)의 표본(민원인)만 설문조사하였고, 나머지 측정업무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계약관리'도 당초 목표 표본 수(각 100개) 중 39개와 25개 표본만 조사하여, 목표 표본 수 대비 각각 61%, 75% 미달하였는데도, 위 3개 업무의 총조사 표본 수가 70개로 권익위가 정한 기관별 합계치의 최소수준인 30개를 넘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외부 체감도 점수 산정에 반영(각 1/3 비중)하였다. 이에 따라 측정업무 중 가장 낮은 점수(85.2점)를 받은 '개인정보 침해신고 조사'는 응답자 수에 비해 전체 점수에 과다하게 영향을 미쳤고, 반대로 가장 높은 점수(93.2점)를 받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적은 영향을 미쳤다.

[표 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별 표본량(2023년)

(단위: 개, %, 점)

측정업무(총 3개)	목표 표본 수	실제 조사된 표본 수(비중)	측정업무별 점수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100	39(39)	93.2
② 계약관리	100	25(25)	86.4
③ 개인정보 침해신고 조사	200	6(3)	85.2
계(①, ②, ③의 단순 평균)	400	70(18)	88.3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외부 체감도 표본량이 편향된 다른 사례

- 금융위원회(2022년)의 2개 측정업무(금융기관 인허가 및 지원·감독, 계약관리) 중 ‘계약관리’의 경우 당초 할당된 100개 표본 중 6개만 조사되었고, ‘금융기관 인허가 및 지원·감독’의 경우에도 당초 할당된 100개 표본 중 31개만 조사되었는데도 총표본 수가 30개를 넘겼다는 이유로 그대로 외부 체감도 점수를 산정
 - 더욱이 6개 표본만 조사된 ‘계약관리’는 98.2점을 기록한 반면, 31개 표본이 조사된 ‘금융기관 인허가 및 지원·감독’은 93.1점을 기록하였는데 조사된 표본량에 대한 고려 없이 각각의 측정업무 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금융위원회 외부 체감도 점수를 95.7점으로 산정
- 한국가스공사(2023년)의 4개 측정업무(가스공급 및 판매, 가스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 계약관리, 도입 및 지원개발) 중 ‘도입 및 지원개발’의 경우 할당된 75개 표본 중 10개만 조사되었고, 나머지 3개 측정업무는 당초 할당된 75개 표본을 초과하여 90개씩 조사한 후 전체를 단순 평균하여 외부 체감도 점수를 산정

이처럼 권익위는 매년 조사기관에 의해 외부 체감도 조사가 완료되면 기관 단위의 총표본량이 권익위 내부적으로 설정한 최소수준(기관별 30개¹⁰³⁾)에 도달하였는지만 확인하고, 측정업무별 표본량이 적정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점수를 산정하고 있어, 목표량에 미달한 측정업무¹⁰⁴⁾에 대해서는 표본과소 포집으로 인한 오차를 초래하여 평가의 통계적 신뢰성이 저해되었다.¹⁰⁵⁾

103) 2023년 기준 기관별 목표 표본 수는 평균 328개임

104) 목표량보다 많이 조사된 업무는 목표치가 달성되는 순간 해당 업무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기관별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추가 조사하는 것이 통계적 정확성을 유의미하게 높인다고 보기 어려움

105) 정확한 시기 파악은 어려우나, 과거 일정 시점 이후부터 위와 유사하게 체감도 조사결과 확인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추정됨

외부 체감도 설문조사 관련 전문기관 자문 의견

- (개별화회) 균등 가중치의 활용을 위해서는 업무별 표본 크기가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며 각 업무단위의 응답자 수가 다른 이유를 파악하여 조사설계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본설계에 의하면 업무별 최소 50개 이상의 표본을 원칙으로 배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는 자료 수집이 되도록 권장해야 하며 업무별 최소 표본 크기가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함. 최소 표본량은 일률적으로 30명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목표 표본 크기의 90% 이상과 같은 완료 기준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개시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문조사 방식은 '저조한 응답률'로 표본 설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낮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게 됨

[내부 체감도 설문조사]

한편, 내부 체감도는 소속·직급별로 전체 직원 비율에 맞춰 총을 할당(총화표본설계)하여 조사¹⁰⁶⁾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므로, 평가결과의 신뢰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총별로 할당된 수(비율)만큼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사기관은 본부 기관이나 고위직은 응답률이 저조하고 소속기관이나 실무자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등 총별 응답률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표 43] 및 [별표 13] “청렴 체감도 평가에 활용된 표본량 상세 현황”과 같이 매년 전체 총의 90% 이상을 당초 할당량과 다르게 미달 또는 초과¹⁰⁷⁾ 조사(2023년 92.9%, 2022년 97.0%, 2021년 97.6%, 2020년 102.4%)하였다.

[표 43] 내부 체감도 평가의 총별 조사 표본량 현황

(단위: 개, %)

구분	기관 수	할당 총수	할당량에 맞게 조사된 총수	미달 조사된 총수	초과 조사된 총수
2020년	506	3,372(100)	347(10.3)	1,923(57.0)	1,531(45.4)
2021년	519	3,591(100)	433(12.1)	1,858(51.7)	1,649(45.9)
2022년	501	3,619(100)	389(10.7)	1,865(51.5)	1,646(45.5)
2023년	498	3,711(100)	475(12.8)	1,556(41.9)	1,893(51.0)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06) 내부 체감도의 경우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외부 체감도 조사와 달리, 이메일 등을 통해 동시에 대량으로 조사

107) 당초 할당되지 않은 총까지 조사함에 따라 조사된 전체 총수가 당초 할당된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존재

할당량 대비 조사 표본 수의 미달·초과 정도를 보면, [표 44]와 같이 매년 전체 총의 16~24%는 할당량 대비 50% 미만, 8~11%는 할당량 대비 10% 미만의 조사만 이루어진 반면, 전체 총의 16~23%는 할당량의 1.5배를 초과하였고 6~11%는 2배 넘게 조사되는 등 할당된 총의 상당수가 당초 할당된 표본량에 크게 미달하거나 초과¹⁰⁸⁾하여 조사되었다.

[표 44] 총별 조사 표본량 미달·초과 상세 현황

(단위: 개, %)

구분	할당 총수	할당량 미달		할당량 초과	
		50% 미달	10% 미달	150% 초과	200% 초과
2020년	3,372(100)	807(23.9)	356(10.6)	548(16.3)	229(6.8)
2021년	3,591(100)	757(21.1)	333(9.3)	730(20.3)	374(10.4)
2022년	3,619(100)	766(21.2)	296(8.2)	798(22.1)	359(9.9)
2023년	3,711(100)	625(16.6)	327(8.7)	848(22.5)	344(9.1)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심지어 조사기관은 일부 총의 표본량이 목표에 못 미치자 당초 목표로 한 전체 표본량(2023년 기준 6.5만 개) 또는 기관별 총표본량만이라도 채우기 위해 당초 표본량이 할당되지 않은 총(2023년 기준 121개 기관, 213개 총)¹⁰⁹⁾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오히려 당초 할당량(비율)과 실제 조사된 표본량 사이의 괴리가 더욱 심화되었다.

일례로,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체감도 조사의 경우 [표 45]와 같이 당초 본부 3개 총 53개(26.6%) 표본, 소속기관 4개 총 117개(58.8%) 표본 및 우정사업본부 2개 총 29개(14.6%) 표본이 할당되어 설문이 진행되었으나, 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 등 소속기관은 할당량의 13.5%(170명 중 23명)만 조사된 반

108) 통계학적으로 일정 수의 표본량에 도달하면 표본오차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되나, 이를 초과하여 표본량을 늘리더라도 표본오차가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표본오차는 표본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데, 표본량이 4배 증가하면 표본오차는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조사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비효율이 발생

109) 기관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경우 등 해당 기관의 조사표본으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아 미할당

면, 우정사업본부는 할당량의 5.4배가 조사되어 조사된 전체 직원(180명)의 87.2%를 차지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6급 이하 직원이 할당량의 5.8배가 조사되어 조사된 전체 직원의 74.4%를 차지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부 체감도는 우정사업본부의 6급 이하 직원 위주로 조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부 체감도 평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괴리되어 있었다.

[표 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체감도 층별 표본량(2023년)

구분		할당(목표) 표본량	실제 조사 표본량	(단위: 개, %)
소속	직급			비고
본부	3~4급	9	1	당초 대비 147개 부족
	5급	20	4	
	6급 이하	24	4	
	기타	미할당	1	
본부 소계		53(26.6)	10(5.6)	
소속기관	3~4급	3	1	당초 대비 128개 초과
	5급	9	1	
	6급 이하	70	10	
	기타	35	1	
소속기관 소계		117(58.8)	13(7.2)	
우정사업본부	3~4급	미할당	5개	당초 대비 19개 부족
	5급	미할당	13개	
	6급 이하	23개	134개(74.4%)	
	기타	6개	5개	
우정사업본부 소계		29(14.6)	157(87.2)	
계		199(100)	180(100)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내부 체감도 표본량이 편향된 다른 사례

- 충청남도(2023년)의 경우 본청 소속의 주요 직급 총을 포함한 8개 층에 대하여 200개의 표본량을 할당하였으나,
 - 당초 할당 비율이 컸던 본청(123개, 61%)과 직속기관(77개, 38%)의 주요 직급 층은 실제 각각 43개(21%), 25개(12%)만 조사되고, 당초 할당량이 없었던¹¹⁰⁾ 소방본부 소속의 층이 과다 조사(136개 표본)되어 기관 전체에서 조사된 표본량(204개)의 66%를 차지

그런데도 권익위는 매년 조사기관에 의해 내부 체감도 조사가 완료되면 기관의 총표본량이 당초 할당량 총합에 도달하였는지만 확인할 뿐, 층별 표본량

110) 권익위와 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소방본부 층은 당초 할당 표본이 없었으나 권익위는 이를 기관에서 제출한 정원표 등 자료의 오류로 발생하였다며 정상적이라면 당초 할당된 표본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초 할당이 되었더라도 소방본부 층에 대하여 할당이 이루어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최대 20% 수준으로 충청남도의 사례와 같이 66%(실제 조사 비율)까지 할당되는 경우는 없었음

분포가 고르게 이루어졌는지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내부 체감도 조사 표본의 대표성이 저해되었고, 조사 결과도 당초의 층화표본설계를 고려한 보정 없이 그대로 점수를 합산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훼손되었다.

내부 체감도 설문조사 관련 전문기관 자문 의견

- (개별학회) 층화표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층별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 설계이므로 전체 결과는 층화 구성비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해야 함
 - 층화표본설계에 의한 표본 자료를 단순 결합한다는 것은 층별 구성비를 무시한 것으로 표본 크기가 큰 층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결과의 편향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표본오차가 크게 됨
- (국내대학교 산학협력단) 응답/무응답 비율이 높아 무작위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정 그룹의 의견만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비표본오차가 커짐에 따라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저해함

이상과 같이 내외부 체감도 조사과정에서의 표본량 미달 문제는 결국 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먼저 내부 체감도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과소·과다 조사된 표본의 측정값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당초 층별로 할당된 표본량 비율을 기준으로 보정¹¹¹⁾하여 재산정해 보면, 각 기관의 내부 체감도 점수가 달라져 [표 46] 및 [별표 14] “내부 체감도 층별 표본조사 결과 보정 후 기관별 등급 변동 내역(2023년)”과 같이 국조실 등 총 38개 기관의 경우 청렴 체감도 등급이 1개 등급씩 변동되며, 이 중 교육부 등 총 18개 기관의 경우 종합 청렴도 등급까지 1개 등급씩 변동¹¹²⁾되는 등 층별 표본량 과소·과다의 문제는 각 기관의 내부 체감도 점수는 물론 종합청렴도 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 개별학회의 자문의견에 따르면 층화표본설계를 활용한 표본조사에서 층별로 할당된 표본 수(비율)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초 표본을 설계한 목적과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층별로 조사된 결과에서 당초 할당된 비율을 가중치로 부여하는 등의 보정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

112) 감사원이 보정하여 도출한 결과를 권익위에서 최종 확인

[표 46] 총별 표본조사(내부 체감도) 결과 보정 후 기관별 등급 변동(2023년)^{주)}

구분	청렴 체감도 등급변동 기관 수		종합 청렴도 등급 변동 기관 수
중앙부처	국조실 등 5개(상승 1개, 하락 4개)		교육부(상승 1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광주광역시 등 3개(상승 2개, 하락 1개)	없음
	기초	의정부시 등 21개(상승 9개, 하락 12개)	순천시 등 6개(상승 1개, 하락 5개)
시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하락 1개)		충청북도 교육청(하락 1개)
공직유관단체	한국마사회 등 8개(상승 5개, 하락 3개)		한국공항공사 등 10개(상승 7개, 하락 3개)
계	38개(상승 17개, 하락 21개)		18개(상승 9개, 하락 9개)

주: 당초 미할당된 총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제외하는 등의 보정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등급이 변동된 기관은 모두 1개 등급씩 상승 또는 변동(변동 내역 상세는 [별표 14] 참고)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외부 체감도의 경우 [표 47] 및 [별표 15]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별 10개 미만의 조사 표본량 현황”과 같이 2023년 기준 498개 기관 중 360개 기관(72.2%)이 측정업무별 최소 목표 표본량인 50개(평가 실시계획 기준)에도 못 미치는 표본만으로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이 중 19개 기관(3.8%)은 측정업무별로 10개도 채 되지 않는 표본으로 외부 체감도 평가를 받았는바, 이를 기관의 평가 결과는 표본량 미달로 통계적 편향(bias) 등이 발생할 우려¹¹³⁾가 있었다.¹¹⁴⁾

[표 47] 미달된 표본량으로 외부 체감도 평가를 받은 기관 현황(2023년)

(단위: 개, %)

구분	기관 수	목표 표본량 미만	표본량 50개 미만 ^{주)}	표본량 10개 미만
중앙부처	46	41(89.1)	30(65.2)	3(6.5)
지자체	광역	17	16(94.1)	2(11.7)
	기초	226	191(84.5)	222(98.2)
시·도 교육청	17	17(100)	9(52.9)	1(5.8)
공직유관단체	192	163(84.8)	97(50.5)	15(7.8)
총계	498	428(85.9)	360(72.2)	19(3.8)

주: 평가 실시계획상의 최소 표본량 기준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13) 다만 감사기간 중 청렴도평가 점수 산출방법과 관련해 자문한 ~~한국~~학회(연구 책임자: B ~~한국~~대학교 교수)는 해당 기관의 점수를 나타내는 데는 가중평균이 더 정확할 수도 있으나, 다른 기관이나 과거 결과와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평균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정당한 점수가 몇 점인지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 등급 변동 여부 등 구체적인 영향을 적시하지 않음

114) 한편, 권익위는 청렴 체감도 결과가 업무별·층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본 조사하여 평가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기관 단위의 (최소) 표본량만 확인하여 평가’ 하였다는 사실과 ‘평가에 최종 활용한 측정업무별 상세 표본량’ 등 평가의 기초 정보를 평가 대상기관에 알리지 않고, 평가 전체 표본량과 기관별 표본량 정도만 제공(기관별 총표본량)하거나 공개(총표본량)하고 있어 평가의 투명성을 저해

다. 청렴 노력도: 부패와 무관하거나 기관별 유불리가 존재하는 평가지표 사용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되,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서는 '부패행위'(제4호)를 '고충 민원'¹¹⁵⁾(제5호)과 별도로 규정하면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¹¹⁶⁾하고 있다.

그리고 권익위의 「청렴도평가 안내서」에서도 '공공기관의 부패(또는 청렴) 수준'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청렴도평가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부패행위'로, 부패행위의 주체는 '공직자'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청렴 노력도 평가의 목적을 각 기관 스스로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독려하여 그 효과가 청렴 체감도¹¹⁷⁾에 반영되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소속 공직자)과 무관하게 '민간'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이나 주민 불편·부담 유발과 같은 '민원성 업무의 처리 및 제도개선' 등 '부패행위'

115)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하며, 권익위가 과거 청렴 노력도 지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내부 검토한 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 지표는 고충 민원(예방)과 관련한 사항이 아닌 부패와 관련한 사항에 한정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 등 권익위는 고충 민원과 부패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검토한 바 있음

116)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한 부패행위 유형들은 상호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부정행위들이라고 하면서, 공직자의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로 인한 직무수행 등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117) 「청렴도평가 실시계획」에 따르면 기관 소속직원들이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권한 남용을 일삼는지, 금품 등을 요구·수수·약속하는지 등 부패·비위행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의미함

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평가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평가결과가 공공기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 대상기관의 수용성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권익위는 청렴 노력도 평가 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 수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위한 지위 남용, 법령 위반 등의 ‘부패행위’ 방지와 관련된 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권익위는 평가 대상기관 간에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공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기관의 노력과 무관하게 업무의 성격 등 기관 고유의 특성만으로 청렴 노력도 평가 점수 획득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주어지는 평가지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설계·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권익위(청렴조사평가과)는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과정¹¹⁸⁾에서 권익위 내 개별부서들이 부서 소관 법령과 관련하여 각 기관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지표의 신설·추가·수정을 요청하면, 평가지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이 있는지와 지표가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¹¹⁹⁾하지 않은 채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전체 16개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 중 ‘공공재정 부정 수급 관리 노력’ 등 6개 지표¹²⁰⁾(28점 배점 및 6.5점 가·감점)는 ‘공공기관의 부패행

118) 권익위는 통상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를 총괄하는 부서(청렴조사평가과)가 매년 초 해당 연도의 평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지표안과 관련하여 개별부서에 의견을 요청한 후 개별부서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면, 총괄부서에서 부서 의견을 취합·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설계하고 있음

119) 총괄부서는 ‘단순 협조 차원의 지표는 가급적 지양’, ‘권익위의 주요업무 방향에 맞는 지표 발굴’ 등 평가지표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추상적인 지침만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부서가 요청한 지표(내용)를 단순 취합한 후 전체적인 지표의 순번 및 체계, 배점 등을 조정하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음. 또한, 노력도 지표와 관련하여 평가 대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있으나, 수렴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의 검토는 기본적으로 총괄부서가 아닌 개별부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120)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노력(10점),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노력(8점), 권익위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 노력(2점 감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최대 3.5점 감점),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노력(10점), 적극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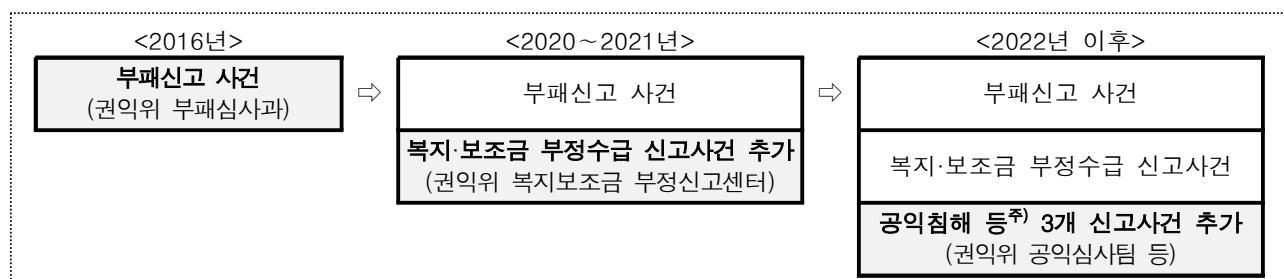
위'로 보기 어려운 '민간'의 부정행위나 민원성 업무처리와 관련된 내용인데도 청렴 노력도 평가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권익위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 노력' 등 3개 지표의 경우 일부 기관이 점수 획득에 유리한(또는 불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등 평가지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와 관련성이 낮은 평가지표 운영

권익위는 2016년 '권익위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 노력' 지표를 신설하여 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라 신고받아 관련 기관에 이첩·송부한 후 처리상황의 회신을 요청한 사건¹²¹⁾(이하 "이첩·송부사건"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기관의 미회신 정도를 평가하여 감점¹²²⁾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는 [그림 7]과 같이 지표 신설 당시에는 부패 신고사건으로 평가대상을 한정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2022년부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른 공익침해 신고사건 등을 각각 평가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그림 7] 권익위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 지표의 평가대상 사건 변동 내역



주: 나머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제도과), 「부패방지권익위법(행동강령과)」 등에 따른 부정청탁 사건과 행동강령 위반 사건임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구현 노력(최대 1점 가점) 등 6개 지표

- 121) 권익위가 이첩·송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처리상황을 회신하지 않아 점검기간(연 2회) 중 권리가 해당기관에 처리상황을 회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사건을 의미
122) 회신 요청한 이첩·송부사건 중 처리상황을 미회신한 사건의 비율에 따라 감점(최대 2점)

그러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국가장학금 등 정부 복지서비스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침해 사건도 '무등록 판매행위, 자연생태 및 경관 훼손 행위, 허위·거짓 광고 등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등 둘 다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낮은 민간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권익위는 권익위 내 소관부서들이 청렴 노력도 지표를 통해 부패신고 사건 외에 다른 신고 사건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자, 해당 신고사건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모두 '권익위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 지표의 평가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2023년 기준 전체 평가대상 사건 중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공익침해 신고 사건이 68.8%를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폐행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이첩·송부사건의 처리실적이 오히려 해당 지표의 주된 평가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권익위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부폐방지·적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청렴시민감사관¹²³⁾이 부폐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이 이행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노력' 지표를 신설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권익위는 위 지표를 통해 청렴시민감사관이 권고한 사항에 대한 기관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면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보조금 특정감사 권고'와 같은 부폐 관련 사항 외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검토 및 응대 필요'(기재부), '전통시장 아케이드 개폐시설 유지관리 개선'(경기도) 등과 같은 단순 민원 성격

123) 2009년 12월 권익위가 자체 수립한 구 "청렴옴부즈만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각 기관에 시민감사관의 위촉 및 활동을 장려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된 제도로서, 청렴시민감사관은 강제적이거나 직접적인 권한은 없으나 소속기관의 부폐행위 적발, 부폐방지 제도개선 등의 영역에서 자체감사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

의 권고 이행 실적¹²⁴⁾까지 포함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평가라는 청렴도평가 본연의 목적과 괴리되는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다.

부패와 무관한 이행 실적을 청렴 노력도 평가에 반영한 유사 사례

-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권익위는 부패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이 이행한 실적을 평가하면서, ‘공공기관 주최 공모전의 표절·도용방지 방안 마련’과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와 무관한 민간의 부정행위나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이행 실적으로 인정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신고자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공익 침해 사건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평가대상에 포함(권익위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 지표와 유사한 구조)

더욱이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항을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로 신설하기도 하였는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경우 ‘사립유치원장이 유치원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¹²⁵⁾ 등과 같이 민간(사인)의 부정행위로서, 청렴도평가의 측정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로 보기 어려운데도, 권익위는 소관부서(공공재정환수관리과)가 공공재정 지급금¹²⁶⁾에 대한 부정수급의 관리가 강조되고 있어 관련 지표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¹²⁷⁾하자, 해당 지표가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2021년부터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노력’ 지표¹²⁸⁾를 신설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124) 2023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청렴시민감사관 권고 이행 실적 인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53건 중 31건 (58.5%)이 주민 불편·부담 유발사항 등 관내 민원사항을 처리·해소하는 내용임[[별표 16]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행 실적을 인정받은 청렴시민감사관 권고내역(2023년)” 참고]

125) 권익위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임

126)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함

127) 2021년 초 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가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등으로 각 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실적을 평가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청렴 노력도 평가에 관련 지표 신설을 요청

128) 자체점검 실적,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실적, 이행실태 관리 실적 등을 평가

부패 관련성이 낮은 사항을 평가하는 유사 지표 사례

- **적극행정 구현 노력:** 권익위가 각 기관에 이행을 권고한 적극행정 제안사항 중 ‘공원 인근 불편 해소를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단순 민원사항까지도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지표로 반영

② 기관별 점수 획득 기회가 불균등한 지표 등 평가지표 불합리

권익위는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를 설계하면서 일부 평가지표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보다는 기관의 특성 등으로 인해 점수 획득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이 나는 불공정한 지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첩·송부사건 사후관리 노력’ 지표(감점지표)의 경우 사건을 이첩·송부받는 기관은 관련 규정¹²⁹⁾에 따라 수사·조사기관이거나 감독기관으로 되어 있어, 이첩·송부사건이 없는 기관에 비해 수사·조사 또는 감독기관이 감점받을 가능성이 커 지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2023년 전체 평가 대상기관 499개¹³⁰⁾ 기관 중 179개(35.9%) 기관만이 평가(감점)의 대상이 되는 이첩·송부사건이 있었고, 나머지 320개(64.1%) 기관은 평가 대상인 이첩·송부사건 자체가 없어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전체 기관 중 미회신 이첩·송부사건(86건)이 가장 많아 2.5점을 감점당한 경찰청(본청)의 경우 이첩·송부사건 자체도 772건으로 가장 많아 구조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해당 지표의 감점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다.

기타 불합리한 평가지표 운영 유사 사례

-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권익위는 노사협의로 규정 개정(중징계 시 성과급 지급 금지)이 필요한 권고과제에 대해 단순 미이행 기관과 노조반대로 이행이 어려운 기관을 구분 없이 미이행으로 처리하거나, ‘골프장 회원권 매각 또는 이용기준 마련’ 권고과제의 경우 회원권이 없는 기관은 권고 이행 대상이 없는데도 권고 이행으로 처리¹³¹⁾

1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받은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침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 등에 이첩·송부하도록 규정

130) 전체 평가 대상기관 중 의료원, 국립대학 등 특화기관을 제외한 기관임(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한편,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실시한 설문조사¹³²⁾ 결과, [표 48]과 같이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로 인해 업무부담이 크다고 답한 비율은 93.4%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반면,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가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9.3%(적절하다는 응답은 22.7%), 평가지표가 기관별로 유불리가 나뉘는 불공정한 지표라고 응답한 비율은 59.1%(공정하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나는 등 평가 대상기관(업무담당자)의 청렴 노력도 평가에 대한 수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8] 청렴 노력도 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점)

항목	긍정 응답 (A)	부정 응답 (B)	부정-긍정 차 (B-A)	100점 평균 ^{주)}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로 인한 업무 부담은 적절한 수준인지	2.8	93.4	90.6	13.3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가 기관의 부패 방지노력을 객관·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22.7	49.3	26.6	39.0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가 기관별로 유불리한 구조 없이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17.8	59.1	41.3	34.7

주: 설문조사는 7점 척도로 실시하였으며, 100점 평균은 전체 응답값 평균의 100점 환산값임

자료: [\[가\]학회](#) 설문조사 자료 재구성

라. 청렴도평가와 중복되는 평가 대상기관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관리 미흡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권익위는 2010년부터 공공기관 스스로 부패 취약분야를 진단·개선하여 청렴 수준을 제고할 목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도평가와의 중복에 따른

131) 2023년에 권고 이행으로 인정받은 총 2,883건 중 409건(14.2%)이 권고를 이행할 대상(사무)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총 95개 기관이 사실상 권고를 이행한 것이 없는데도 해당 지표 점수를 추가로 획득(기관별 점수를 보면 이행대상이 없는데도 최대 7점을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여 25.7점을 추가로 획득하는 등 95개 기관 평균 4.39점을 추가 획득)

132)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7] “청렴 노력도 지표 관련 평가 대상기관 설문조사 및 권익위 의견수렴 등 결과” 참고

예산 낭비 및 응답자의 부담 가중 등을 방지하고자 ‘자체 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이하 “청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청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권익위의 청렴도평가와 기관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는 권익위 청렴도평가 시기(7~11월)를 피하여 조사대상(모집단)의 50% 이하만 조사하고, 설문 문항도 권익위 청렴도평가와 유사·동일하지 않게 기관의 부패수준을 실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설문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¹³³⁾하고 있다.

따라서, 권익위는 평가 대상기관들이 단순히 청렴도평가를 ‘모의 연습’ 할 목적으로 청렴도평가와 유사·동일한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중복으로 실시하여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중 실시한 설문조사(복수응답 가능)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150개 기관이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이 중 59.3%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사유에 대해 ‘청렴도 평가등급 향상 목적’¹³⁴⁾이라고 응답하였고, 36.7%는 ‘그 자체로 청렴 노력도 실적 인정에 유리’하다고 응답하는 등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등이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진단·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권익위의 청렴도평가를 대비한 ‘모의 연습’ 목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한국동서발전 등 20개 공공기관¹³⁵⁾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문항 등

133) 권익위 현지점검 등에서 기관의 청렴 가이드라인 위반행위 적발 시 청렴도평가 점수에서 감점(최대 5점) 가능

134)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 호의적 응답 유도, 응답자 파악 후 권익위에 청렴도평가 설문조사 대상자 명부

제출 시 불리한 응답자 표본 제외·누락 등의 가능성 존재

135)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등 용역 수행 실적을 점검하였으며, 이 중 계약금 액이 큰 [REDACTED](6.4억 원), [REDACTED](5.5억 원), [REDACTED](3.9억 원), [REDACTED](1.9억 원) 등 4개 업체의 용역 결과(20개 기관)

을 분석한 결과, [표 49]와 같이 한국동서발전 등 3개 기관¹³⁶⁾에서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권익위 청렴도평가의 설문 문항(9개)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었고, 나머지 2개(18.2%) 문항만이 권익위 청렴도평가에는 없는 추가 문항이었으나 그마저도 앞선 문항과 연계된 문항으로서 업무처리 기준이나 담당자의 업무처리 태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묻는 문항이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2개 기관¹³⁷⁾의 경우에도 권익위 청렴도평가 문항의 문구나 표현만 일부 수정하여 사실상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49] 청렴도평가와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문항 비교(한국동서발전)

연번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청렴도평가	비고
1	▪ 업무처리 기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 업무처리 기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동일
2	▪ 업무처리 시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준·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있었는지	▪ 기준·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있었는지	동일
3	▪ 업무처리 기준·절차에 대해 개선할 사항	-	추가
4	▪ 업무담당자 또는 제3자로부터 청탁을 받아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있었는지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있었는지	동일
5	▪ 지역·학연·혈연 등에 영향을 받아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동일
6	▪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 지시, 업무 지연, 거부 등 갑질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 지시, 업무 지연, 거부 등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동일
7	▪ 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 직무 관련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동일
8	▪ 일정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 직무를 태만하게 처리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동일
9	▪ 담당자의 업무처리 자세나 태도에서 개선할 사항	-	추가
10	▪ 최근 1년간 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거나 제공을 약속받은 적이 있는지	▪ 최근 1년간 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받은 적이 있는지	동일
11	▪ 점수를 잘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 있는지	▪ 점수를 잘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 있는지	동일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를 표본 점검하였음

136) 한국동서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전력공사

137)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청렴도평가와 동일한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유사 사례

- **한국가스안전공사:** 권익위 청렴도평가 문항에서 일부 표현, 문구 정도만 수정하여 사실상 동일한 설문문항 사용
(예시) ▪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개인적인 친분이나 감정 등에 따라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에 편파적으로 업무처리
▪ (권익위 청렴도평가)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

그런데 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가 청렴도평가와 중복되어 비효율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데도, 각 기관으로부터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계획 등을 통보받으면서 설문 문항 등에 중복이 없는지, 기관의 자체 진단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나”~“라”와 같이 권익위는 평가 대상기관들에 주는 부담¹³⁸⁾을 감수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청렴(부패) 수준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직 전반의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 스스로의 반부패 노력을 독려할 목적으로 매년 청렴도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실제 평가 운영과정에서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의 표본 수 미달, 부패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 운영 등으로 청렴도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특히 권익위는 매년 청렴도평가를 위해 전체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위한 예산(2023년 기준 22억 원)과 기간(3개월)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조사대상은 양적 팽창을 거듭하여 청렴도평가 초기인 2002년 71개 기관, 3만 개 표본에서 2023년 628개 기관, 27만 개 표본으로 급증함에 따라 “나”와 같이 기관별 측정업무 또는 층별 응답자 표본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¹³⁹⁾

138) 이번 감사기간 중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3%가 평가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

또한 청렴 노력도 평가의 경우 권익위가 오랜기간 평가를 운영해오면서 “다”와 같이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추가·확대함으로써 본래의 평가 목적과 과리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향후 청렴도평가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권익위는 청렴 체감도 평가와 관련하여 청렴도 측정 단위가 기관이므로 측정업무가 아닌 기관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¹⁴⁰⁾하면서도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측정업무 단위별 적정 표본 수 산정, 미달된 표본에 대한 가중치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표본조사 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권익위는 청렴 노력도 평가와 관련하여 권익위의 역할이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아우르는 청렴한 사회풍토 확립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 취지에 공감하며, 평가지표 신설 과정에서 부패 관련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고, 단순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개별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39) 참고로 이번 감사기간 중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렴도평가 주기에 대해 2년 또는 3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 현행 수준(1년 주기)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9%였음

140) 설문조사 및 청렴 체감도 점수 산정은 측정업무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관 단위가 아닌 측정업무별로 할당된 목표 표본 수만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설령 권익위 의견처럼 기관 단위의 측정이라 한다면 평가점수를 측정업무별 점수를 동일 가중치로 합산·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것이 아니라, 기관 표본 전체의 단순 평균치로 산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합하나, 현재 권익위는 측정업무별 점수를 동일 가중치로 합산·평균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① (“나”와 관련하여) 청렴 체감도 평가대상이 되는 측정 대상업무를 선정할 때에는 부패 개연성 외에도 해당 업무의 중요성, 기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업무를 포함하도록 하고

-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에서 당초 목표로 설정한 측정 대상업무별 표본량 또는 소속·직급별 표본량(비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채 기관별 전체 표본량 충족 여부만 점검함으로써, 일부 측정 대상업무 또는 소속·직급의 조사 표본량이 목표에 미달된 채 평가결과가 산정되는 등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며, 평가결과의 신뢰성 저하, 평가 대상기관의 과도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다”와 관련하여)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민간의 부정행위 또는 단순 민원 사항 등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와 관련성이 낮은 평가지표를 제외하는 등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③ (“라”와 관련하여) 기관별로 실시하는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가 기관 차원의 부패 취약분야 진단과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취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됨으로써 중복 조사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평가 활용(Use of Evaluation Findings) 분야

실태

가. 정부업무평가 제도 진단결과와 감사중점

학회는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가 법령에 마련된 환류체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정부업무평가법에는 평가결과의 활용, 공개,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우수사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평가결과가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단순 보고서 작성에 그친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진단결과를 감안하여 이번 감사에서는 특정평가와 자체평가 결과가 정책개선이나 성과급 산정 등 인사·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점검하였다.

나. 정부업무평가의 환류체계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정책·제도 개선에 활용하거나 인사·예산 등과 연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정부업무평가법 제28조에 따르면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특정평가를 총괄 운영하면서, 특정평가 결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각 부처에 시달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이를 기초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하고, 국조실은 다음 해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환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체평가(주요정책)의 경우 국조실은 성과관리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평가 결과를 정책개선, 예산 편성에 반영하거나 조직 관리 등에 활용하고, 개인에 대해서도 성과 및 인사와 연계하고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조실은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 활용실태를 점검하며, 2022년부터는 자체평가 미흡·부진과제에 대해 각 부처로 하여금 반기별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점검하게 하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다시 점검하는 등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자체평가(재정사업)의 경우 기재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실시한 평가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10% 이상의 예산을 원칙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의 경우에도 행안부와 인사처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점검하고 조직·인사관리 및 정보화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¹⁴¹⁾

한편, 국조실은 민생과제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중 심층분석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수시현안분석’¹⁴²⁾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소관 부처로 하여금 이행점검 및 결과 환류를 하도록 하고 있다.

141) 개별평가의 경우에도 우수사례 공유,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평가결과 환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별로 환류 체계나 방식이 상이하여 이번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142)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현황 및 장애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제 발굴·선정, 분석 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

문제점

1

특정·자체평가 결과 환류의 형식적 운영

가. 업무 개요

국조실은 특정평가 총괄기관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시달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주요정책)에 대해서도 각 부처로부터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결과의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평위에 보고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업무평가는 정부가 수행한 사업이나 정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심층 진단하는 등의 환류체계를 내실 있게 갖추는 한편, 평가 결과를 조직·인사·예산 및 보수체계 등과 연계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업무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각 부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자체 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조실도 성과관리지침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 미흡·부진과제¹⁴³⁾는 자체적으로 ‘심층분석’¹⁴⁴⁾을 실시하여 성과가 미흡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143) 상대평가 7개 등급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결과는 1등급(매우 우수), 2등급(우수), 3등급(다소 우수), 4등급(보통), 5등급(다소 미흡), 6등급(미흡), 7등급(부진)으로 이루어져 있음

144) 과제의 미흡 원인에 대해 정책(환경) 외에도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 등 종합적으로 심층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및 조직·인력 개편, 인사 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에 반영

록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기관별 관심도에 따라 개선 여부에 차이가 나는 등 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관리업무¹⁴⁵⁾를 강화하여 부진과 제는 ‘집중관리’하도록 하면서, 부진과제 중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과제는 수시현안분석을 통해 적극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 등 환류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법 제28조에 따르면 각 부처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국조실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2~2024)」¹⁴⁶⁾에 따라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조직·예산·인사 연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수체계의 경우 국조실은 성과관리지침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 성과급 및 성과상여금’(이하 “개인성과급”이라 한다) 반영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권고하고, 관리과제에 대한 책임성이 높은 과장급 이상을 중심으로 반영비율을 상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실태점검 시 부처별 개인성과급 반영도를 점검하여 등급(매우 우수~매우 미흡)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실은 연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상시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수시현안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심층 진단하고, 각 부처에서 국조실이 마련한 심층분석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의 개인성과급 반영·연계 실태를 정확하고 내실 있게 점검함으로써 평가결과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45) 각 부처는 연초 전년도 부진과제에 대한 반기별 실행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한 후, 반기별로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는 자체평가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

146) 정부업무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국조실이 3년마다 정평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상시 부진과제에 대한 심층분석 등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효과 미흡

그런데 국조실은 수시현안분석 대상 과제를 선정할 때, 구체적인 기준 없이 정부업무평가실 부처담당관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제를 연중 모니터링하여 선정하고 분석하는 등 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와 수시현안분석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특정평가의 주요정책과제¹⁴⁷⁾ 또는 미흡·부진으로 평가를 받은 자체평가 과제¹⁴⁸⁾ 중 수시현안분석 과제로 선정되어 분석된 과제는 한 건도 없었다.¹⁴⁹⁾

그러면서 국조실과 각 부처는 특정평가와 자체평가가 끝나면 모든 과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4~5줄의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차년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만 환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조실은 이민 허용을 확대하자는 요구와 외국인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는바, 정책 추진 시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공론화 등 지속 필요(법무부, 미래 번영을 이끄는 선진 법치행정), 실전훈련 강화 및 군 신뢰 제고 노력 필요(국방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등을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 평가를 받은 기관이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개

147) 과제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자체평가와는 달리, 특정평가의 경우 주요정책과제별로 평가(점수 부여)한 후 과제별 등급을 매기지 않고 기관 단위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주요정책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수시현안분석 과제선정 여부를 점검하였음

148) 자체평가 과제는 부처별로 매년 20~100개 수준으로 전체를 분석하기에는 대상이 너무 많아 3년 연속 미흡·부진으로 평가를 받은 관리과제 143개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음(한 해라도 삭제 또는 통합된 과제는 제외). 참고로 매년 특정평가의 주요정책과제는 총 160개 안팎임

149) 국조실은 부처담당관이 국회지적·언론보도·연구보고서 및 각종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수시현안분석 과제를 선정·분석한다고 주장이나 수시현안분석의 결과보고서 외 과제선정 계기, 과제선정 및 종도제외 목록 등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어 평가를 참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감사원은 2021년 이후 수시현안분석 결과보고서(11건)의 분석배경을 검토한 결과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과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선방안을 제시받았다고 보기 어려웠고, 자체평가 또한 아래와 같이 제한적인 내용으로 개선·보완 필요사항과 조치계획이 제시·수립되고 있었다.

정책개선을 위해 제시된 자체평가 개선·보완 필요사항과 조치계획 사례

- (금융위원회) ‘펫보험 활성화 추진’: 펫보험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한 그간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종합적인 방안 마련 등도 검토할 필요(개선·보완 필요사항) → 조치계획은 개선·보완 필요사항과 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 강화’: 해외 경쟁법 현황 관련 자료를 국내 전문가·학회에도 적극적으로 배포하기 바람(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외 경쟁법 현황 관련 자료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외에 국내 유관 학회 등에도 실물책자를 적극 배포하겠음(조치계획)

또한, 3년 연속 미흡·부진과제 143건(41개 부처) 중 심층분석¹⁵⁰⁾이 이루어진 과제가 7개(3개 부처)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부처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국조실은 2022년 성과관리지침에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시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의 충실성을 환류의 적절성 지표에 가점 형태로 반영하겠다고 명시하였으나, 2023년 성과관리지침부터는 심층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오히려 제외하는 등 심층분석을 통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에 대한 독려가 부족하였다.

(2) 자체평가 결과와 개인 성과관리 간의 연계 미흡

한편, 국조실의 2023년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표 50]과 같이 전체 46개 부처 중 13개(28.3%) 부처의 개인성과급 반영비율이 국조실 권고 기준인 30%에 미치지 못했고, 국조실 등 5개 부처¹⁵¹⁾는 자체평가 결과를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이라 한다) 등의 성과급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자체평가가

150) 각 부처에서 미흡·부진과제에 대해 2~3가지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반기별로 조치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평가지표, 실적보고서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은 심층분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하였음

151) 국조실(고공단), 외교부(고공단), 여성가족부(고공단), 관세청(고공단), 중소벤처기업부(5급)

개인 성과관리(인사 및 보수)와 제대로 연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표 50]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성과급 반영비율 현황(2023년 기준)

반영비율	30% 이상	25% 이상~30% 미만	20% 이상~25% 미만	15% 이상~20% 미만
기관명	국토교통부 등 33개 기관	문체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6개 기관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조달청 등 4개 기관	국조실,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3개 기관

주: 각 기관이 자체점검하여 국조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 기준이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한 비율은 [별표 18]

“2023년도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의 평균반영비율 등 재산정 내역” 참고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국조실¹⁵²⁾은 부처별 개인 성과관리 반영도를 점검하면서 각 부처의 부서별 평가결과와 성과급 지급 순위 연계 여부, 실제 반영비율 등을 직접 점검하지 않고, 각 기관이 직급별 평균반영비율을 직접 입력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었다.

평가결과의 개인 성과관리 반영도 점검 양식(예시: 국조실)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급에 반영한 비율

(단위: %)

구분	개인 평가		부서 평가			합계
	직무성과	직무수행능력	자체평가	부서운영	과단위평가	
고공단	100		-	-	-	100
과장급 이상	40		18	36	6	100
과장급 미만	50		15	30	5	100

- 국조실은 4급 이상 18%, 5급 이하 15%를 평균하여 16.5%로 산정한 후 미흡 등급(15% 이상~20% 미만)으로 평정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2023년 개인별 성과관리 기초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등 22개 부처¹⁵³⁾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성과급 반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51]과 같이 국조실 권고기준(30%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이 15개에서 10개로 축소되는 등 실제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비율은 국조실이 운영

152)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체평가 주요정책 부문 총괄기관임

153) 국조실 등 24개 기관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급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자체평가 결과 반영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산정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재점검이 불가능하였음

실태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것보다 낫았다.

[표 51]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비율 재산정 결과(2023년 기준, 22개 기관)

구분	30% 이상	25% 이상~30% 미만	20% 이상~25% 미만	15% 이상~20% 미만	15% 미만
당초	국토교통부, <u>고용노동부</u> ,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u>국가보훈부</u>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u>여성가족부</u> ,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u>질병관리청</u> , <u>통계청</u>	<u>문체부</u> , 통일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u>소방청</u>	조달청	<u>특허청</u>	-
22개	15개	5개	1개	1개	0개
재산정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u>고용노동부</u> , 통일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u>질병관리청</u> , <u>통계청</u>	<u>국가보훈부</u> , <u>여성가족부</u> , 조달청, <u>소방청</u>	-	<u>문체부</u> , <u>특허청</u>
22개	10개	6개	4개	0개	2개

주: 밑줄 친 8개 기관은 성과급 반영비율을 확인하여 재산정한 결과 반영비율 구간이 변경된 기관임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반영비율이 실제 하락한 사례

- (고용노동부) 당초 개인성과급 반영비율을 56%로 국조실에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5급 이하 직원의 성과급에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제 반영비율은 28%로 하락

더욱이 국조실은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시 [표 52]와 같이 개인성과급 평균반영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검하면서, [별표 18] “2023년도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의 평균반영비율 등 재산정 내역”과 같이 평가담당자가 점검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산정방식을 잘못¹⁵⁴⁾ 적용하거나, 일부 직급에는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급에 반영하지 않는데도 반영하는 것으로 평정하는 등 46개 기관 중 21개 기관의 평균반영비율을 잘못 산정하였고, 이를 바로잡을 경우 국조실 등 12개 기관의 해당 지표 점수가 변경되었다.

154) 국조실은 기관별로 자체평가 담당자를 정해 성과급 반영비율을 점검하면서 ‘4급 이상’과 ‘5급 이하’ 등 2그룹으로 나누어 평균을 적용하도록 평가기준을 정하였으나 일부 직원은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5급 이하’ 등 3그룹의 평균을 적용하는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정하지 아니함

[표 52]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비율 평가 기준

①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급 결정 시 반영한 비율(5점)

매우 우수(5점)	우수(3.75점)	보통(2.5점)	미흡(1.25점)	매우 미흡(0점)
30% 이상	25% 이상~30% 미만	20% 이상~25% 미만	15% 이상~20% 미만	15% 미만

② 모든 직급별로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였는지 여부(3점)

반영(3점)	일부 반영(1.5점)	미반영(0점)
모든 직급별로 성과급 등 반영	일부 직급만 성과급 등 반영	모든 직급에 대해 성과급 등 미반영

실태점검 시 평균반영비율을 잘못 산정한 사례

- 문체부는 과장급 미만에 보좌서기관이라고 기재하고, 제출한 증빙에도 평가대상이 4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음

문체부 제출자료

(단위: %)

성과급 반영비율			평균반영비율	전 직급 반영 여부
고공단	과장급	과장급 미만		
30	30	20	26.6	모두 반영

- 그런데 국조실은 문체부가 5급 이하는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도 운영실태 점검 시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문체부가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반영비율을 산정

재산정 결과

(단위: %)

성과급 반영비율

당초	재산정	변경 사유	변경 내용
26.6	13.3	담당자 산정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조실은 당초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좌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5급 이하로 반영하여 반영비율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급 이하 반영비율을 “0%”로 하여 재산정(5급 이하 20%→0%)

이처럼 국조실은 각 부처의 개인성과급 반영비율을 확인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 점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자체평가와 개인 성과관리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인 부처별 개인성과급 반영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국조실은 향후 자체평가 등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자체 개선을 우선 독려하되, 미조치 시 수시현안분석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가 적극적으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조실은 앞으로 자체평가 환류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점검 시 고공단 성과급 반영 여부 항목을 신설하고, 실태점검 매뉴얼 보완, 담당관 교육 강화, 제출서류 부실 시 감점 부여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정 평위에 자체평가 결과의 성과급 반영·연계 운영실태를 포함하여 보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업무평가와 수시현안분석 간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 이후 각 부처에서 심층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자체평가 결과가 정책개선 및 인사·보수 등 성과 관리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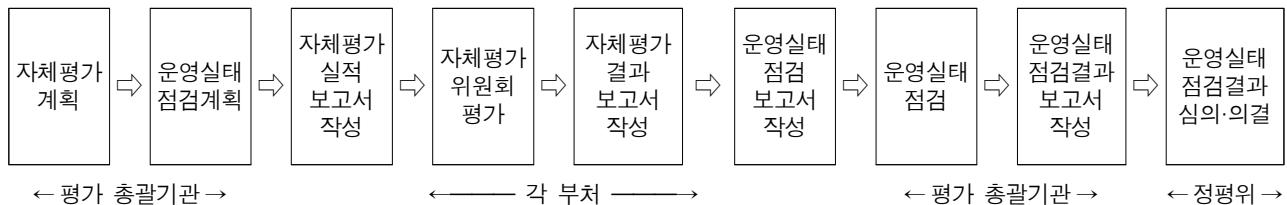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와 중복된 개별평가 신설 · 운영

가. 업무 개요

인사처와 행안부는 정부업무평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총괄기관으로서 [그림 8]과 같이 평가항목과 지표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고, 각 부처가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면 평가 운영의 적절성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평위에 보고하고 있다.

[그림 8]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수행 절차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업무평가법은 각종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개별평가 난립으로 인한 평가 부담 과중, 자체평가의 형식화, 통합적 성과관리의 부재에 따른 평가결과 활용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¹⁵⁵⁾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06년 제정되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법 제3조에 따르면 각 부처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평가 대상기관의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해서는 안 되고, 부처에 대한 평가는 통합실시하되 업무의 특성과 평가 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평위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 정보화 등 시책 관련 평가는 [표 53]과 같이 정부업무 평가법 제정 당시부터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로 통합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통합실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15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2008년 2월

[표 53]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통합 범위(정부업무평가법 제정 당시)

평가명	근거법령	통합 부문
개방형 직위 평가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인사
공무원 교육훈련 평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5조	
조직운영 분석·평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	조직
전자정부 사업평가	「전자정부법」 제46조	정보화
정보화촉진 시책 평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9조	
지식정보자원 관리 평가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13조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2008년 2월

아울러 정부업무평가 제도를 총괄하는 국조실은 2008년부터 정부업무평가법에 명시된 특정평가와 자체평가 이외에 각 부처가 개별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개별평가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폐지, 통폐합, 운영 개선 권고 등을 하고, 2017년부터는 사전협의 절차와 검토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의 통합실시 원칙 구현을 위한 제도를 지속 보완하였다.

따라서 인사처와 행안부는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를 총괄하면서 행정 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를 활용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관장¹⁵⁶⁾하는 공무원 인사·정보화 등 정책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법적 근거나 국조실과의 협의 없이 개별평가를 신설하여, 해당 평가결과만 인사·정보화 운영에 반영하는 등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 평가의 통합실시 등 정부업무평가법의 제정 취지를 저해하고 각 부처에 평가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인사처는 출범(2014. 11. 19.) 직후인 2014년 12월 「공직 인사혁신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의 인식·노

156) 「정부조직법」 제22조의3과 제34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는 인사처가, 정부조직 및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가 관장

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조직문화·리더십 등 인사혁신 수준을 지수화하여 조사하고 기관별 순위를 공개하기로 하였고, 2016년부터¹⁵⁷⁾ 자체평가와 동일하게 전년도 1. 1.부터 12. 31.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1월 ‘인사혁신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인사혁신 수준진단’은 [표 54]와 같이 ① 인사처가 ② 매년 ③ 다른 부처를 대상으로 ④ 사전(6월경)에 평가계획을 통해 제시한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우수’, ‘미흡’ 등 기관별 등급을 분류하고, ⑤ 그에 따라 우수기관 포상과 부처별 교육훈련 배정 인원에 반영하는 등 정부업무평가법¹⁵⁸⁾상 ‘평가’에 해당한다.

[표 54] 인사혁신 수준진단의 평가성 검토

구분	평가성 판단기준(국조실)	인사혁신 수준진단
주기	■ 정례적·지속적 주기로 시행	■ 매년 전년도(1. 1.~12. 31.) 실적 기준으로 실시
주체	■ 부처의 장	■ 인사처
대상	■ 다수의 타 부처 등이 수행하는 사업·정책 등	■ 46개 부처가 수행하는 인사혁신 수준
과정	■ 사전에 평가계획 등을 통해 별도의 평가지표(체계)를 제시 ■ 일정 기간 내 업무추진 등의 실적을 점검·분석 ■ 지표별 배점에 따른 점수 부여, 우수·미흡 등 기관별 등급·순위 결정	■ 매년 6월경 평가계획 수립, 약 36개 세부 평가지표 배포 ■ 평가지표별로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 지표별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총 점 80점 이상 ‘우수’, 50점 미만 ‘미흡’으로 분류
환류	■ 포상 실시, 우수기관 선정, 예산반영, 컨설팅 제공 등 실시	■ 우수기관 포상, 부처별 국외훈련 TO에 반영, 미흡기관 컨설팅 실시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인사처는 2014년 ‘인사혁신 수준진단’ 평가 신설을 계획하면서 정부업무평가법 제3조의 규정과 달리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지 않았고 국조실과의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2015년 10월 ‘인사혁신 수준진단’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업무

157) 2016년부터 인사혁신 수준진단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였음

158) 정부업무평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가는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

평가법상 통합평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인사처는 2019. 11. 5.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를 신설하여 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인사혁신 수준진단’은 각 부처의 인사운영 상황을 분석하는 활동으로 정부업무평가법상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조실과 신설 협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24년 6월 국조실이 위 ‘인사혁신 수준진단’의 평가성 검토 결과 평가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신설 협의 등을 통해 개별평가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¹⁵⁹⁾하였으나, 인사처는 ‘인사혁신 수준진단’은 기관을 서열화하거나 등급을 매기는 평가와 성격이 다르고 국회 등 외부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개별평가에 미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2024년 11월 현재까지 ‘인사혁신 수준진단’이 개별평가로서 신설 필요성이 있는지, 기존의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등과 유사·중복성이 있는지 등이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행정관리역량 부문의 자체평가와 ‘인사혁신 수준진단’ 평가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표 55] 및 [별표 19] “2023년 인사 부문 자체평가 및 인사혁신 수준진단 평가지표 비교”와 같이 ‘인사혁신 수준진단’ 평가는 인사부문 자체평가 38점¹⁶⁰⁾(선택지표 2개 포함) 중 29점(76.3%)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평가지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부업무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통합실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개방형 직위 운영실태 평가와

159) 국조실은 “각 부처 개별평가 정비방안 연구”(2016년 8월)에 따라 2016년부터 인사처가 ‘인사혁신 수준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평가가 신설·운영된 지 8년이 지나서야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신설 협의의 실효성이 없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음

160) 인사처는 인사부문 자체평가 35점 만점 중 3점을 선택지표로 하여 제시된 2개 평가지표[전문직위 지정 비율 또는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도(공무원 마음건강진단 실시율,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실시 여부, 기관장의 공무원 재해예방 관심도 등 3개의 세세부 평가지표로 구성)] 중 1개 평가지표를 각 부처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총 38점임

교육훈련 평가도 중복 평가하는 등 평가의 통합실시 원칙을 훼손하고 있었다.

[표 55] 인사 부문 자체평가와 인사혁신 수준진단의 평가지표 비교

(단위: 점, 개, %)

구분	인사 부문 자체평가		인사혁신 수준진단	
	세(세)부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지표	배점
동일한 평가지표	상시학습 이수율	3	상시학습시간 이수율	3
	유연근무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5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노력도	2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4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5
	공무원 마음건강진단 실시율	1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율	2
유사한 평가지표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5	계획인사교류 운영 실적	3
			고공단 인사교류	5
	공직문화혁신 추진노력 및 성과	6	개방형 직위 민간인 임용률	2
소계	7	29 (76.3)	8	25 (25.0)
별도 평가지표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4	생략	75
	전문직위 지정 비율	3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실시 여부	1		
	기관장의 공무원 재해예방 관심도	1		
합계	11 ¹⁾	38 ²⁾	합계	100

주: 1. 인재개발(2개 세세부 평가지표) 및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도(3개 세세부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11개
2. 선택지표(3점) 2개를 포함하여 총 38점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인사처는 자체평가 결과를 각 부처 인사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인사혁신 수준진단’ 우수기관에는 [표 56]과 같이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를 추가 배정하는 등 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표 56] 인사혁신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장기 국외훈련 TO 추가 배정 현황(2022~2024년)

(단위: 개)

구분 ^(주)	2022년	2023년	2024년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체부, 인사처, 관세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계	8	6	6

주: 전전년도 인사혁신 수준진단 결과 반영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인사처는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자체평가는 부처별 인사운영에 별 달리 활용하지 않은 채 국조실과의 협의 등도 없이 평가지표가 기준의 자체평가와 유사한 개별평가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인사운영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자체평가 내실화, 평가의 통합실시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의 부담 완화 등과 같은 정부업무평가법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

유사사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수준 평가

- **(행안부)** 2008년부터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전자정부서비스 보안대책”(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2007)에 따라 “대민서비스 정보보호수준 평가”를 신설하여 매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교육실적 등 4개 평가지표를 평가해왔으며, 2014년부터는 해당 평가를 정보화 부문 자체평가 평가지표에 반영(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의 경우도 동일)

* 「전자정부법」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평가 근거는 없음

- 행안부는 “대민서비스 정보보호수준 평가”를 비롯하여 행안부 및 타 기관의 평가결과¹⁶¹⁾를 각 부처의 정보화 부문 자체평가 시 단순환산 적용[35점 중 27점(77.1%)]하도록 하는 등 자체평가와 별도의 평가를 운영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인사처는 인사혁신 수준진단의 정부업무평가법상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체평가 제도와의 통합 실시 등에 대하여 국조실과 정평위의 결정 및 방침에 따라 추진하겠다면서도, 인사혁신 수준진단은 평가결과를 서열화하여 공개하는 정부업무평가 제도와는 구분되므로 이를 자체평가와 통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사처가 인사혁신 수준진단의 평가결과를 우수·보통·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에 통지하고, 자체평가 결과는 인사·조직에 직접 활용하지 않은 채 우수기관에 국외교육훈련인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평가결과를 서열화하여

161) [별표 20] “2023년 정보화 부문 자체평가 평가지표별 평가 주관기관 등 현황” 참고

이를 인사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행안부는 대민서비스 정보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정부업무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과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행안부가 타 부처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자체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개별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복되는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안부의 평가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업무평가법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자체평가 평가지표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행안부가 타 부처의 소관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정부업무평가법 시행령 제12조를 고려하더라도 정보화 부문 평가지표의 77%(35점 중 27점)를 행안부 및 타 기관의 평가결과로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자체평가의 정의 및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안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사혁신처장은 각 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평가와 유사한 내용의 ‘인사혁신 수준진단’을 자체평가와 통합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평가와 유사한 내용의 ‘대민서비스 정보보호수준 평가’ 등을 자체평가와 통합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목차

[별표 1]	전수조사(2024년) 결과 추가 확인된 개별평가 현황	125
[별표 2]	2021년 개별평가 제외 내역	126
[별표 3]	2024년 개별평가 전수조사 검토결과	127
[별표 4]	개별평가 폐지·통폐합 등 미이행 내역	128
[별표 5]	성과관리 분리운영 이후 성과계획서의 양식 변화	129
[별표 6]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구조 비교(2024년도 기준)	130
[별표 7]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의 목표치가 상이한 성과지표 명세	131
[별표 8]	청렴도평가의 주요 변동 연혁	134
[별표 9]	특정평가 중 정부혁신 부문 평가방법	135
[별표 10]	2022~2023회계연도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집행률 산정이 미흡한 사업 명세	136
[별표 11]	2023년도 자율평가 감사원 지적사항 미반영 현황	141
[별표 12]	기관별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 및 담당 인원 현황(2023년)	142
[별표 13]	청렴 체감도 평가에 활용된 표본량 상세 현황	146
[별표 14]	내부 체감도 층별 표본조사 결과 보정 후 기관별 등급 변동 내역(2023년)	148
[별표 15]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별 10개 미만의 조사 표본량 현황	151
[별표 16]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행 실적을 인정받은 청렴시민감사관 권고 내역(2023년)	153
[별표 17]	청렴 노력도 지표 관련 평가 대상기관 설문조사 및 권의위 의견수렴 등 결과	155
[별표 18]	2023년도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의 평균반영비율 등 재산정 내역	157
[별표 19]	2023년 인사 부문 자체평가 및 인사혁신 수준진단 평가지표 비교	159
[별표 20]	2023년 정보화 부문 자체평가 평가지표별 평가 주관기관 등 현황	160

[별표 1]

전수조사(2024년) 결과 추가 확인된 개별평가 현황

연번	평가명	주관부처	평가 시작연도	사전협의 여부
1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고용노동부	2020	사전협의 대상 아님 ^{주)}
2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고용노동부	2020	사전협의 대상 아님
3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1998	사전협의 대상 아님
4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국토교통부	2018	미실시
5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건복지부	2016	미실시
6	소방교육 훈련기관 평가	소방청	2022	미실시
7	인사혁신 수준진단	인사처	2016	미실시
8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평가	행안부	2017	미실시
9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행안부	2021	미실시
10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행안부	2002	사전협의 대상 아님
1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환경부	2019	미실시

주: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및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는 정부업무평가법 제정 이전에 신설되었으며,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및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서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2021년 개별평가 제외 내역

연번	평가명	주관기관	국조실 검토
1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위·등급 미부여
2	자격관리·운영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고용노동부	순위·등급 미부여
3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 평가	고용노동부	평가지표 사전 미제시 및 순위·등급 미부여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평가지표 사전 미제시
5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평가	국토교통부	평가지표 사전 미제시 및 순위·등급 미부여
6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조사	기재부	순위·등급 미부여
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순위·등급 미부여
8	한국 수어발전 시행계획 평가	문체부	순위·등급 미부여
9	인명구조견 운용기관 현지실태점검	소방청	장비 관련 단순 실태점검
10	건강가정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여성가족부	기관별 자체 이행점검
11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이행점검	여성가족부	순위·등급 미부여
12	성별 참여촉진 이행결과 점검	여성가족부	기준 달성 여부만 점검
13	양성평등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여성가족부	순위·등급 미부여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지표 없이 정성평가
15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추진실태 점검	행안부	재난대비 점검 및 단기조치 성격
16	소하천 실태점검	행안부	미흡사항 유무만 점검
17	여름철 사전대비 추진실태 평가	행안부	재난대비 점검 및 단기조치 성격
18	상수원 관리실태 평가	환경부	관리현황 조사 성격의 점검
19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평가	환경부	예산편성 여부 등 만 점검

주: 음영 처리한 8개 평가는 '단순 점검'에 해당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2024년 개별평가 전수조사 검토결과

연번	평가명	주관기관	국조실 검토 결과	
			개별평가 여부 ^(주)	검토 의견
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	희망기관만 평가
2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고용노동부	해당	개별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음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연계, 활용)
3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고용노동부	해당	개별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음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연계, 활용)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이행평가	고용노동부	-	비정기 평가(재난 발생시 실시)
5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 정책분석 평가	교육부	-	평가는 시행하나 순위, 등급을 매기지 않고 목표 달성을 여부만 확인
6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 평가	교육부	-	평가대상이 정부업무평가법상 기관 아님
7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국가유산청	-	합동평가에 포함, 점검 형식
8	공항운영검사	국토교통부	-	평정요소 없는 점검 형식
9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해당	개별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음
10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국토교통부	해당	개별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음
11	기상관측표준화 우수기관 선정	기상청	-	평가는 시행하나 우수기관 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심사 성격
12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기재부	-	평가는 시행하나 시행주체가 기재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통합평가에 해당
13	신고기관 실태조사 점검	병무청	-	평정요소 없는 점검 형식
14	영양플러스사업 우수사례 선정	보건복지부	-	희망(추천) 기관만 대상으로 평가
15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보건복지부	-	평가는 시행하나 순위, 등급을 매기지 않으며 우수사례 선정에 활용
1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평가	보건복지부	-	평가주체가 정부업무평가법상 기관 아님
17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건복지부	해당	개별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음
18	소방교육훈련기관평가	소방청	해당	개별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음
19	인사혁신수준 진단	인사처	해당	개별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음
20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보급이용 우수기관 포상	통계청	-	희망(추천) 기관만 대상으로 평가
21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우수기관 선정 평가	통계청	-	평가는 시행하나 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심사 성격
22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	통계청	-	평가대상이 정부업무평가법상 기관 아님
23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자 및 유공기관 포상	통계청	-	평가는 시행하나 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심사 성격
24	가구주택기초조사 평가	통계청	-	평가는 시행하나 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심사 성격
25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	통계청	-	희망(추천) 기관만 대상으로 평가
26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행안부	해당	개별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음
27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행안부	해당	개별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음
28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행안부	-	한시적 평가(2026년까지만 평가)
29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행안부	해당	개별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음
30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환경부	해당	개별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음
31	상수원 관리상태 평가	환경부	-	평정요소 없는 점검 형식
32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점검	환경부	-	평정요소 없는 점검 형식

주: 개별평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정평위 의결을 거쳐 확정됨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개별평가 폐지·통폐합 등 미이행^{주)} 내역

구분	연번	평가명	주관기관	개선 내용
2014	1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	고용노동부	점검으로 전환
	2	가축방역시책평가	농림축산식품부	폐지
	3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	농촌진흥청	합동평가로 통합
	4	드림스타트센터 평가	보건복지부	점검으로 전환
	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합동평가로 통합
	6	식품안전 우수기관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평가 통합 및 일몰(2015년)
	7	을지연습 평가	행안부	합동평가로 통합
	8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행안부	점검으로 전환
	9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행안부	합동평가로 통합
	10	지자체 정부3.0 평가	행안부	일몰(2015년)
2017	1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으로 전환
	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점검	국토교통부	합동평가로 통합
	3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	국토교통부	점검으로 전환
	4	가축방역시책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평가로 통합
	5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법무부	점검으로 전환
	6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점검	보건복지부	일몰(2018년)
	7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평가	보건복지부	합동평가로 통합
	8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건복지부	일몰(2020년)
	9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평가	행안부	개별평가 통합
	10	지자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행안부	폐지
	11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행안부	개별평가 통합
	12	지자체 재정분석	행안부	개별평가 통합
	13	슬레이트 처리사업 평가	환경부	점검으로 전환
	14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환경부	합동평가로 통합
2022	1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평가	보건복지부	점검으로 전환
	2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행안부	개별평가 통합
	3	지자체 재정분석	행안부	개별평가 통합

주: 폐지, 통폐합 등을 결정하였으나 다음번 전수조사에서 여전히 개별평가를 운영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성과관리 분리운영 이후 성과계획서의 양식 변화

2010년도 성과계획서 양식	2025년도 성과계획서 양식(2024년 4월)
I.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그간의 정책성과2.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제1장 성과계획목표체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임무와 비전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3. 목표 및 과제현황4. 조직 및 성과관리 추진체계 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조직 <input type="checkbox"/> 인원<input type="checkbox"/> 성과목표관리 추진체계<input type="checkbox"/>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5. 2025년도 재정 및 성과관리대상 사업 정보 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재정현황<input type="checkbox"/> 성과관리대상 사업 재정현황<input type="checkbox"/>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환류 계획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1. 000부(청) 일반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1) 조직 (2) 인원 (3) 재정현황2. 성과계획의 개요<ul style="list-style-type: none">(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3)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포함)3. 재정부문 성과계획의 개요<ul style="list-style-type: none">(1) 목표체계 (2)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제외)(3) 000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 와의 연계	제2장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2. 2025년도 재정운용 전략3. 2025년도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계획<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재원배분 규모<input type="checkbox"/> 재원배분 기준<input type="checkbox"/> 재원배분 변화<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우선순위 조정 내역
III. 세부 추진계획 <p>전략목표 성과목표 (1) 주요내용 (2) 참고사항 (3)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관리과제명<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input type="checkbox"/> 관련 예산사업 내역<input type="checkbox"/> 관련 예산사업 개요</p>	제3장 프로그램목표 추진계획 <p>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1 1. 프로그램 주요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목표<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input type="checkbox"/> 주요 추진전략<input type="checkbox"/> 전략목표와의 부합성(프로그램 논리모형 활용)</p> <p>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SWOT, PEST 등 분석모형 활용)<input type="checkbox"/>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input type="checkbox"/> 참고자료(필요시)</p> <p>3.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input type="checkbox"/> 측정방법 및 목표치</p> <p>4. 관련 예산사업 현황 ① 단위사업<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예산사업 내역</p>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6]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구조 비교(2024년도 기준)

구분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양식(2024년 3월)	2025년도 성과계획서 양식(2024년 4월)
그간의 성과 및 향후 방향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4년도 정책추진 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2024년도 정책추진 방향	제2장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1.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 2. 2025년도 재정운용 전략 3. 2025년도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계획
일반현황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000부(청) 일반현황 (1) 조직 (2) 인원 (3) 재정현황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3) 목표 및 과제 현황	제1장 성과계획목표체계 1. 임무와 비전 2.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3. 목표 및 과제현황 4. 조직 및 성과관리 추진체계 현황 <input type="checkbox"/> 조직 <input type="checkbox"/> 인원 <input type="checkbox"/> 성과목표관리 추진체계 <input type="checkbox"/>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5. 2025년도 재정 및 성과관리대상 사업 정보 현황 <input type="checkbox"/> 재정현황 <input type="checkbox"/> 성과관리대상 사업 재정현황 <input type="checkbox"/>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 계획
목표, 성과지표, 추진계획 등	III.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3) 기타 성과목표 I (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4) 기타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관리과제명 <input type="checkbox"/> 추진배경(목적) <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관련 재정사업 내역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제3장 프로그램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 I 프로그램목표 I-1 1. 프로그램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목표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input type="checkbox"/> 주요 추진전략 <input type="checkbox"/>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input type="checkbox"/>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input type="checkbox"/>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input type="checkbox"/> 참고자료(필요시) 3.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input type="checkbox"/> 측정방법 및 목표치 4. 관련 예산사업 현황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7]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의 목표치가 상이한 성과지표 명세

연번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2023년 3월 작성)			성과계획서(2022년 9월 작성)			목표치가 다른 사유
		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프로그램	성과지표	목표치	
1	고용 노동부	1.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한다	청년고용률	45.2%	고용창출	청년고용률	43.8%	시행계획에 더 도전적인 목표 설정
2	공정거래 위원회	1. 납품단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는 근절한다	동반성장 업무추진 만족도	73.1점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동반성장 문화 확산도	72.8점	시행계획에 더 도전적인 목표 설정
3		① 전자상거래·표시광고·약관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	소비자거래 정책분야 제도개선	9건	소비자 후생 증진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건수	7건	작성 시점 상이
4	교육부	③ 4세대 지능형 교육행정시스템(NEIS) 운영 안정화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교직원) 나이스 서비스 만족도	80%	학교교육 지원	④ 나이스 이용자 만족도	88%	작성 시점 상이
5		④ 청년·일자리 정책의 조율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생 인당 학비 부담 경감금액	223만 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①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	227만 원	작성 시점 상이
6		④ 청년·일자리 정책의 조율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평균등록금(4년 제 사립) 대비 저소득층(3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평균지원액 비율	63.5%		② 평균 등록금 (4년제 사립) 대비 저소득층 (3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평균 지원액 비율	64.7%	작성 시점 상이
7		①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해 평생학습 지원기반마련	K-MOOC 수강신청 건수	57만 건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③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 OOC) 수강신청 건수	55만 건	작성 시점 상이
8	권익위	I-1.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	권익행정 만족도	75.2점	국민권익증진	② 권익행정 만족도	74.5점	시행계획에 더 도전적인 목표 설정
9	국토교통부	② 철도산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 진출·내수활성화 기반 마련	고속철도 이용자	93백만 명	고속철도건설	① 고속열차 이용객 수(KTX, SRT)	89,683천 명	시행계획에 더 도전적인 목표 설정
10		2. 첨단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기간교통망을 조성한다	신공항 건설 공정 달성을 + 일반공항 건설 공정 달성을	70%	일반공항 건설 및 관리	① 신공항 건설 공정 달성을	65%	기재부 검토의 견 반영 (목표치 상향 조정)
11		1. (Compact) 지역 주도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도시재생사업주민만족도	90%		② 일반공항 건설 공정 달성을	65%	기재부 검토의 견 반영 (목표치 상향 조정)
12						② 도시재생 사업 주민 만족도(지수)	94%	성과계획서에 더 도전적인 목표 설정

연번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2023년 3월 작성)			성과계획서(2022년 9월 작성)			목표치가 다른 사유
		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프로그램	성과지표	목표치	
13	금융위원회	③ 혁신성장펀드 조성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총결성액	2조 원	산업금융지원원	② 혁신성장 펀드 조성실적	3조 원	기타
14	기재부	2. 재정운용 관리강화	재정운용의 효율성 만족도	79.2점	재정관리	① 재정운용 효율성 만족도	77.9점	작성 시점 상이
15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참여조직의 통합조직원예 농산물 출하 비중	53.5%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효율화	② 참여조직의 통합 조직 원예농산물 출하비중	55.1%	작성 시점 상이
16		① 농업·농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2023년 ODA 종료사업대상 지역 소득향상을	20%	국제협력협상	① ODA 종료사업 대상지역 소득향상을	18%	작성 시점 상이
17		5.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를 고도화하여 재해대응력을 강화한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	0.34%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관리	①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	0.32%	작성 시점 상이
18		④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우량농지 조성·활용	가뭄발생피해방지율	100%	농업생산기반정비	③ 가뭄발생 피해 방지율	96%	기타
19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 문화 공간 구축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람객 수	63.1만 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람객 수	53.5만 명	작성 시점 상이
20	문화부	①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국립극장 기획제작 공연객석 점유율	80.8%	국립중앙극장 운영	② 국립극장 기획·제작 공연객석 점유율	81.8%	작성 시점 상이
21		① 생활체육 참여 제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89.7%	생활체육 육성	②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90%	기타
22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KTV 시청률	0.05%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① KTV 시청률	0.063%	자체평가위원 검토의견 반영
23			뉴미디어 서비스 고객이용자 수	1,461,229명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② 뉴미디어 서비스 고객 이용자 수	1,498,016명	기타
24			영상자료 대외제공 건수	21,794건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③ 영상자료 국민제공 건수	24,005건	기타
25		② 장애인 전문체육 체계적 육성·지원	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22.3%	장애인체육 육성	③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22.56%	기재부 검토의견 반영 (목표치 설정 근거 변경)
2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체계 강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안전망 강화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91.9%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91.8%	작성 시점 상이
27		④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서비스만족도	78점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서비스 만족도	74점	작성 시점 상이
28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효과성	45.5%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저출산 극복 위한 국민인식 홍보 캠페인 효과성	45.9%	자체평가위원 검토의견 반영

연번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2023년 3월 작성)			성과계획서(2022년 9월 작성)			목표치가 다른 사유
		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프로그램	성과지표	목표치	
29	산업통상 자원부	① 양질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	28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활성화	외국인 직접 투자실적	300억 달러	작성 시점 상이
30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에너지 R&D 확대	에너지 분야 석·박사급 인력 배출 인원	734명	에너지 기술기반확충	에너지 분야 인력 배출 인원	752명	기타
31	여성 가족부	언제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1.4점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1.8점	기타
32	중소벤처 기업부	③ 혁신지향 공공구매 확대 및 마케팅 강화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판매 증가율	27.2%	중소기업육성지원	③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판매 증가율	27.7%	기타
33	해양 수산부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해양수질 개선율	47%	해양환경보전	해양수질 개선 수준(WQI)	50.09%	작성 시점 상이
34	행안부	② 지역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 혁신 추진	지자체 주도 지역 밀착형 종합규제 종점 발굴 및 개선	540건	지방재정경제	③ 규제혁신 중점과제 추진 건수	550건	기타
35		② 지역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특수상황지역 주민 만족도	83.5점	지역발전	①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 주민 만족도	83.7점	기재부 검토의견 반영 (목표치 상향 조정)
36	환경부	V. 녹색 산업·기술 육성과 기반 구축으로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환경산업매출액	15.3천억 원	친환경 경제사회 활성화	③ 환경산업 매출액	1,040,411억 원	기재부 검토의견 반영 (목표치 설정 방식 변경)
37		2. 기후위기에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하천수질목표달성을률	61.7%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① 하천수질 목표 달성을률	75.4%	기타
38		② 물산업 해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	물산업매출액	48조 원	맑은 물 공급·이용	③ 물산업 매출액	46.7조 원	작성 시점 상이
39		②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차별 없는 물 복지 구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 실적	38.8%	맑은 물 공급·이용(광역)	②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노후 관개량 실적	37.3%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40		① [핵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스마트한 물 재난 대응체계 구축	댐 안전성 강화(1단계) 사업 공정률	74.5%	댐 운영 및 관리	② 댐 안전성 강화(1단계) 사업 공정률	81.5%	작성 시점 상이
41		① [핵심] 과학적 관리를 통한 물환경 안전체계 구축	공공폐수 처리시설 수질 오염물질 삭감량	3,427 (톤/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③ 공공폐수 처리시설 수질 오염물질(T-P) 삭감량	3,416 (톤/년)	기타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8]

청렴도평가의 주요 변동 연혁

주요 시기	평가 대상기관 수	등급제 등 발표 방식 ¹⁾
2002~2003년 (청렴도 측정 최초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외부 청렴도 측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청렴도: 71~77개 기관 ▪ (시책평가) 74개 기관~87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기관 유형별로 3개 구간(상위, 중위, 하위)으로 등급만 발표
2007년 (내부 청렴도 측정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외부·내부 청렴도 측정 각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청렴도: 333개 기관 - 내부 청렴도: 138개 기관 ▪ (시책평가) 96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2007년) 기관별 측정점수 및 전년 대비 개선도만 발표
2008년 (종합 청렴도 측정결과 별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내부 및 외부 청렴도를 종합한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167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청렴도: 377개 기관 - 내부 청렴도: 171개 기관 ▪ (시책평가) 85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전년 대비 개선도를 산출하지 못하여 기관 유형별로 4개 구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 별도 발표 ※ 단, 지나친 서열화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유사 기능별/성격별로 별도 구분
2010년 (대상기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706개 기관 ▪ (시책평가) 193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2011년) 기관별 측정점수 및 전년 대비 개선도와 함께 기관 유형별로 5개 구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등급 동시 발표 ※ 단, 중앙부처 등은 측정업무가 이질적이어서 순위 등 비교 불가능함을 명시
2012~2021년 (국공립대학 등 신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기준에 더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별도 모형 측정 기관 포함(총 660~750여 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평가) 250~270여 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2017년) 기관별 측정점수 및 전년 대비 개선도와 함께 기관 유형별로 5개 구간(1~5등급)으로 등급 동시 발표 ※ 순위 비교 불가 등 별도의 안내 문구 없음
2022년 이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 체감도(구 청렴도 측정), 청렴 노력도 평가(구 시책평가), 부패실태 평가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18개 기관(2024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이후) 기관 유형별로 5개 등급만 발표 ※ 순위 비교 불가 등 별도의 안내 문구 없음

- 주:
1. ‘청렴도 측정’ 또는 ‘청렴 체감도 평가’ 분야 위주로 권익위의 평가결과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정리
 2. 당시 종합 청렴도 측정결과를 새롭게 발표함에 따라 전년 대비 개선도를 명시할 것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청렴도 제고 노력을 환기시키고자 기관 유형별 등급을 별도 발표
 3. 기관별 점수, 등급을 모두 발표하는 방식이 지나친 순위경쟁을 유발한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기관별 점수는 개별 제공하고 등급만 외부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변경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9]

특정평가 중 정부혁신 부문 평가방법

(단위: 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배점	평가 주체
혁신역량(20)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정성	10	정부혁신평가단
	• 기관의 정부혁신 활동 및 성과확산 노력	정성/정량	10	
혁신 성과(70)	• 국민소통 정책화 성과	정성	5	정부혁신평가단
	• 민관협력 활성화	정성/정량	10	
	• 공공데이터 개방	정량	5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단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20)	•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정성/정량	10	정부혁신평가단
	• 유니버설디자인 등 편의성 개선	정성	10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30)	•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정량	10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단
	•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정성	20	정부혁신평가단(18) 기재부·조달청 합동 평가단(2)
국민체감도(10)	• 국민 체감도 평가	정성	10	전문리서치 기관
가감점(± 15)	• 산하 공공기관 혁신 평가	정성	± 15	공공기관 혁신 평가 TF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0]

2022~2023회계연도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집행률 산정이 미흡한 사업 명세

(단위: 억 원)

연번	회계 연도	소관부처	세부사업	기준 평가등급	변동 평가등급	평가 대상연도 예산액	비고
총합				144개	32개	107,180	
① 전년도 이월금액을 불포함하여 집행률 과다 산정							
1	202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연구	보통	미흡	40.0	등급 변동
2	2022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출연	보통	보통	2,014.4	
3	2022	교육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미흡	보통	5,194.0	등급 변동
4	2022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미흡	미흡	119.3	
5	2022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미흡	미흡	652.6	
6	2023	교육부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보통	보통	44.3	
7	2023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통	보통	113.3	
8	2023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미흡	미흡	788.3	
9	2023	국가유산청	무형문화재보호	미흡	보통	255.0	등급 변동
10	2023	국가유산청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미흡	보통	40.0	등급 변동
11	2023	국가유산청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보통	미흡	49.0	등급 변동
12	2023	국가유산청	매장문화재보호 및 관리지원	보통	미흡	92.0	등급 변동
13	2022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보통	보통	1,093.0	
14	2022	국토교통부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	보통	보통	60.0	
15	2022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지원(제주)	미흡	미흡	146.0	
16	2023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보통	보통	2,246.0	
17	2023	국토교통부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보통	보통	129.0	
18	2023	국토교통부	건축안전	보통	미흡	83.0	등급 변동
19	2023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미흡	미흡	4,673.0	
20	2023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보통	보통	2,470.0	
21	2022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혁신지원	미흡	미흡	4,302.0	
22	2022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미흡	미흡	204.0	
23	2022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조성	미흡	미흡	42.0	
24	2022	중소벤처기업부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미흡	미흡	155.0	
25	2023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	보통	보통	327.0	
26	2023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혁신지원	보통	보통	3,595.0	
27	2023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미흡	미흡	40.0	
28	2023	중소벤처기업부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미흡	미흡	300.0	
29	2022	환경부	습지보전관리	보통	보통	296.0	
30	2022	환경부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미흡	미흡	172.0	

연번	회계연도	소관부처	세부사업	기존 평가등급	변동 평가등급	평가 대상연도 예산액	비고
31	2022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관리	보통	보통	94.0	
32	2022	환경부	자원순환촉진지원	보통	보통	235.0	
33	2023	환경부	자원순환촉진지원	보통	보통	211.0	
34	2023	해양수산부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우수	우수	330.0	
35	2023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우수	우수	122.8	
36	2023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보통	보통	251.8	
37	2023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육성	보통	보통	83.4	
38	2023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미흡	미흡	111.0	
39	2023	해양수산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미흡	미흡	114.1	

② 자율평가 위원별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40	2022	관세청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우수	우수	196.0	
41	2022	관세청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보통	보통	102.0	
42	2022	관세청	특송화물 통관지원	보통	보통	71.0	
43	2022	관세청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보통	보통	102.0	
44	2022	관세청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보통	보통	53.0	
45	2022	관세청	밀수단속	미흡	미흡	96.0	
46	2023	관세청	관세행정정보관리(정보화)	보통	보통	612.0	
47	2023	관세청	밀수단속	보통	보통	69.0	
48	2023	관세청	특송화물 통관지원	보통	보통	63.0	
49	2023	관세청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보통	보통	104.0	
50	2023	관세청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보통	보통	41.0	
51	2023	관세청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미흡	미흡	99.0	
52	2023	교육부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보통	미흡	31.0	등급 변동
53	2022	기재부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보통	미흡	28.1	등급 변동
54	2022	기재부	사업심사평가연구(ODA)	보통	보통	32.7	
55	2022	기재부	사업진행컨설팅(ODA)	미흡	미흡	221.6	
56	2023	기재부	디지털예산화계시스템 운영(정보화)	우수	우수	172.0	
57	2023	기재부	사업진행컨설팅(ODA)	우수	미흡	251.3	등급 변동
58	2023	기재부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보통	보통	29.3	
59	2023	기재부	경제혁신파트너십구축(ODA)	보통	보통	99.5	
60	2023	기재부	사업심사평가연구(ODA)	보통	미흡	43.4	등급 변동
61	2023	기재부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미흡	보통	11.8	등급 변동
62	202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기지원	보통	보통	1,514.0	
63	2023	중소벤처기업부	그린뉴딜유망기업100	보통	보통	152.0	
64	2023	중소벤처기업부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보통	미흡	117.0	등급 변동
65	202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보통	보통	92.0	
66	2023	중소벤처기업부	구상권관리	미흡	미흡	203.0	

연번	회계연도	소관부처	세부사업	기준 평가등급	변동 평가등급	평가 대상연도 예상액	비고
67	2023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미흡	미흡	2,096.0	
68	2022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도담어진지구대 건립	보통	보통	36.0	
69	2022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평생교육원 건립	보통	미흡	39.0	등급 변동
70	202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우수	우수	78.0	

③ 평가 담당자의 집행률 산식 오적용

71	2023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우수	우수	1,851.0	
72	2023	국토교통부	고속도로건설(단위사업)	보통	보통	16,388.0	
73	2023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조사	보통	보통	357.0	
74	2023	국토교통부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단위사업)	보통	보통	3,353.0	
75	2023	국토교통부	일반국도건설(단위사업)	보통	보통	14,787.0	
76	202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지원(신용보증기금)	보통	보통	32.1	
77	2022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확산사업	보통	보통	1,542.0	
78	2022	국토교통부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	보통	보통	44.0	
79	2022	국토교통부	지상지하 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정보화)	보통	보통	50.0	
80	202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지원	우수	우수	31.0	
81	2023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보통	보통	53.0	
82	2023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확산사업	보통	보통	1,155.0	
83	2023	국토교통부	재정비촉진사업지원	보통	보통	77.0	
84	2023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보통	미흡	1,276.0	등급 변동
85	2022	국가보훈부	보훈정신계승발전	우수	보통	31.7	등급 변동
86	2022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발굴포상 및 흥보	보통	우수	31.7	등급 변동
87	2022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운영 및 활성화	보통	보통	272.3	
88	2022	국가보훈부	보훈기념행사	보통	보통	31.5	
89	2022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보통	보통	329.8	
90	2022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	보통	보통	41.7	
91	2022	국가보훈부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보통	미흡	86.1	등급 변동
92	2022	국가보훈부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미흡	미흡	57.3	
93	2022	국가보훈부	현충시설 건립	미흡	보통	91.3	등급 변동
94	2022	국방부	군수정책지원	보통	보통	123.0	
95	2022	국방부	장병복지 향상	보통	보통	3,546.0	
96	2023	국방부	정훈문화활동	우수	우수	563.0	
97	2023	국방부	장병복지 향상	보통	보통	3,772.0	
98	2023	국방부	군수정책지원	보통	미흡	126.0	등급 변동
99	2022	산업통상자원부	무연탄발전지원	보통	미흡	197.1	등급 변동
100	2022	산업통상자원부	녹색혁신금융(융자)	미흡	미흡	366.2	

연번	회계연도	소관부처	세부사업	기준 평가등급	변동 평가등급	평가 대상연도 예산액	비고
101	2023	기재부	지식협력단지운영	미흡	미흡	84.7	
102	2022	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보통	보통	133.0	
103	2023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우수	보통	76.0	등급 변동
104	2023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보통	미흡	137.0	등급 변동
105	2023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인프라지원, 소셜벤처육성)	보통	보통	42.0	
106	2022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우수	보통	156.7	등급 변동
107	2022	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우수	우수	79.3	
108	2022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우수	우수	560.13	
109	2022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우수	우수	658.81	
110	2022	해양수산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	보통	보통	409.8	
111	2022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화(정보화)	보통	보통	14.1	
112	2022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보통	보통	356.54	
113	2022	해양수산부	어촌활력기반구축	보통	보통	103.81	
114	2022	해양수산부	평택, 당진항	보통	보통	141.69	
115	202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행정정보 시스템구축(정보화)	보통	보통	23.59	
116	2022	해양수산부	내수면자원조성	보통	보통	187.99	
117	2022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보통	미흡	44.1	등급 변동
118	2022	해양수산부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보통	보통	146.4	
119	2022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보통	미흡	77.06	등급 변동
120	2022	해양수산부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미흡	미흡	35.53	
121	2022	해양수산부	기타항만 재개발	미흡	미흡	127.47	
122	2022	해양수산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미흡	미흡	38.87	
123	2023	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우수	보통	172.8	등급 변동
124	2023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보통	보통	723.5	
125	2023	해양수산부	관공선건조 및 운영	보통	보통	330.1	
126	2023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보통	보통	154.8	
127	2023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화(정보화)	보통	보통	15.6	
128	202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보통	보통	202.7	
129	2023	해양수산부	친환경 어구보급	보통	보통	539.5	
130	2023	해양수산부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	보통	보통	73.6	
131	2023	해양수산부	인천남항	보통	보통	145.0	
132	2023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육성	보통	보통	62.8	
133	2023	해양수산부	수산 공익직불제	보통	보통	933.3	
134	2023	해양수산부	연안국과의 협력(ODA)	보통	보통	287.3	
135	2023	해양수산부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보통	보통	79.2	

연번	회계 연도	소관부처	세부사업	기준 평가등급	변동 평가등급	평가 대상연도 예산액	비고
136	2023	해양수산부	광양항(3단계)	보통	미흡	1,655.8	등급 변동
137	2023	해양수산부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보통	보통	49.4	
138	2023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보통	보통	114.2	
139	2023	해양수산부	기타항만 재개발	보통	미흡	80.0	등급 변동
140	2023	해양수산부	내수면자원조성	미흡	미흡	140.8	

④ 기타

141	2023	교육부	교육급여	보통	미흡	1,573.1	등급 변동
142	2022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박물관건립	보통	미흡	125.7	등급 변동
143	2023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보통	미흡	3,678.0	등급 변동
144	2023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미흡	미흡	3,601.7	등급 변동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1]

2023년도 자율평가 감사원 지적사항 미반영 현황

연번	소관부처	평가대상 세부사업명	관련 감사사항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미반영 사유	미반영 사유 검토 결과
1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용역계약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해당 '주의'건은 계약업무 담당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인식하여 해당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평가는 부서가 아닌 사업 단위로 진행되므로 타당하지 않음
2	국회 사무처	국회방송운영	국회 정기감사	국회방송 조명료 정산 및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징계·문책, 주의, 통보	지적사항 모두 개선조치 하였으나, 2021년도에 처음으로 헌법기관에 대한 정기감사가 진행되어 감사 결과 반영이 미비하였음	타당하지 않음
3				중계차 임차료 집행 부적정	주의		
4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당시 담당자가 모든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작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국회 지적사항만 작성	자율평가 지침에는 국회, 감사원 등 지적 사항 출처를 모두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음
5	자활사업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감사		자활기금 위탁운영 추진 및 집행관리 미흡	통보	해당 사업에 대한 직접 감사가 아닌 산하 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감사였으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초보고서의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평가는 기관이 아닌 사업 단위로 진행되므로 타당하지 않음
6				희망키움뱅크사업 채권관리 미흡	통보		
7				위기아동 발굴, 지원사업 실태조사 관리 부적정	주의		
8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점검	위기아동 발굴, 지원사업 실태조사 관리 부적정	통보	본 평가 대상인 재정 사업은 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해당 지적사항은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본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	평가는 특정 사업 단위로 진행되므로 해당 사유는 타당하지 않음
9	산림청	숲가꾸기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고용부담금 예산편성 부적정	주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환류 및 개선노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한해 평가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인지 하여 지표에 미반영	자율평가 지침에 자율평가 외에도 국회, 감사원 등 다양한 지적사항 출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음
10		목재생산관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	종·소경재 위주 목재생산으로 국유림 경영목표치 미달	통보		
11		목재생산관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	국유림 벌채를 위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주의		
12		조림, 숲가꾸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	산림사업 관련 보조금 미환수	통보		
13	국방부	통신전자장비 (유지)	국방규격 제정 및 관리실태	수온기록계 구매요구서 작성 부적정	통보, 주의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해군 본부(감사과)로만 공문이 하달되고, 해군 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여 자율평가에 반영할 수 없었음	감사과에서 사업 부서에 감사 결과를 공유했어야 하므로 해당 사유는 타당하지 않음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2]

기관별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 및 담당 인원 현황(2023년)

(단위: 개, 명, %)

구분	중앙행정기관	측정업무	업무 담당 인원(A)	기관 전체 인원(B)	비중 (C=ΣA/B)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7	159	32.7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42		
		계약 및 관리	3		
2	경찰청 (6)	일반 유해업소 수사조사	33,551	131,046	33.7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사범 지도단속	8,593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	322		
		경비업 허가 관리	18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1,094		
3	고용노동부 (7)	계약 및 관리	618	8,198	54.6
		근로감독 관련 사건 처리(신고사건 처리, 시정지시)	2,260		
		산업안전 관련 사건 처리(재해조사, 시정지시)	824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198		
		훈련기관 지도점검	244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240		
		실업급여 지급	586		
4	공정거래위원회 (6)	계약 및 관리	126	650	62.0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133		
		카르텔 조사	89		
		기업결합신고 및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관리	30		
		갑을관계 개선 조사	112		
		공정문화 정착 지원·점검	36		
5	관세청 (7)	계약 및 관리	3	5,243	3.7
		관세조사 및 AEO 심사	14		
		보세구역 관리	26		
		수입 및 수출신고	56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물품 통관	20		
		관세감면 신청	40		
		신용담보업체 및 담보지정특례자 지정 신청	25		
6	교육부 (5)	계약 및 관리	15	946	93.2
		국립대학 지원 및 관리	126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360		
		학교법인 임월취임 승인 및 취소	37		
		교원소청심사	25		
7	국가보훈부 (5)	계약 및 관리	334	1,431	9.9
		국가유공자 등 결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52		
		국립묘지 안장지원	11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26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결정	26		
8	국조실 (4)	계약 및 관리	26	413	72.9
		규제심사	24		
		정책조정	152		
		조세심판	122		
9	금융위원회 (2)	계약 및 관리	6	325	8.3
		금융기관 인허가 및 지원/감독	21		

구분	중앙행정기관	측정업무	업무 담당 인원(A)	기관 전체 인원(B)	비중 (C=ΣA/B)
10	기상청 (2)	기상사업자 및 기상 관련 면허 관리 계약 및 관리	3 48	1,341	3.8
11	기재부 (6)	외국환 예산·기금 심의 예산성과급 공공혁신 복권 계약 및 관리	8 175 9 67 25 2	1,082	25.1
12	농촌진흥청 (4)	농약등록, 신고, 승인업무 바이오그린 연계 농생명혁신기술개발사업 농업유전자원 국내외 분양/반출 승인업무 계약 및 관리	4 2 4 101	1,855	5.9
13	국가유산청 (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지자체 및 유관단체 지원 관리 무형문화재 지정/지원/관리 계약 및 관리(문화재 수리/보수 공사용역 포함)	56 16 49 10 84	1,012	21.2
14	방송통신위원회 (3)	방송국 허가 및 방송시장조사 통신시장 조사 계약 및 관리	44 30 4	284	27.5
15	방위사업청 (5)	연구개발계약 관리 구매계약 관리 연구개발사업 관리 구매사업 관리 방위산업 육성	233 656 380	1,498	84.7
16	법무부 (6)	법무법인 설립/정관변경 인허가 변호인 접견 시증발급 인정서 발급 보관금품 접수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 계약 및 관리	28 117 224 101 269 5	23,406	3.2
17	법제처 (3)	법령심사 법령해석 계약 및 관리	65 34 22	227	53.3
18	병무청 (5)	생계곤란 병역감면 병역처분 변경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정업체 실태조사 계약 및 관리	29 15 17 36 19	1,890	6.1
19	산림청 (5)	국유재산 대부, 기간 갱신, 대부료 반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연장/변경 국유임산물 매각/양여 사유지 매수 및 분수림 반환·수익분배 계약 및 관리	46 38 42 31 73	1,786	12.9
20	산업통상자원부 (6)	신제품 인증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자체 지원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공인교정, 시험, 검사기관 인정/변경 계약 및 관리	10 11 12 11 13 38	1,348	7.0

구분	중앙행정기관	측정업무	업무 담당 인원(A)	기관 전체 인원(B)	비중 (C=ΣA/B)
21	새만금개발청 (2)	개발사업(인허가, 승인, 심사 등) 계약 및 관리	12 4	139	11.5
22	식품의약품안전처 (7)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 및 지원(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및 사후관리 화장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및 심사 수입식품 검사(세부업무: 식품/수산물)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계약 및 관리	93 34 84 36 79 160 26	1,987	25.7
23	여성가족부 (4)	여성정책·권익증진 지원(자치단체 지원, 유관단체 지원) 청소년가족정책 지원(자치단체 지원, 유관단체 지원) 성별영향평가 계약 및 관리	93 109 8 3	289	73.7
24	외교부 (2)	재외공관 기업지원 계약 및 관리	64 88	2,461	6.2
25	원자력안전위원회 (3)	방사선 안전규제 원자력 방사선 사건사고 조사 계약 및 관리	10 9 3	168	13.1
26	인사처 (4)	소청심사 인사심사 및 특채/승진 협의 공무상요양 및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승인(이의신청포함) 계약 및 관리	32 6 16 14	595	11.4
27	조달청 (8)	비축물자 계약/관리 내자 계약/관리 외자 계약/관리 시설공사 계약/관리 기술용역 계약/관리 시설공사 관리 조달물자 검사 계약 및 관리	13 181 15 14 29 39 13 14	1,103	28.8
28	중소벤처기업부 (4)	등록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지원사업 현장평가 계약 및 관리	14 14 53 17	1,389	7.1
29	질병관리청 (3)	선박 검역(승선, 무전) 생물안전 시설 국가안전관리 계약 및 관리	305 21 77	2,167	18.6
30	통계청 (2)	통계기반정책평가 계약 및 관리	28 128	3,285	4.7
31	통일부 (2)	예산 및 기금지원 계약 및 관리	3 6	536	1.7

구분	중앙행정기관	측정업무	업무 담당 인원(A)	기관 전체 인원(B)	비중 (C=ΣA/B)
32	특허청 (5)	상표 및 디자인 심사	247	1,774	87.0
		특허심판	147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	988		
		산업재산 창출 지원	150		
		계약 및 관리	12		
33	해양경찰청 (4)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자 관리	163	13,251	10.2
		선박 및 해양시설 지도점검	128		
		해양안전 및 경비	1,023		
		계약 및 관리	43		
34	행안부 (7)	상훈관리	16	3,466	6.8
		직제관리(중앙/지방)	81		
		지자체 및 유관단체 지원(특별교부세/국고보조/유관단체)	45		
		지방공기업 지도·평가·관리 및 공사채 승인	22		
		계약 및 관리(정보화사업 포함)	35		
		안전점검 및 관리	27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11		
35	환경부 (6)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50	2,690	14.4
		환경영향평가협의	85		
		국내외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5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관리	18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신청	6		
		계약 및 관리	59		

주: 1. 2023년 말 기준

2. 업무 담당 인원은 정현원 중 큰 수치, 기관 전체 인원은 정현원 중 작은 수치로 적용하여 비중은 가급적 높게 나타나도록 산정
3.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수산부 등 11개 기관은 업무 담당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3]

청렴 체감도 평가에 활용된 표본량 상세 현황1. 외부 체감도 평가에 활용된 측정업무별 목표 표본량 미달·초과 현황¹⁾

(단위: 개, %)

구분	기관 수	전체 측정업무 수 (총표본량)	목표 미달		목표 초과		초과 조사 한도 ²⁾
			업무 수 (미달 표본량)	비중	업무 수 (초과 표본량)	비중	
2020년	506	1,899 (15.3만)	697 (-2.5만)	36.7 (16.3)	1,114 (+2.8만)	58.7 (18.3)	한도 없음
2021년	519	1,908 (14.5만)	597 (-2.2만)	31.3 (15.2)	1,121 (+1.4만)	58.8 (9.7)	
2022년	501	1,840 (15.5만)	614 (-2.3만)	33.4 (14.8)	1,145 (+1.5만)	62.2 (9.7)	측정업무별로 목표 표본량의 최대 120% 이내
2023년	498	1,847 (15.8만)	690 (-2.0만)	37.4 (12.7)	1,074 (+1.4만)	58.1 (8.9)	

주: 1.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정리(이하 표에서도 동일)

2.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1년까지는 표본량 조사 한도가 없었으나, 2022년부터 한도 설정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외부 체감도 평가에 활용된 측정업무별 목표 표본량 미달 상세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측정업무 수	목표 표본량 미달 업무 수 ¹⁾ (비중)	최소조사 표본량(50개) 미달 업무 수 (비중)	표본 30개 ²⁾ 미만 업무 수 (비중)
2020년 ³⁾	1,899	697 (36.7)	692 (36.4)	248 (13.0)
2021년	1,908	597 (31.3)	742 (38.8)	366 (19.1)
2022년	1,840	614 (33.4)	659 (35.8)	186 (10.1)
2023년	1,847	690 (37.4)	645 (34.9)	192 (10.3)

주: 1. 목표 표본량이 평가 실시계획상 최소조사 표본량(50개)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도 있음

2. 통계적으로 하나의 분석단위에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량은 30개임

3. 2020년의 경우 목표 표본량이 확인되지 않은 업무가 있어 이는 분석에서 제외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내부 체감도 평가에 활용된 층별 표본량 현황

(단위: 개, %)

구분	기관 수	전체 총수 (총표본량)	당초 할당 대비 초과 조사된 총수 ^{주)} (초과 표본량)	당초 할당 대비 미달 조사된 총수 (미달 표본량)	당초 할당에 맞게 조사된 총수 (비중)
2020년	506	3,372 (5.9만)	1,531 (+1.0만)	1,923 (-1.5만)	347 (10.3)
2021년	519	3,591 (6.7만)	1,649 (+1.1만)	1,858 (-1.6만)	433 (12.1)
2022년 ²⁾	501	3,619 (6.6만)	1,646 (+1.2만)	1,865 (-1.9만)	389 (10.7)
2023년	498	3,711 (6.5만)	1,893 (+1.4만)	1,556 (-1.2만)	475 (12.8)

주: 당초 할당되지 않았으나 조사된 층도 총수에 포함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4]

내부 체감도 층별 표본조사 결과 보정 후 기관별 등급 변동 내역(2023년)

(단위: 점, 등급)

구분	연번	평가 대상기관	청렴 체감도			종합 청렴도		
			당초 점수 (등급)	보정 점수 (등급)	변동 (등급)	당초 점수 (등급)	보정 점수 (등급)	변동 (등급)
중앙 부처 (6)	1	국조실	81.8 (3)	82.4 (2)	0.6 ↑ (1 ↑)	85.4 (2)	85.8 (2)	0.4 ↑ (유지)
	2	국가보훈부	83.1 (2)	81.7 (3)	1.4 ↓ (1 ↓)	79.9 (3)	79.1 (3)	0.8 ↓ (유지)
	3	교육부	78.9 (3)	79.9 (3)	1.0 ↑ (유지)	76.4 (4)	77.0 (3)	0.6 ↑ (1 ↑)
	4	행안부	78.2 (3)	75.7 (4)	2.5 ↓ (1 ↓)	82.0 (3)	80.5 (3)	1.5 ↓ (유지)
	5	농림축산 식품부	82.5 (2)	81.9 (3)	0.6 ↓ (1 ↓)	81.0 (3)	80.7 (3)	0.3 ↓ (유지)
	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77.8 (3)	77.0 (4)	0.8 ↓ (1 ↓)	78.4 (3)	77.9 (3)	0.5 ↓ (유지)
광역 지자체 (3)	7	광주광역시	75.9 (3)	75.3 (4)	0.6 ↓ (1 ↓)	79.2 (3)	78.9 (3)	0.3 ↓ (유지)
	8	경상북도	75.5 (4)	75.8 (3)	0.3 ↑ (1 ↑)	82.6 (2)	82.8 (2)	0.2 ↑ (유지)
	9	제주 특별자치도	78.2 (3)	79.1 (2)	0.9 ↑ (1 ↑)	82.0 (2)	82.6 (2)	0.6 ↑ (유지)
시도 교육청 (2)	10	광주광역시 교육청	74.7 (4)	74.7 (5)	0.0 (1 ↓)	78.4 (4)	78.4 (4)	0.0 (유지)
	11	충청북도 교육청	83.5 (2)	83.4 (2)	0.1 ↓ (유지)	84.1 (2)	84.0 (3)	0.1 ↓ (1 ↓)
기초 지자체 (27)	12	경기도 의정부시	71.7 (4)	72.2 (3)	0.5 ↑ (1 ↑)	77.7 (3)	78.0 (3)	0.3 ↑ (유지)
	13	경기도 남양주시	72.4 (3)	72.1 (4)	0.3 ↓ (1 ↓)	73.6 (4)	73.4 (4)	0.2 ↓ (유지)
	14	경기도 안성시	77.6 (2)	76.8 (3)	0.8 ↓ (1 ↓)	79.0 (3)	78.5 (3)	0.5 ↓ (유지)
	15	전라남도 순천시	71.3 (4)	71.0 (4)	0.3 ↓ (유지)	79.4 (2)	79.2 (3)	0.2 ↓ (1 ↓)
	16	경상북도 김천시	67.2 (5)	68.0 (4)	0.8 ↑ (1 ↑)	68.2 (4)	68.7 (4)	0.5 ↑ (유지)
	17	경상남도 양산시	77.2 (2)	76.9 (3)	0.3 ↓ (1 ↓)	82.4 (2)	82.2 (2)	0.2 ↓ (유지)
	18	경기도 연천군	77.4 (2)	76.5 (3)	0.9 ↓ (1 ↓)	70.6 (4)	70.1 (4)	0.5 ↓ (유지)
	19	충청북도 영동군	72.4 (3)	71.8 (4)	0.6 ↓ (1 ↓)	70.5 (4)	70.1 (4)	0.4 ↓ (유지)
	20	충청북도 음성군	77.3 (2)	76.9 (3)	0.4 ↓ (1 ↓)	83.3 (2)	83.1 (2)	0.2 ↓ (유지)
	21	충청남도 서천군	77.2 (3)	77.4 (2)	0.2 ↑ (1 ↑)	79.2 (2)	79.4 (2)	0.2 ↑ (유지)
	22	전라남도 곡성군	73.0 (3)	71.6 (4)	1.4 ↓ (1 ↓)	70.2 (4)	69.4 (4)	0.8 ↓ (유지)
	23	전라남도 고흥군	75.9 (3)	75.4 (3)	0.5 ↓ (유지)	77.8 (2)	77.5 (3)	0.3 ↓ (1 ↓)

구분	연번	평가 대상기관	청렴 체감도			종합 청렴도		
			당초 점수 (등급)	보정 점수 (등급)	변동 (등급)	당초 점수 (등급)	보정 점수 (등급)	변동 (등급)
기초 지자체 (27)	24	경상북도 영덕군	66.9 (4)	64.4 (5)	2.5 ↓ (1 ↓)	70.0 (4)	68.5 (4)	1.5 ↓ (유지)
	25	경상북도 칠곡군	77.2 (3)	77.2 (2)	0.0 (1 ↑)	80.7 (2)	80.7 (2)	0.0 (유지)
	26	경상남도 합천군	70.4 (4)	69.9 (4)	0.5 ↓ (유지)	70.7 (3)	70.4 (4)	0.3 ↓ (1 ↓)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82.3 (2)	80.9 (3)	1.4 ↓ (1 ↓)	83.5 (2)	82.7 (2)	0.8 ↓ (유지)
	28	서울특별시 강북구	78.7 (4)	78.9 (3)	0.2 ↑ (1 ↑)	81.2 (3)	81.3 (3)	0.1 ↑ (유지)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76.8 (4)	76.6 (4)	0.2 ↓ (유지)	78.5 (3)	78.3 (4)	0.2 ↓ (1 ↓)
	30	서울특별시 구로구	82.4 (2)	81.9 (3)	0.5 ↓ (1 ↓)	86.5 (1)	86.2 (1)	0.3 ↓ (유지)
	31	부산광역시 사하구	81.9 (3)	82.2 (2)	0.3 ↑ (1 ↑)	78.7 (3)	78.9 (3)	0.2 ↑ (유지)
	32	부산광역시 수영구	83.5 (2)	82.6 (2)	0.9 ↓ (유지)	82.8 (2)	82.2 (3)	0.6 ↓ (1 ↓)
	33	대구광역시 중구	82.3 (2)	81.9 (3)	0.4 ↓ (1 ↓)	81.1 (3)	80.9 (3)	0.2 ↓ (유지)
	34	대구광역시 남구	81.9 (3)	82.2 (2)	0.3 ↑ (1 ↑)	81.9 (3)	82.1 (3)	0.2 ↑ (유지)
	35	대구광역시 북구	79.0 (3)	79.3 (3)	0.3 ↑ (유지)	86.0 (2)	86.2 (1)	0.2 ↑ (1 ↑)
	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78.6 (4)	78.8 (3)	0.2 ↑ (1 ↑)	79.1 (3)	79.2 (3)	0.1 ↑ (유지)
	37	인천광역시 연수구	82.3 (2)	82.0 (3)	0.3 ↓ (1 ↓)	77.7 (4)	77.6 (4)	0.1 ↓ (유지)
	38	대전광역시 대덕구	85.7 (2)	85.7 (1)	0.0 (1 ↑)	82.6 (2)	82.6 (2)	0.0 (유지)
공직 유관 단체 (16)	39	한국조폐공사	90.2 (2)	90.1 (2)	0.1 ↓ (유지)	91.6 (2)	91.6 (1)	0.0 (1 ↑)
	40	한국마사회	85.4 (3)	83.2 (4)	2.2 ↓ (1 ↓)	88.4 (2)	87.1 (3)	1.3 ↓ (1 ↓)
	41	한국 지역난방공사	85.9 (3)	87.5 (2)	1.6 ↑ (1 ↑)	85.4 (3)	86.3 (3)	0.9 ↑ (유지)
	42	한국공항공사	86.1 (3)	86.7 (3)	0.6 ↑ (유지)	87.9 (3)	88.3 (2)	0.4 ↑ (1 ↑)
	43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83.1 (4)	83.2 (4)	0.1 ↑ (유지)	84.9 (4)	85.0 (3)	0.1 ↑ (1 ↑)
	44	공무원 연금공단	86.5 (3)	86.9 (2)	0.4 ↑ (1 ↑)	85.8 (3)	86.1 (3)	0.3 ↑ (유지)
	45	국민체육 진흥공단	86.5 (3)	86.7 (2)	0.2 ↑ (1 ↑)	89.1 (2)	89.2 (2)	0.1 ↑ (유지)
	46	한국 무역보험공사	90.2 (1)	90.4 (1)	0.2 ↑ (유지)	87.8 (3)	87.9 (2)	0.1 ↑ (1 ↑)
	47	한국 고용정보원	83.8 (4)	83.8 (3)	0.0 (1 ↑)	84.7 (4)	84.7 (4)	0.0 (유지)
	48	대한적십자사	86.5 (2)	87.9 (2)	1.4 ↑ (유지)	89.9 (2)	90.7 (1)	0.8 ↑ (1 ↑)
	49	한국우편사업 진흥원	84.6 (3)	81.0 (4)	3.6 ↓ (1 ↓)	85.2 (2)	83.0 (3)	2.2 ↓ (1 ↓)

구분	연번	평가 대상기관	청렴 체감도			종합 청렴도		
			당초 점수 (등급)	보정 점수 (등급)	변동 (등급)	당초 점수 (등급)	보정 점수 (등급)	변동 (등급)
공직 유관 단체 (16)	50	대구교통공사	86.8 (2)	87.8 (2)	1.0 ↑ (유지)	89.4 (2)	90.0 (1)	0.6 ↑ (1 ↑)
	51	전남개발공사	81.7 (3)	81.7 (3)	0.0 (유지)	85.8 (2)	85.8 (3)	0.0 (1 ↓)
	52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90.5 (1)	90.5 (2)	0.0 (1 ↓)	88.0 (2)	88.0 (2)	0.0 (유지)
	53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82.2 (5)	82.2 (4)	0.0 (1 ↑)	85.0 (3)	85.0 (3)	0.0 (유지)
	54	기초과학연구원	87.8 (2)	87.8 (2)	0.0 (유지)	81.8 (4)	81.8 (3)	0.0 (1 ↑)

주: 내부 체감도 점수 변동으로 청렴 체감도 또는 종합 청렴도 등급이 변동되는 기관만 표시하였으며, 변동란에서 ‘↑’ 기호는 상승, ‘↓’ 기호는 하락을 의미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5]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별 10개 미만의 조사 표본량 현황

(단위: 개)

연도	기관명	측정업무	활당 표본량	조사 표본량
2023년 (22)	국가보훈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50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 조사	100	6
	방위사업청	연구개발계약 관리	100	8
	방위사업청	구매사업 관리	100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 관리	50	7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 정상화 지원	40	9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 위탁개발	40	5
	예금보험공사	지원자금 회수	100	8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응자지원	50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조직(센터) 사업자 선정 및 관리	50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시장 평가	50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IT지원센터 업무	75	6
	한국토지주택공사	품질검사	50	7
	한국수자원공사	수질검사	50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보험검사	60	7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금융분야 보증	100	8
	한국남부발전	등록심사	45	8
	한국중부발전	등록심사	45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및 지원	100	5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토지 등 보상	100	5
	전북개발공사	토지 등 보상	100	5
	전남개발공사	임대사업(입주업체관리)	100	9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 조사	100	7
	금융위원회	계약 및 관리	100	6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인·허가	75	6
2022년 (22)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약 및 관리	100	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방사선 사건·사고 조사	100	8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세정	30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세정	30	6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세정	30	5
	강원도 양구군	재정·세정	30	5
	충청남도 계룡시	재정·세정	30	8
	전라북도 고창군	재정·세정	30	6
	한국은행	금융기관 공동검사	75	6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개보수 공사	40	9
	예금보험공사	지원자금 회수	100	5
	한국가스공사	자원도입 및 자원개발	75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75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IT지원센터 업무	75	5
	한국수자원공사	수질검사	50	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인증	100	9
	대전교통공사	상가입대, 광고계약 및 관리	75	9
	전남개발공사	토지 등 보상	100	7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종괄기관 업무	60	6
2021년 (29)	원자력안전위원회	계약 및 관리	100	6
	인사처	소청 심사	100	9
	소방청	지자체·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100	7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83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세정	30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사 관리 및 감독	100	7

연도	기관명	측정업무	할당 표본량	조사 표본량
2021년 (29)	한국은행	금융기관 공동검사	75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계약 및 관리	75	8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개보수 공사	50	9
	예금보험공사	보험료 산정 적정성 점검	100	6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용자지원	50	8
	대한체육회	계약 및 관리	75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100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IT지원센터 업무	100	9
	한국에너지공단	진단기관 관리·감독	60	8
	한국수자원공사	수질검사	60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보험검사	60	6
	한국수출입은행	기업 금융 분야 보증	100	9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기술개발	100	9
	한국중부발전	등록심사	45	9
	부산도시공사	토지 등 보상	100	8
	수원도시공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100	6
	안양도시공사	입점업체 관리	100	5
	김포도시관리공사	토지 등 보상	100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및 지원	100	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이전 및 기업지원	100	7
	남양주도시공사	토지 등 보상	100	6
	고양도시관리공사	토지 등 보상	100	7
	안산도시공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100	7
	기재부	예산 성과금	84	8
	행안부	지방공기업 지도·평가·관리 및 공사채 승인	72	5
	행안부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72	7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인·허가	75	9
2020년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 육성지원	72	8
	방위사업청	연구개발계약 관리	100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세정	30	8
	경상북도 안동시	재정·세정	30	7
	경상북도 울릉군	재정·세정	30	6
	한국은행	금융기관 공동검사	75	6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개보수 공사	20	5
	예금보험공사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 점검	100	6
	한국가스공사	자원도입 및 자원개발	75	7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 및 관리	20	5
	한국수자원공사	수질검사	54	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 보험검사	60	6
	경찰공제회	자산운용	100	5
	경찰공제회	회원 복지사업 운영	100	6
	광주도시공사	토지 등 보상	100	9
	울산도시공사	토지 등 보상	100	9
	남양주도시공사	토지 등 보상	100	6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6]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행 실적을 인정받은 청렴시민감사관 권고 내역(2023년)

연번	기관명	청렴시민감사관 권고 주요 내용	비고
1	강원도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추진	부패 관련
2	강원도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기회 제공 요청	부패 관련
3	강원도	코로나 19 물품 수의계약 적절성 관련 조사 요청	부패 관련
4	강원도	도민감사관 활동 독려	부패 관련
5	경기도	수원시 전통시장 아케이드 개폐시설 유지관리 개선 필요	민원 사항
6	경기도	여주시 야영장 내 미신고 어린이 놀이시설 조치 필요	민원 사항
7	경상남도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내 청렴서약 사항을 추가하는 등 서약서 명확화	부패 관련
8	경상남도	사용허가 운영자의 재량권 남용 제한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립미술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부패 관련
9	경상북도	김천 공공산후조리원 내 조경수 식재 등 환경개선	민원 사항
10	경상북도	시장상인회 공영주차장 이용 시 할인 혜택 확대	민원 사항
11	경상북도	연말연시 공직기강 해이 등 예방을 위해 시군 등 대상으로 복무 감찰 활동 건의	부패 관련
12	경상북도	건설공사 공법선정 시 지역 제한이 어려울 경우 지역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민원 사항
13	경상북도	폐비닐 수거장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등 방지 및 관리방안 모색	민원 사항
14	경상북도	동계·하계, 자연 재난 시기를 구분하여 행정복지센터의 일당직 근무시간 조정 방안 마련	민원 사항
15	경상북도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부패 관련
16	광주광역시	근린공원 내 장애인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및 점검	민원 사항
17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보조금 특정감사 권고	부패 관련
18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감사 시 임여품, 과장품 등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감사	부패 관련
19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감사 시 범죄 통보받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적정성 감사	부패 관련
20	대전광역시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등 개선	민원 사항
21	대전광역시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공사 등 개선	민원 사항
22	대전광역시	노후 하수관로(2단계 긴급보수) 정비공사 등 개선	민원 사항
23	부산광역시	특정 직급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감사	부패 관련
24	부산광역시	시민감사관 역할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 개정	부패 관련
25	서울특별시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요금 부과 방지를 위해 '1일 주차요금 상한제' 도입, '월 정기주차 종료 전 안내 고지' 등 제도개선 사항 검토	민원 사항
26	서울특별시	노숙인 시설 입·퇴소 과정 재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민원 사항
27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오기 등이 있으므로 명확하게 개정 요구	민원 사항
28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부적절한 민원응대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특별교육' 실시,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운영계획' 개선 요구	민원 사항
29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심의위원회 심의 기준 명확화	민원 사항
30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그룹 홈 설치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민원 사항
3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전광판 이용 대기환경 정보 표출	민원 사항

연번	기관명	청렴시민감사관 권고 주요 내용	비고
32	울산광역시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민원 사항
33	울산광역시	마을회관 보도블록 설치	민원 사항
34	울산광역시	공사현장 안전장치 설치	민원 사항
35	인천광역시	가정 전문간호사 인력 부족 해결	민원 사항
36	인천광역시	업무 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	부패 관련
37	인천광역시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중복 방지	부패 관련
38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 소방분야 시설개선	민원 사항
39	전라남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금 신청 시 서류 간소화	민원 사항
40	전라남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공공부분 확대	민원 사항
41	전라남도	건축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관련 개선	민원 사항
42	전라남도	진도군 산림산업에 대한 부적정 수의계약 감사	부패 관련
43	전라북도	가설건축물 취득세 과세 누락 여부에 대해 감사(진안군 감사 관련)	부패 관련
44	전라북도	가설건축물 취득세 과세 누락 여부에 대해 감사(순창군 감사 관련)	부패 관련
45	전라북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관리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진안군 감사 관련)	부패 관련
46	전라북도	농지 대장 관리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진안군 감사 관련)	부패 관련
47	전라북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순창군 감사 관련)	부패 관련
48	제주특별자치시	주민 불편사항 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민원 사항
49	제주특별자치시	주민 불편사항 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민원 사항
50	충청남도	대한노인회 홍성군 지회 운영 관련 부당사항 제보	부패 관련
51	충청남도	충남 4개 의료원의 진단 코드 불명확 등 도민 불편 초래사항 해결	민원 사항
52	충청북도	도민 안전문제 예방을 위하여 장기 미착공 건축물 관리 여부 확인	민원 사항
53	충청북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관리 여부에 대한 감사	민원 사항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7]

청렴 노력도 지표 관련 평가 대상기관 설문조사¹⁾ 및 권익위 의견수렴²⁾ 등 결과

<전반적인 청렴 노력도 지표 관련>

- 청렴도평가 하위 평가 분야에서 업무부담이 가장 높은 분야는? → 응답자의 95.8%가 '청렴 노력도'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단, 청렴 체감도 등 다른 세부 평가 분야와 복수 선택이 가능)
- 현행 노력도 지표로 인한 업무부담의 수준은? → 응답자의 93.4%가 '보통 이상의 업무부담'이 있다고 응답
- 현행 청렴 노력도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노력) 또는 청렴(노력) 수준을 평가하기에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부정 응답: 49.3%, 긍정 응답: 22.7%
- 현행 청렴 노력도 지표가 전반적으로 기관별로 점수를 부여받기에 유불리한 구조를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 부정 응답: 59.1%, 긍정 응답: 17.8%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지표' 관련>

- 응답자의 58.7%가 해당 지표는 객관성·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응답
- 응답자의 52.1%가 해당 지표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
- 해당 지표가 기관별로 유불리 없이 공정하게 설계되었는지? → 부정 응답 52.1%, 긍정 응답 17.8%

■ 평가 대상기관 제시 개방형 의견

-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없다는 것은 공공재정지급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한 경우를 의미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부과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 “공공재정지급금이 없어 타 기관의 이행실적에 따른 평균점수를 부여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³⁾(권익위 의견수렴)
- “환수 및 제재부가금 실적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히려 많다고 점수를 주는 것은 맞지 않음”, “공공재정을 부정 수급한 것은 외부 민원인 등이므로 이는 기관의 청렴도와는 관련이 없음”(설문조사)

<'청렴시민 감사관제 운영 지표' 관련>

- 응답자의 34.6%가 해당 지표는 객관성·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타 지표와 복수 선택 가능)
- 응답자의 29.4%가 해당 지표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타 지표와 복수 선택 가능)

■ 평가 대상기관 제시 개방형 의견

- “기관 자체적인 시민감사관 회의만 연간 수차례 개최하는데 이에 더해 기관 간 교류활동과 권고 이행까지 실시하는 것은 상당한 업무부담 가중”, “시민감사관의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한다고 해도 법령 개정 등의 경우 연내에 완료되기 어려움”(권익위 의견수렴)
- “시민감사관 지표 점수 획득을 위해 보여주기식, 실적 채우기식 행사를 매년 하는 실정”(설문조사)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지표’ 관련>

- 응답자의 **34.6%**가 해당 지표는 **객관성·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타 지표와 복수 선택 가능)
- 응답자의 **29.4%**가 해당 지표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타 지표와 복수 선택 가능)

■ 평가 대상기관 제시 개방형 의견

- “권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관에서 수용 곤란한 과제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필요”(권익위 의견수렴)
- “기관별 특성에 따라 권고과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도 권고사항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일률적, 기계적으로 감점하는 것은 불합리”(설문조사)

<‘적극행정 노력 지표’ 관련>

- 응답자의 **62.6%**가 해당 지표는 **객관성·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응답
- 응답자의 **55.2%**가 해당 지표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

■ 평가 대상기관 제시 의견

- “고충민원 해소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기관의 청렴 노력과 무관”, “적극행정 국민신청 건수가 없거나 적은 기관에는 불리한 지표임”(권익위 의견수렴)
- “적극행정 국민신문고로 들어오지 않는 기관은 가점을 받을 수 없고, 들어온다고 해도 단순 민원사항이 많은데 이걸 처리한다고 해서 적극행정이 되거나 청렴도 향상이 되는지 의문임”(설문조사)

주: 1. 청렴도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적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85개 기관, 기관별 1명 응답)
2. 권익위가 2022년 및 2023년 청렴도평가 종료 후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받은 의견
3. 이와 같은 기관 의견에 대응하여 권익위는 2023년 최종 평가 실시계획에는 지표 세부기준에 공공재정지급금 이 따로 없는 기관은 자체예산(업무 추진비, 출장비 등) 점검 실적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하도록 별도 설계

자료: 개개학회 설문조사 결과 및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8]

2023년도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의 평균반영비율 등 재산정 내역

(단위: %, 점, 개)

연번	비고	기관명 (가나다순)	증빙 제출	평균반영비율 ¹⁾ (5점)		전 직급 반영 여부 ³⁾ (3점)		변경사유	평가점수 변경
				당초	재산정 ²⁾	당초	재산정		
1	장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31.7	30	○	○	담당자 오류 수정	
2	차관급	경찰청	×	31	31	○	○	-	
3	장관급	고용노동부	○	56	28	○	×	부처 제출자료 변경	-2.75
4	장관급	공정거래위원회	×	18	18	○	○	-	
5	장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0	30	○	○	-	
6	차관급	관세청	×	34.5	34.5	×	×	-	
7	장관급	교육부	×	26.3	26.3	○	○	-	
8	장관급	국가보훈부	○	35	23.8	○	○	부처 제출자료 변경	-2.5
9	장관급	국조실	×	16.5	11.3	×	×	담당관 오류 수정	-1.25
10	장관급	권익위	×	46	46	○	○	-	
11	장관급	국방부	○	36.7	35	○	○	담당자 오류 수정	
12	차관급	국세청	×	35.5	산정 곤란	○	○	자료 미제출 ⁴⁾	산정 곤란
13	장관급	국토교통부	○	41.6	41.6	○	○	-	
14	장관급	금융위원회	×	55	산정 곤란	○	○	자료 미제출	산정 곤란
15	차관급	기상청	×	50	38.25	○	○	부처 제출자료 변경	
16	장관급	기재부	×	22.5	28.3	○	○	담당자 오류 수정	+1.25
17	장관급	농림축산식품부	×	36	36	○	○	-	
18	차관급	농촌진흥청	○	42.5	34	○	○	부처 제출자료 변경	
19	차관급	국가유산청	×	45	45	○	○	-	
20	장관급	문화부	○	26.6	13.3	○	×	부처 제출자료 변경	-5.25
21	장관급	방송통신위원회	○	32	32	○	○	-	
22	차관급	방위사업청	×	40.3	24.5	○	○	부처 제출자료 변경	-2.5
23	장관급	법무부	×	21.6	21.6	○	○	-	
24	차관급	법제처	×	36	30	○	○	-	
25	차관급	병무청	○	53	58.3	○	○	담당자 오류 수정	
26	장관급	보건복지부	×	30	30	○	○	-	
27	차관급	산림청	×	40	40	○	○	-	
28	장관급	산업통상자원부	○	40	37.5	○	○	담당자 오류 수정	
29	차관급	새만금개발청	○	54.3	47	○	○	담당자 오류 수정	
30	차관급	소방청	○	25	22	○	○	부처 제출자료 변경	-1.25
31	차관급	식품의약품안전처	○	25.5	25.5	○	○	-	
32	장관급	여성가족부	○	30	22.5	×	×	담당자 오류 수정	-2.5
33	장관급	외교부	○	25	25	×	×	-	
34	차관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34	28	○	○	담당자 오류 수정	-1.25
35	차관급	인사처	×	30.4	30.4	○	○	-	
36	차관급	조달청	○	22.5	20	○	○	담당자 오류 수정	
37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	×	20	20	×	×	-	
38	차관급	질병관리청	○	35	26.3	○	○	부처 제출자료 변경	-1.25

연번	비고	기관명 (가나다순)	증빙 제출	평균반영비율 ¹⁾ (5점)		전 직급 반영 여부 ³⁾ (3점)		변경사유	평가점수 변경
				당초	재산정 ²⁾	당초	재산정		
39	차관급	통계청	○	30	28.8	○	○	담당자 오류 수정	-1.25
40	장관급	통일부	○	26	26	○	○	-	
41	차관급	특허청	○	16	7.8	○	○	부처 제출자료 변경	-1.25
42	차관급	해양경찰청	○	60	36	○	○	부처 제출자료 변경	
43	장관급	해양수산부	×	32	32	○	○	-	
44	장관급	행안부	×	30	30	○	○	-	
45	차관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40	40	○	○	-	
46	장관급	환경부	×	57.9	57.9	○	○	-	
증빙제출기관, 전 기관 평균반영비율, 전 직급 일부 반영개수 등				22개	34.9	30.4 ⁵⁾	5개	7개	

- 주: 1. 평균반영비율은 4급 이상(고공단, 과장급, 4급 등)과 5급 이하로 구분하고, 4급 이상 평균반영비율과 5급 이하 평균반영비율을 다시 평균하여 국조실이 산정
 2. 기초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은 이행실태점검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반영비율 재산정
 3. 전 직급 반영 여부는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급에 반영하는 경우 ○,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X로 표시
 4. 개인별 성과급 지급 내역 중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비율이 확인되지 않는 기관은 미제출로 처리
 5. 전 기관 평균반영비율 산정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제외하고 산정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9]

2023년 인사 부문 자체평가 및 인사혁신 수준진단 평가지표 비교

(단위: 개, 점)

인사부문 자체평가			인사혁신 수준진단		
분야	지표	세부지표	분야	지표	세부지표
1	2	7	5	9	34(가점 1개 포함)
인사 (35)	① 효율적인 정부 인사 운영(32)	<p>① 인재개발(7) -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4) - 상시학습 이수율(3)</p> <p>② 유연근무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5)</p> <p>③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4)</p> <p>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10) -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5)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5)</p> <p>⑤ 공직문화혁신 추진노력 및 성과(6)</p>	<p>추진 역량(12)</p> <p>채용 (19)</p> <p>인재 개발 (18)</p> <p>전문성 ·</p> <p>성과 관리 (34)</p> <p>⑥ 전문직위 지정 비율(3)</p> <p>⑦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도(3)</p> <p>* 재해예방 교육 실시 여부(1), 마음건강진단 실시율(1), 기관장의 관심도(1)</p>	<p>① 공직문화혁신 확산 및 정착(12)</p> <p>② 공직 개방 활성화(7)</p> <p>③ 공직통합인사 추진(12)</p> <p>④ 인재개발 및 육성(18)</p> <p>⑤ 공직 전문성 제고(15)</p> <p>⑥ 기관 간 소통·협업 강화(11)</p> <p>⑦ 능력성과 중심 성과관리 추진(8)</p> <p>⑧ 근무혁신 추진(12)</p> <p>⑨ 공정성 제고(5)</p>	<p>① 자체 공직문화혁신 계획(8) ② 공직문화혁신 추진 노력 인식도(설문)(1) ③ 우수사례 창출실적(3)</p> <p>① 개방형 직위 민간인 임용률(2) ② 민간 임용자 적응지원 노력도(2) ③ 전문가정보 활용 실적(3)</p> <p>① 양성평등 통합인사(3) ② 장애인 통합인사(4) ③ 지역인재 통합인사(3) ④ 사회통합형 통합인사 노력도(1) ⑤ 포용적 조직문화 인식도(설문)(1)</p> <p>① 인재개발 인식도(설문)(1) ② ‘인재개발플랫폼’ 활용 확산(5) ③ 디지털 역량교육 등 이수율(9) ④ 상시학습시간 이수율(3)</p> <p>① 필수보직기간 준수율(5) ②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 준수율(5) ③ 전문직위 전문관 보임률(2) ④ 전문직공무원제 운영실적(2) * 전문직공무원 국·과장급 보직실적(가점 1) ⑤ 공직 전문성 관심도(설문)(1)</p> <p>① 계획인사교류 운영 실적(3) ② 고공단 인사교류(5) ③ 담당급 공모 직위 운영실적(3)</p> <p>① 성과관리 인식도(설문)(1) ②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수준(3) ③ 평가 편향지수(공정성)(4)</p> <p>① 근무환경 만족도(설문)(1) ② 기관장 핵심과제 이행실적(5) ③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노력도(2) ④ 연가사용 활성화 노력도(2) ⑤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율(2)</p> <p>① 공정인사 인식도(설문)(1) ② 기관 내 차별해소 노력도(4)</p>
② 선택(3)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0]

2023년 정보화 부문 자체평가 평가지표별 평가 주관기관 등 현황

(단위: 점)

정보화 부문 자체평가			평가 주관기관	평가명 ^{주)}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지원	① 국민 선제적·지능형 서비스 제공 노력	3	행안부 공공서비스혁신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UI/UX 국민평가
	② 정보주체(본인) 행정정보 제공 노력	2		
	③ 웹사이트 UI/UX 관리 강화	3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수준	2		
디지털 플랫폼정부 통합적 관리체계 강화	① 정보자원관리 수준	3	행안부 공공서비스통합과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②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	3		
	③ 공공앱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	2		
	④ 중복투자 예방 노력	2		
	⑤ 웹사이트 관리 우수성	1		
사이버 안전수준 강화	①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②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4		디지털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평가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	6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을지태극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④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	1		

주: 국조실은 2개 평가(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만 개별평가로 관리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